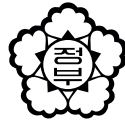


200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7. 1.



대한민국정부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목 차 〉

I. 변경되는 주요제도

1. 세제 · 금융

1. 다자녀추가공제제도 신설 및 교육비공제범위 확대 / 3
2. 모든 부동산 양도시 실지거래가 과세 및 1세대 2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강화 / 3
3. 고액 · 상습채납자 명단공개 / 4
4. 고액채납자 은닉재산 신고 민간인 포상금 지급 / 5
5. 공인회계사시험제도 변경 / 5
6.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 6
7.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 / 7

2. 산업 · 에너지

1. 에너지다소비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추진 / 9
2. 전력시장 거래제도 개선 / 9
3.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 10
4.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 강화 / 10
5.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 / 11
6. 미인증 및 개조, 변조, 복제기기 관련 처벌 강화 / 11
7. 우편환, 우편대체 지급증서 권리소멸에 따른 최고절차 / 12
8. 명세서의 기재요건 완화 / 12
9. 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의 도입 / 13

10.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대한 사전통지 내용의 명확한 기재 / 13
11. 비밀디자인 청구시기 확대 / 14
12. 포기, 거절결정 또는 거절심결된 디자인등록출원의 선출원 지위 배제 / 14
13. 디자인 無심사등록출원의 대한 등록거절 결정 사유확대 / 15
14.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 확대 / 15
15. 출원 변경의 인정범위 확대 / 16
16. 상표등록 이의신청 기간의 연장 / 17
17. 상표의 선사용이 있는 경우 그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 인정 / 17

3. 농림 · 해양

1. 쌀 브랜드 육성사업 실시 / 18
2. 농지내 축사설치 용이 / 18
3. 조건불리직불제 지원기준 완화 / 19
4.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19
5.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 20

6.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고령취약가구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 20
7.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에 방문 한국어교육 등 지원 / 21
8. 농업경영컨설팅 정액 쿠폰제 도입 / 22
9.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 22
10. 농어민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등급 확대 / 23
11.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 23
12. 농림기술개발사업 과제구분 변경 및 지원규모확대 / 24
13. 쌀·현미의 품종명 표시방법 변경 / 25
14. 과실브랜드육성 지원사업 추진 / 25
15.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지원요건 강화 / 26
16. 배추·무 포장유통 전국 공영도매시장 전면 실시 / 26
17. 위생시설 인증을 위한 시설자금 금리 인하 / 27
18. 비닐하우스 재해경감대책 사업지원 / 27
19.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 28
20.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시행 / 29
21. 축산 의무자조금 대의원 선출을 위한 지자체의 축산통계 조사 폐지 / 29
22. 공익수의사제도 신설·운영 / 30
23. 축산물의 표시기준 강화 / 30
24.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 시행 / 31
25. 한국농업전문학교 교명 변경 / 31
26. 향만근로자 공급방식을 상용화 체제로 전환 / 32
27. 2톤 미만 선박·수상호텔 등도 선박검사 대상에 포함 / 32

28.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시스템 운영 / 33
29. 수산물 품질인증품목 확대 / 33
30. 수목원조성·운영 제도 개선 / 34
31.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 34
32.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 35
33. 전국 소나무류 생산 확인제도 실시 / 35

4. 교육·문화

1.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개정 / 36
2. 사학연금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기준 개선 / 36
3. 폐교재산활용 촉진을 위한 특례규정 확대 / 37
4. 청소년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제전환 / 37
5. 게임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 금지 / 38
6.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한 경품지급 금지 / 38
7.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 / 39
8. 회원모집이 가능한 숙박시설을 연계한 회원모집 허용 / 39

5. 보건·복지

1.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표시 의무화 / 40
2. 희망스타트사업 실시 / 40
3.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 41
4. 노인돌보미 제도 시행 / 41
5.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 지원 / 42
6.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 42

- 7.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 43
- 8.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변경 / 43
- 9.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 대상 품목 확대 / 44
- 10. 켈런형금연보조제(의약외품)위해성분허용기준
설정 및 표시 의무 / 45
- 11. 인태반유래원료물질 화장품에 사용금지 / 45
- 12. 공동 임상시험심사위원회(공동 IRB) 제도 도입 추진 / 46
- 13. 의료기기 GMP 제도 / 46
- 14.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 47
- 15.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 47
- 16.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현실화 / 48

6. 환경

- 1.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 50
- 2.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한 부하검사
실시 / 50
- 3.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내역 공지 및 품질보고서를 발간 / 51
- 4.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강화 / 51
-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 시행 / 52
- 6. 화장품 유리병 재활용 의무대상에 포함(분리배출대상) / 52
- 7. 대기환경기준 강화 / 53
- 8.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강화 / 53
- 9.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 / 54
- 10. 제작차량 OBD부착 의무화 대상 확대 / 54
- 11. 제작차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 55

- 12.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보고 및 시정 제도 시행 / 56
- 13.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 57
- 14. 사업장 대기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완화 / 57

7. 노동

- 1.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 · 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 58
- 2. 육아휴직급여 수준인상 / 58
- 3.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 59
- 4.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로만 도입 / 59
- 5. 동포의 국내취업 및 사용자의 고용허가 절차 완화 / 60
- 6.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 60
- 7. 국가기술자격 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전면실시 / 61
- 8. 중대재해 발생시 지체없이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 / 61
- 9. 석면함유제품의 제조 · 수입 · 양도 · 제공 또는 사용
금지 / 62

8. 건설 · 교통

- 1.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 63
- 2. 주택건설 예정지역에 알박기 어려워져 땅값, 주택값
안정기대 / 63
- 3. 주민주도의 경과형성의 길 열려 / 64
- 4. 건축사 의무 설계대상 완화 / 65
-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주기적 신고 / 65
- 6.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 66
- 7. 택시 경영 · 서비스 평가제 실시 / 66

- 8. 택시·버스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 / 67
- 9.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안내 강화 / 67
- 10. 자동차 폐차, 폐차업 정의 및 용어 재정립 / 68
- 11.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전검토 도입 / 68
- 1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추가 / 69
- 13. 학·경력 기술자 제도 / 69
- 14. 타당성조사시 수요예측 부실자에 대한 제재 / 70
- 15. 레미콘·아스콘공장 사전점검 실시 / 70
- 16. 건설하는 주택과 다르게 견본주택을 설치하는 건설사 처벌 / 71
- 17.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지원 / 71
- 18. 측량기능사 경력관리 실시 / 72
- 19.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 등록 등 관리사무 지방이양 / 72

9. 중소기업

- 1.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역 변경 / 73
-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구매방법 추가 / 73
-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효력 연장 / 74
- 4.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조합 참여 허용 / 74
- 5. 직접생산확인제도 시행 / 75
-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확대 / 75

10. 행정·법무

- 1. 공직자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 / 76
- 2. 공무원 출산 등 관련 휴가제도 개선 / 77
- 3. 지방세법 개정 / 77
- 4.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 / 78
- 5.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도입 / 79
- 6. 주민소환제 시행 / 79
- 7. 정부차원의 지원체계 확립 및 주민참여 근거 신설 / 80
- 8. 행자부장관 소속 옥외광고물 정책위원회 설치 / 80
- 9. 방문취업 비자 신설 / 81
- 10. 출소자 숙식보호기간 연장 / 81
- 11. 국민감시제 도입 / 82
- 12. 시간제 근무제도 전 공무원에 확대 / 82
- 13.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실시 / 83

11. 국방·병무

- 1. 예비군 훈련여건 개선 / 84
- 2. 국군포로 및 가족 지원제도 개선 / 85
- 3. 군 복무 중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활동 허용 / 85
- 4. 병 전역전 건강검진제도 도입 시범 사업 / 86
- 5. 공익근무요원제도 개선 / 86
- 6. 인터넷에 의한 병역사항신고 제도 도입 / 87
- 7.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 / 87

II. 부처별제도및법규 신·구대비표

1. 재정경제부	91	15. 건설교통부	168
2. 교육인적자원부	106	16. 해양수산부	179
3. 과학기술부	109	17. 기획예산처	186
4. 법무부	114	18. 국가보훈처	187
5. 국방부	118	19. 중앙인사위원회	189
6. 행정자치부	123	20. 금융감독위원회	191
7. 문화관광부	128	21. 관세청	193
8. 농림부	130	22. 조달청	194
9. 산업자원부	142	23. 병무청	196
10. 정보통신부	145	24. 중소기업청	201
11. 보건복지부	147	25. 농촌진흥청	205
12. 환경부	154	26. 특허청	206
13. 노동부	161	27. 식품의약품안전청	213
14. 여성가족부	165	28. 산림청	215



I. 변경되는 주요제도

1. 세제 · 금융

1. 다자녀추가공제제도 신설 및 교육비공제범위 확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02-2150-9142)

-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 저출산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고 다자녀가구에 불리한 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 2007년부터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1인당 100만원을 추가공제합니다.(예 : 자녀 3인 150만원, 자녀 4인 250만원, 자녀 5인 350만원 등)
- ※ 취학전아동 및 대학생의 교육비공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취학전아동을 위해 체육시설에 지출한 수업료 및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출한 비용이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취학전아동의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시

설(태권도장, 수영장 등)에 지출한 수업료도 교육비공제대상에 추가하였고, 근로자 본인이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점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도 교육비공제대상에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2. 모든 부동산 양도시 실지거래가 과세 및 1세대 2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강화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 02-2150-9210~22)

- ※ 양도소득세를 실제소득에 맞게 과세를 정상화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됩니다.
- ※ 또한 1세대 2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과세형평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율이 강화됩니다.
 - 1세대 2주택 양도시 50%, 비사업용토지 및 부재지주소유농지·임야·목장용지 양도시 6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일반세율 적용대상임)

• 1세대 2주택으로서 수도권·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기타지역(수도권·광역시제외 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등은 중과대상에서 제외

• 개인이 재촌*·자경하는 농지와 농업 주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은 중과대상에서 제외

* 재촌 : 농지소재지 시·군·구와 연결 시·군·구에 거주

** ①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농업인 법인

②농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농업과 제조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인정

※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 등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에게 조사권이 부여됩니다.

※ 실거래 지연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부담이 현행 취득세 3배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 과태료부담 과중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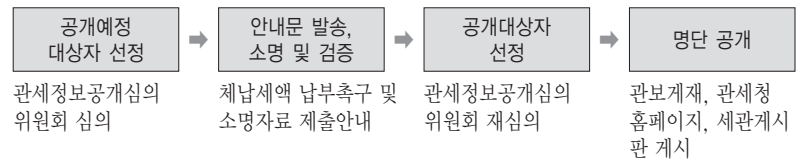
관세청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 042-481-7865)

※ 체납 발생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관세 및 내국세 등(결손처분한 것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포함)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다만, 체납관세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납부중에 있는 경우,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연령·직업·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와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공개합니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고액채납자 은닉재산 신고 민간인 포상금 지급

관세청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 042-481-7865)

※ 체납된 고액의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도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활동을 강화하고자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시행합니다.

※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징수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은닉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은닉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있는 재산
- 세관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

※ 포상금 지급시기 : 체납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

5. 공인회계사시험제도 변경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 02-2150-2356)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02-3786-7760)

※ 2007년도부터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여야 함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 2007년도부터 공인회계사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절대평가)하는데,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가 시험공고한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한 경우 최소선발예정인원 범위내에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회계전문인력 확충을 위하여 제2차 시험에서 과목별로 일정점수 이상 득점한 자는 모두 합격처리하는 절대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절대평가제 전환에 따른 선발인원의 급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인원선발 제도를 도입

- 접근매체의 위·변조 또는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시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
- 다만,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기관 등의 면책이 가능

6.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 (☎ 02-2150-2335)

※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전자문서, 접근매체 등)·기본절차(거래 내용 확인, 오류정정 등)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용자 확인에 필수적인 사용자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등 접근매체에 대한 발급자의 의무*를 규정
 - *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
- 비서면성·비대면성이라는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내용의 확인* 및 오류의 정정요구·절차**를 명확화
 - *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용자가 거래명세의 서면 제공을 요청시 2주 내에 제공
 - ** 이용자가 오류에 대해 정정을 요구한 경우, 금융기관 등은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 해킹, 전산장애 등에 의한 사고시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책임부담토록 하였습니다.

※ 전자지급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는 금융기관에 대해 수취인의 독립적인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
-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시기전까지는 거래 철회*가 가능토록 규정
 - * 급여이체 등 대량·예약이체는 약정에 의해 철회가능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전자화폐 등의 양도가능성, 전자화폐의 지급효력, 전자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안전성·건전성 기준의 준수와 거래기록의 생성·보존을 의무화
- 공인인증서의 활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와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이용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금융기관 등은 계약체결시 약관을 이용자에게 공개토록 하고, 이용자가 요청시 전자메일 등을 통해 설명하도록 규정

□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 문제 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절차를 마련
토록 규정

※ 금융기관이 아닌 전자금융업자(예, 통신회사)가 금감위의 허가·등
록후 전자지급과 관련한 일부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허가), 전자자금이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등(등록)

□ 다만, 소규모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촉진·전자금융업 활성화를 위해 등록을 면제

※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건전성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 금융감독위원회는 전자금융업무·재무상태 보고, 검사 등을
통해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를 감독

* 비금융기관인 전자금융업자는 비금융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토록 의무화하고,
검업제한(전자화폐발행자), 건전경영지도등을 통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

□ 또한 IT자회사, 외부발주업체 등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금융기
관·전자금융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감독(제휴계약서 심사 등)

7.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 02-3786-8249)

※ 복잡하고 전문화된 보험상품 내용을 소비자에게 신속·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보험상품 설명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보험상품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한 기존 상품요약서를 보험계
약자가 실제 구매한 가입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한 상품
설명서로 대체하였습니다.

· 상품설명서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및 불완전판매의 우려가
높은 사항*을 집중 안내토록 하고

* 보험계약 해석과 관련하여 민원이 다발되고 있는 사항, 보험금 지급관련 오해
우려가 있는 사항,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계약에서 보장되나 판매하는 보험계약
에서 미보장되는 사항 등

·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보험계약 관련 전문용어는 일상용어
를 중심으로 표기하고 최소 10p 이상의 글자크기 사용 및 필요시
배색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상품내용을 충분히 알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
도록 계약 권유시에는 가입설계서, 청약시에는 상품설명서, 청약
서부본 및 약관 등을 제공하고,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할 때에
는 보험증권을 제공토록 보험모집 단계별로 제공서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품설명 누락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확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상품설명서 하단에 보험계약자가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음'을 직접 서술식으로 작성한 후 서명

-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 방지 및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모집자 실명제*** 실시하였습니다.

*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 등에 보험모집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기재 의무화

2. 산업 · 에너지

1. 에너지 다소비업자에 대한 에너지 진단 추진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팀 (☎ 02-2110-5421)

- ※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이상의 에너지 다소비업자는 2007.1부터 에너지 진단기관으로부터 5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매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진단대상 사업자에게 진단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면, 진단대상 사업자는 에너지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진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진단기관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한 에너지 손실요인 발굴 및 개선안을 도출한 진단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연간에너지사용량 5,000toe이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에너지 진단 비용의 70%를 지원하여 진단의무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 전력시장 거래제도 개선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전력시장팀 (☎ 02-2110-5523)

- ※ 발전회사의 고정비를 보상해 주는 용량가격에 지역별 적정설비예비율에 연계한 **지역별 용량가격 계수**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현행 용량가격은 발전여부와 관계없이 발전사가 입찰한 가용 용량에 대해 용량가격을 지급하고 있어 발전설비 과잉투자가 우려되므로, 지역별로 발전설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용량가격계수를 적용하였습니다.
- ※ 전력량 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발전사 변동비에 **송전손실계수**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력시장에서는 경제급전원칙(經濟給電原則)에 따라 변동비가 낮은 발전기부터 발전합니다. 이에 따라 송전손실이 큰 발전기가 먼저 가동될 수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낭비요소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시장가격에 송전손실계수를 적용하였습니다.
- ※ 기저시장가격을 폐지하고 **기저발전기에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현행 전력시장에서는 기저발전기(원자력, 석탄)와 일반발전기(LNG, 수력 등)에 별도의 시장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전원별(電源別) 경쟁이 제한되어 적정 전원(電源)구성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단일시장으로 이행하기 전까지는 판매부문의 재무위험 해소를 위해 기저발전기에 상한가격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과학기술부 기초연구지원과 (☎ 031-436-8605)

※ 대용량·고효율 청정에너지원으로 기대되고 있는 핵융합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은 우리들의 후손들을 위한 차세대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핵융합에너지란, 플라스마 상태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가벼운 원자핵(중수소, 삼중수소)들이 서로 융합되는 과정에서 감소된 질량으로부터 변환되어 생성된 에너지를 말합니다. 플라스마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고체, 액체, 기체가 아닌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우주 구성 물질의 99%를 차지하는 제4의 물질 상태를 말합니다.

□ 핵융합에너지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 핵융합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과학기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주요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해 구성하여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핵융합에너지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고, 핵융합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건설·운영 사업 및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연구개발사업과 이후 실증로(DEMO) 건설로 이어지는 국가핵융합에너지 개발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 KSTAR (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 ITER의 사양을 적용한 토카막형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

* 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 열출력 500MW (한국 표준원전의 1/6 규모)의 핵융합실험로 건설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EU,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등 7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 공동프로젝트

4.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 강화

과학기술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 (☎ 02-2110-3734)

※ 국가 R&D사업의 결과물을 개인명의로 특허 출원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재산권 보호 및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특허 출원시 연구과제별 고유번호, 지원부처, 연구과제명 등 정부지원 관련 정보를 기재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5.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 02-750-1371)

※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대상 기준을 폐지하여 종래 월 소득평가액 14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기존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장애등급이나 국가유공 종류 등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이 통신요금을 감면받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경우 월 소득평가액 14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여 모든 저소득층이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 월 소득평가액 상한을 폐지하는 경우 감면대상자가 13만명 정도 늘어나고, 감면금액도 103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함.

※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대상 서비스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추가하였습니다.

□ 현행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대상 서비스는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114안내, 무선호출에 국한되어 있어 현재 보편화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감면대상에 포함한 것입니다.

□ 감면대상 서비스에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하는 경우 감면대상자가 12만명 정도 늘어나고 감면금액도 15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6. 미인증 및 개조·변조·복제기기 관련 처벌 강화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기획단 (☎ 02-750-2423)

※ 정보통신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받은 기기에 한해 판매·유통·설치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미인증 기기를 제조·수입한 자와 판매한 자만 처벌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미인증 기기를 무선국에 설치한 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 또한, 현재는 인증받은 기기를 개조·변조·복제한 자만 처벌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개조·변조·복제한 기기의 판매자 및 무선국에 설치한 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이로 인해 불법 정보통신기기의 판매자 및 무선국 설치자에 대한 강한 규제가 가능해져 불법 기기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키고 정보통신기기 제조 산업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우편환, 우편대체 지급증서 권리소멸에 따른 최고절차 및 국고귀속 후 지급 근거 마련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단 예금사업팀 (☎ 02-2195-1359)

- ※ **현행 우편환, 우편대체 지급증서는 유효기간 경과 후 3년이 지나면 권리소멸에 따른 최고절차가 없이 국고 귀속되었으나 법개정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전 지급청구하도록 최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국고에 귀속된 우편환, 우편대체 지급증서는 고객의 지급 청구 시 지급할 수 없었으나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국고귀속 후에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수취인(수령권자)이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최고(催告)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 수취인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우편환증서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수취인이 최고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이로 인해 우편환 및 우편대체 지급증서 권리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소멸시효에 따른 금전상 손실을 방지하여 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명세서의 기재요건 완화

특허청 특허심사정책팀 (☎ 042-481-5399)

- ※ **발명(실용신안의 경우 ‘고안’ 이하 같음)의 상세한 설명사항의 기재 요건에서 목적·구성 및 효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한 것을 삭제하고, 특허출원인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편리하고 다양하게 그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명세서에 기재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사항에는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나, 발명 기술의 다양화·복잡화 추세에 따라 특허출원인이 현재의 기재요건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 사항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특허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하여 그 사항을 설명할 수 있게 됨으로써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9. 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의 도입

특허청 특허심사정책팀 (☎ 042-481-5399)

- ※ 특허청구범위(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원공개시까지 청구범위를 제출하면 출원일을 특허출원시(실용신안등록출원시)로 소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원공개시까지 청구범위 제출이 없으면 해당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 ※ 또한, 출원일로부터 1년 6월 이전에 제3자가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청구할 경우에는 심사청구 후 3월 이내에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토록 하고 기간 내에 특허청구범위 제출이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출원일로부터 1년 6월 이전에 출원인이 심사청구 할 경우에는 심사청구 시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 특허출원 시에 반드시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발명자가 그 발명에 대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특허청구범위의 세부항목 및 설명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발명에 대한 특허청구범위를 효과적으로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0.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대한 사전통지 내용의 명확한 기재

특허청 특허심사정책팀 (☎ 042-481-5399)

- ※ 2개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시하고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특허(실용신안등록)심사관이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서의 청구범위에 2 이상의 청구항(請求項)이 있는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 모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밝히지 아니함에 따라 출원인으로서의 거절이유가 통지되지 아니한 일부 청구항의 거절이유를 알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모든 청구항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일부 청구항에 대한 권리 포기나 보완 조치 등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1. 비밀디자인 청구시기 확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 042-481-5268)

- ※ 비밀디자인의 청구시기를 디자인등록출원시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때까지로 변경하여 비밀디자인 청구시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디자인을 이용한 제품의 개발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필요성이 생기더라도 그 청구시기의 제한으로 인하여 이를 청구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 최근 들어 심사처리기간이 6,7개월로 단축되면서 공개 역시 빨라지게 되어 디자인 공개 전까지 사업 준비를 마치지 못하여 출원 후에 비밀디자인을 청구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구시기를 확대하는 것은 비밀디자인제도의 효과를 제고하여 디자인 등록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디자인 등록출원인의 디자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 포기·거절결정 또는 거절심결된 디자인등록출원의 선출원 지위 배제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 042-481-5268)

- ※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 또는 거절결정 되거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도 해당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선 출원 지위의 배제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협의 불성립으로 거절결정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선출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공보에 게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거절결정 또는 거절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의 지위가 유지됨으로써 선의의 제3자가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창작하더라도 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 포기·거절결정 또는 거절심결이 확정된 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창작한 선의의 제3자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제3자의 디자인 창작에 따른 법적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3. 디자인 無심사등록출원에 대한 등록거절결정 사유 확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 042-481-5268)

- ※ 디자인 無심사등록출원에 있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창작이 용이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의복·침구 등의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 無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경우에도 디자인 無심사등록이 허용됨으로써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 일반인의 디자인 이용이 곤란하게 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無심사디자인등록이 방지됨으로써 창작성이 희박한 디자인은 누구든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디자인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4.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 확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 042-481-5271)

- ※ 상표법상 보호되는 상표의 대상을 색채, 홀로그램¹⁾, 동작 등을 비롯한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것까지 확대하면서 그동안 상표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비전형적인 상표도 상표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 상표의 시장가치가 증가하고,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유형의 상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 상표의 범위가 협소하여 상표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상표의 선택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기업 등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과 이익을 보호하고, 상표에 대한 수요자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레이저 광선을 이용하여 입체상(立體像)을 재현하는 간섭 굴무늬를 기록한 매체

15. 출원변경의 인정범위 확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 042-481-5271)

※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간 변경출원

- 기존의 상표등록출원과 서비스표등록출원 간에만 인정되던 변경출원을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록출원, 단체표장출원 상호 간에도 인정하여 변경출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변경출원은 출원의 주체 및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출원의 형식만을 변경하는 제도로써 이는 출원인이 상표제도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출원의 종류 혹은 방식 등을 적법하지 못하게 기재한 경우 이를 시정하여 선출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재 출원으로 인한 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현행법상 상표, 서비스표 간에만 인정되고 있는 변경출원을 단체표장등록출원까지 확장할 경우 선출원의 이익을 계속 향유할 수 있고 재 출원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변경출원제도의 효과제고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의 변경출원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을 인정하는 한편, 원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었거나 무효 또는 취소심판으로 원등록상표가 소멸된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 상표법 제도에서 원 등록상표(원 출원상표)에 대한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²⁾ 또는 지정상품 추가갱신등록출원 후 원등록상표(원출원상표)에 대한 소멸사유가 발생시에는 신규출원을 다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개정안처럼 변경출원이 인정될 경우 이를 새로운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어 출원일자 소급으로 인한 선출원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 원등록상표권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이러한 심판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변경출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출원인이 변경출원제도를 남용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의 효력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원등록상표만 해당됨

16.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의 연장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 042-481-5271)

※ 상표등록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출원공고 후 1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상표심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권리를 신속하게 부여하기 위하여 이의신청기간을 비교적 단기간으로 규정하였으나 최근 심사관 증원에 따른 심사처리 기간 및 이의심사 처리기간이 단축되면서 국내 상표관계자들로부터 이의신청기간을 적정화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프랑스, 일본 등 외국으로부터도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³⁾

3) 양국간 특허청장 회담 및 심사관 회의에서 자주 건의되던 사항이며 이밖에 EU상 공회의소에서도 건의되었던 사항임.

-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이 짧아 이의신청제도의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이 한 달 연장되어 제3자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해짐으로써 상표심사가 충실해지고 상표분쟁의 사전예방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7. 상표의 선사용이 있는 경우 그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 인정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 042-481-5271)

※ 특정한 상표를 사용하던 중 타인이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받은 경우 그 상표의 선사용자에게 계속하여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상표의 진정한 권리자로서 선사용이 있었으나 제3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상표사용을 배척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상표권 이전료를 요구하는 사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사용자에게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인정될 경우 상표모방자의 기대이익이 축소되어 상표모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모방상표의 등록차단 강화가 모방상표에 대한 사전적 규제라면 선사용자에 대한 사용권 부여는 사후적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해당 상표의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에게는 선사용자에 대하여 오인·혼동방지표시 부착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상표권자의 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와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과 수요자의 신뢰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농림 · 해양

1. 쌀 브랜드 육성사업 실시

농림부 소득관리과 (☎ 02-500-2117)

- ※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을 높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쌀 수입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신규로 실시합니다.
 - 2010년까지 시·군단위 대표브랜드 100개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며 브랜드쌀 생산·유통노력을 평가하여 우수브랜드경영체를 집중육성할 계획
 - 시장·군수가 주도하여 브랜드경영체 통합 등 규모화를 추진하고 브랜드경영체는 농가 조직화·규모화 및 계약재배 내실화를 통하여 품질 균일성과 안정적인 공급물량을 확보토록 유도
 -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및 홍보를 전개하여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시·군단위 규모화된 브랜드경영체가 브랜드쌀 생산·유통을 전담하도록 육성
- ※ 우선, 2007년도에는 전문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8개 브랜드 경영체에게 브랜드 경영체의 노후화된 시설현대화 및 컨설팅, 농가 조직화 교육·홍보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2007년 사업량 및 사업비 : 8개소, 국고보조 72억원(시설현대화 64억원, 교육·홍보 8억원)

2. 농지내 축사설치 용이

농림부 농지과 (☎ 02-500-1670)

- ※ 농지내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전용 또는 신고를 거쳐야 가능했으나, 농지법 제2조(농지의 정의)를 개정하여 축사부지도 농지로 보아 농지에 축사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축사의 부지도 농지법 관리대상에 포함되므로 축사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전용절차를 거쳐야 가능하게 되므로, 불법용도 변경 방지 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농지의 정의 변경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내년도내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며, 공포후 6월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 ※ 향후, 축사부지를 농지 정의에 포함시킴에 따른 관련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농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농지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내)할 계획입니다.

3. 조건불리직불제 지원기준 완화

농림부 농지과 (☎ 02-500-1673)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직불금 지원 대상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 지역사회 유지 및 활성화,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라는 직불제 도입취지상 사업대상 면적의 확대가 필요하며, 국회·농업인 단체 등으로부터 전작지역 및 중산간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 따라서, 육지의 경우 오지면을 일반면과 달리 경지경사도를 완화하고, 도서는 전도서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오지면의 경우 타지역과 비교하여 정주여건이 더 열악한 지역으로 경지경사도를 일반면과 달리 14%에서 7%로 낮추었으며,
 - 도서지역의 경우 현재 도서개발촉진법상의 도서만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영농조건 등이 도서개발촉진법상의 도서와 별차이가 없으므로 모든 도서를 지원대상에 포함

4.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농림부 여성정책과 (☎ 02-500-1605)

※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2007년 1월부터 종전 만 5세 이하 아동에서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아동까지 확대됩니다.

- 이에 따라, 2007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중 형편상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아(2000.3.1~2001.2.28)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 종전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나, 2007년 부터는 만 5세 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게 됩니다.

※ 또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2006.4.28)으로 지원대상 지역이 종전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준농어촌지역(「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다만, 당해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함)

5.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농림부 여성정책과 (☎ 02-500-1605)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를 둔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육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2007년 1월부터 종전 만 5세 이하 아동에서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아동까지 확대되며, 지원단가도 종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25%(5세아의 경우 50%)에서 35%(5세아의 경우 50%)로 인상하여 지원됩니다.

□ 이에 따라, 2007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중 형편상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아(2000.3.1~2001.2.28)를 둔 농업인의 경우 종전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나, 2007년 부터는 만 5세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게 되며, 지원단가도 인상(정부보육단가의 25%에서 35%로 인상)되어 최대 월 36천원(0세아 기준)에서 최소 월 17천원(4세아 기준)을 더 지원

※ 또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2006.4.28)으로 지원대상 지역도 종전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준농어촌지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다만, 당해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함)

6.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고령취약가구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농림부 여성정책과 (☎ 02-500-1607, 1609)

※ 사고를 당해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농촌고령가구 등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이 82개 시·군지역에서 2007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 영농도우미는

□ 69세 이하, 농지소유 5ha미만 농업인이 사고(농작업, 농기계, 교통사고 등)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최장 10일간 영농을 대신하게 되며, 도우미 임금의 70%는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2주 이상의 사고농가에서는 지역농협(농협문화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 : 35,000원/일

※ 가사도우미는

- 65세 이상의 농촌지역 고령가구 또는 1달 이상 사고로 가사도움이 필요한 65세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주로 자원봉사자에 의해 세탁, 청소 등 가사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지역농협에서 도움이 필요한 취약가구를 파악하여 도우미를 연계 지원합니다.
- 가사도우미는 종전에 농촌지역의 고령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농촌지역의 실질적 가사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령 가구 등 취약가구로 지원대상을 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생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방문 한국어교육은 시·군에서 운영하며, 결혼초기 집합교육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도우미가 5개월 동안 주3회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과 소그룹 생활상담, 문화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 교육도우미 500명 활동, 수혜대상 농촌 여성결혼 이민자 3,000명

- 생활예절, 다문화교육 및 선진영농현장 방문 등으로 가족간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 가족으로 원만히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부부교실, 가족캠프, 모국방문 등을 운영합니다.

* 부부교실 360부부, 가족캠프 180가족, 모국방문 18가족, 선진영농 현장방문 36가족

※ 교육도우미는 지역자원봉사자, 여성농업인, 퇴직 공무원, 한국 정착에 성공한 여성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한 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합니다. 선발된 교육도우미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후 활동하게 됩니다.

- 교육도우미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1월중에 안내되는 교육도우미 선발 안내에 따라 본인이 활동을 원하는 사업 실시 시·군(농정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에 방문 한국어교육 등 지원

농림부 여성정책과 (☎ 02-500-1607, 1609)

※ 급증하는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해 농림부에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을 9개도 50개 시·군 지역에서 신규로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이며,

방문 한국어 교육과 소그룹 상담, 가족통합을 위한 가족캠프, 모국 방문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8. 농업경영컨설팅 정액 쿠폰제 도입

농림부 경영인력과 (☎ 02-500-1684)

※ 농업경영컨설팅 정액 쿠폰제가 새로이 도입됩니다

- 그동안 컨설팅업체와 농가간 계약을 체결하고 농가가 컨설팅 서비스를 받으면 국가, 지자체가 컨설팅업체에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 유사한 컨설팅 비용이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되고 컨설팅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농가등의 요구충족 여부가 제대로 점검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았습니다

※ 따라서 2007년부터는 컨설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가 희망하는 컨설팅 업체를 선택하여 쿠폰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받으면, 정부가 컨설팅 비용(국가와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 지불을 보증하는 바우처 쿠폰제가 도입됩니다

- 쿠폰단가 : 개별농가 8백만원, 법인 10백만원, 공동마케팅 조직·산지유통전문조직·APC·RPC 30백만원 이내

9.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농림부 농촌진흥과 (☎ 02-500-1968)

※ 2007년부터 농촌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통, 역사, 음식, 특산물 등의 문화·사회자원 등 다양한 잠재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이 잘 부각된 특정테마의 휴양·레저·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 도시민에게는 휴양·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주민에게는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농업·농촌 체험공간, 생태공원, 학습전시관 등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50억원 범위(국고 50%, 지방비 50%)내에서 지원하고, 먹거리, 실거리 등 소득창출이 가능한 시설은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

※ 2014년까지 각 시·도별로 2~3개소씩 총 24개지구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4개지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07예산 : 1,570백만원, 사업지구(4) : 경기 안성, 충북 음성, 충남 서천, 전남 영광

10. 농어민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등급 확대

농림부 농촌사회과(☎ 02-500-2086)

- ※ 2007년부터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소득을 보장하고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하여 지원하게 되고, 지원기준등급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의 지원기준등급을 현행 13등급에서 14등급으로 확대·지원
 - 지원기준등급 : (2005) 12등급 → (2006) 13 → (2007) 14
 - 지원내용 : 1-14등급이하는 본인등급 보험료의 1/2 금액 정률지원
15등급초과는 14등급 보험료의 1/2금액 정액지원
 - 지원제외 : 농업소득·임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자
(다만, 간이과세자와 농업·임업 또는 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하는 자는 제외)

11.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02-500-1812)

- ※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공포(2006.9.27)됨에 따라 2007년3월 28일부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종류가 간소화되고, 인증유효기간도 2년으로 연장됩니다
 - 현재 4종류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3종류(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간소화되고 “전환기유기농산물” 인증이 삭제되며, 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이 신설
 - 1년으로 되어 있는 인증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 다만,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유기농산물은 종전과 같이 1년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유지
- ※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종전에는 “생산자”와 “수입자”만 인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도 인증신청 가능
- ※ 인증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 종전에는 부정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인증기준 미달로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도 인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형의 확정 또는 처분일로 부터 1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게되며,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5년마다 자격요건 심사받아야 함

※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됩니다.

- 자재생산·유통업체가 요청하는 자재에 대해 농촌진흥청장이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경우 그 자재의 주성분,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가능성 등 관련정보를 공개

12. 농림기술개발사업 과제구분 변경 및 지원규모 확대

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과 (☎ 02-500-1797~8)

※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연구 과제별 지원규모가 2007년부터 확대됩니다.

- 3종류로 되어있는 세부사업 구분이 “기획과제, 일반과제”의 2종류로 간소화되고, 과제별 지원금액 한도가 기존의 10억원·5억원에서 기획과제 50억원, 일반과제 10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기획과제는 정책필요성, 기술개발 시급성, 농림기술로드맵, 미래 유망기술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정부가 과제들을 선정하여 연구팀을 공모하는 과제입니다.
- 일반과제는 농산업체, 영농조합법인, 연구기관, 대학 등의 연구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 농림기술개발사업이 산업화·실용화 연구를 지향함에 따라 연구팀에 산업체가 참여할 경우, 연구팀 선정 평가시에 가점을 부여받아 연구수행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 연구팀 선정 평가뿐만 아니라, 기술료의 감면이나 연구비부담의 경감 등의 혜택도 농림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개정작업을 거쳐 2007년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13. 쌀·현미의 품종명 표시방법 변경

농림부 소득관리과 (☎ 02-500-2117)

※ 쌀·현미의 다른 품종 혼입율의 허용범위의 계도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는 표시된 품종명과 다른 품종이 20%를 초과할 경우는 거짓표시로 처벌됩니다.

※ 품종명 표시방법

- 품종명 표시 : 다른 품종 혼입이 20%이하인 경우
- 계통명 표시 : 품종명이 불확실한 경우
 - * 국내산은 일반계, 다수계로, 수입산은 단립종, 중립종, 장립종으로 표시
- “혼합비율” 또는 “혼합” 표시 : 품종, 계통이 혼합된 경우
 - * 표기 예1) 혼합비율 표시 : 추청(70%), 동진(30%)
 - 예2) 혼합비율을 모를 경우 : “혼합”

※ 위반자에 대한 벌칙

- 거짓표시 및 과대광고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
 - * 품종명을 표시한 쌀·현미에 다른 품종이 20%이상 혼입된 경우 포함
-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표시위치, 글자크기) :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14. 과실브랜드육성 지원사업 추진

농림부 과수화훼과 (☎ 02-500-1882)

※ 2007년 1월부터 다국적 과실브랜드(Sunkist, Dole, Zespri 등)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과실 대표브랜드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됩니다.

- 과실의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일관된 품질관리를 기하여 일반 과실과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과실브랜드화 사업을 전국 및 광역 단위로 구분하여 추진하게 되며,
- 이를 위해 브랜드 경영체를 전국공동브랜드 1개소, 광역공동브랜드 20개소를 2010년까지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2007년도에는 전국 1개소, 광역 7개소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 2007년도에 지원하는 예산은 전국공동브랜드 2,667백만원, 광역공동브랜드 1,120백만원으로써 과실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생산혁신 자재 지원에 사용됩니다.

※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일관된 품질관리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소비자들의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국내 과실 대표브랜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5.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지원요건 강화

농림부 과수화훼과 (☎ 02-500-1882)

※ 과원 영농규모화사업을 악용하여 투기를 하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 사례가 일부 발생되고 있어 지원요건을 강화하여 부당·부정적인 방법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① 전매 제한기간 경과 후 과원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매도된 과원

(개선) ① 전매 제한기간 경과 후 과원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이상 경작된 과원으로 개정, 경매로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과원도 1년이상 경작을 이행토록 규정 신설

② 지원제외자에 “허위·담합으로 지원 받은 자”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 받은자” 를 추가 신설하여 부당한 방법의 지원을 사전에 차단

③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지원자 행정기관 통보” 규정을 신설하여 과원폐원지원 사업 등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 요건을 강화

※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 및 관리요건 강화로 투기를 예방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과수 재배농가의 과원규모 확대와 집단화로 경쟁력 제고 및 개방적응력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6. 배추·무 포장유통 전국 공영도매시장 전면 실시

농림부 유통정책과 (☎ 02-500-1824)

※ 배추·무를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에는 골판지 상자, 플라스틱상자, 그물망, PE대로 포장하여 출하하여야 합니다.

□ 배추·무는 도매시장내 다듬기(재선별, 재포장)가 금지되므로 포장출하품만 거래가 가능

※ 정부에서는 공영도매시장의 배추·무의 포장유통을 촉진하고, 포장화로 인한 생산자, 산지유통인 등 출하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포장재 비용을 지원합니다.

□ 배추·무를 농산물 표준규격으로 공영도매시장에 포장출하하는 생산자 및 산지유통인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역산지유통인연합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포장재비를 지원

* 공영도매시장 출하 지원 비율 : 그물망·PE대 90%, 골판지상자 60%, 플라스틱 상자 80%

17. 위생시설 인증을 위한 시설자금 금리 인하

농림부 식품산업과 (☎ 02-500-1847)

※ 위생시설 인증(HACCP, ISO22000)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지원의 금리가 2006년의 경우 4%(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인단체는 3%)에서 2007년 사업부터 농업인·비농업인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연 2%의 금리로 인하됩니다.

※ 위 자금지원을 원하시는 사업운영자 분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공사로 사업신청을 하신 후 재무구조, 영업실적, 사업능력 등 사업능력평가와 지원적정성 평가 등을 거쳐서, 해당 요건을 만족시키는 업체에 한하여 자금 지원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18. 비닐하우스 재해경감대책사업 지원

농림부 채소특작과 (☎ 02-500-1866)

※ 재해에 취약한 비닐하우스중 100m²이상의 시설보강을 원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규모 및 재해취약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 농업인 : 농업·농촌기본법 규정에 의한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농업법인 포함)

* 철골(유리, 경질판) 온실은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세부사업 메뉴 : 보강지주, 조리개 교체, 기초설치, 온풍덕트 등

* 자재 및 부속시설 사용기준(예시)

사업메뉴	시설자재 사용기준
보강지주	· 자재사용은 KS규격 농업용철재파이프(또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농업용파이프기준 합격품)에 한함 · 지역별 내재해 강도기준(적설, 풍속), 기존시설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내 2~4m마다 1개씩 설치
조리개교체	· 강판조리개, 수지조리개(철선조리개는 제외)
기초설치	· 예시: ￠30cm×70cm(높이)@180cm 등
온풍덕트	· 전문시공업체예시 : 온실시공능력평가 공시업체 등

* 농업용파이프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산업표준화법상 시험검사기관)

· 중소기업청, 기술표준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 농업용파이프 합격기준 : 다음 허용오차 범위내에 속한 경우 합격품 인정
 - (외경) $\pm 0.5\text{mm}$ 이내, (두께) 1.6t미만 : $+0.13\sim-0.03\text{mm}$, 1.6t이상 $+0.17\sim-0.05\text{mm}$ (굽힘시험) 90° 로 굽혀서 균열이 생기거나 이음내가 떨어지지 않음 (인장강도) $400\text{N}/\text{mm}^2$ 이상, (아연 부착량) 양면시험기준 $300\text{g}/\text{m}^2$ 이상
- * 사업메뉴, 단가, 사업량 등은 기존시설의 재해취약성 등을 고려, 농업기술센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일부 조정가능

19. 닭 ·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02-500-1995)

- ※ 현재 닭,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은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도축이후 유통과정중 미생물의 재오염을 막고 수입산과 구별을 위해 포장유통이 의무화 됩니다.
 - 포장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우선 1일 도축수 8만수 이상되는 도축장의 영업자로 규정
 - * 제도정착 유도를 위해 우선 대단위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최종 판매업소까지 포장유통을 의무화할 계획
- ※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제고하고 국내산 축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시행

농림부 축산정책과 (☎ 02-500-1995)

- ※ 2007.1.1부터 축산업 등록농가(한·육우, 젖소, 돼지, 닭 사육업)는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축산농가가 적정한 사육환경을 유지할 때 가축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각종 약품비용 절감과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 많은 부가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쾌적한 농촌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 ※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축산업등록 농가수는 전국적으로 55천호 (2006.3월말 현재)
 - 한·육우 29.6천호, 젖소 8.8천호, 돼지 9.8천호, 닭 6.7천호
- ※ 축산업등록 농가가 ‘적정가축 사육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축산법 제4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축산농가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고, 축사환경 개선과 가축질병 예방 등 친환경을 위해 2007.1.1부터는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21. 축산 의무자조금 대의원 선출을 위한 지자체의 축산통계조사 폐지

농림부 축산경영과 (☎ 02-500-1995)

- ※ 2007년부터 축산 의무자조금 대의원 선출을 위한 별도의 조사는 폐지하고, 최근 1년 이내의 축산 행정통계자료를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의무자조금 조성을 위한 대의원 선출시(초년도 및 4년 주기) 지역별 대의원수를 배분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부장관에게 축산업자의 수 및 가축사육두수 등을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축산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조성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매년 실시되는 축산통계조사와는 별도의 통계조사를 하도록 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 축산 의무자조금 대의원 선출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실시하는 축산 행정통계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 공익수의사제도 신설·운영

농림부 가축방역과 (☎ 02-500-1995)

- ※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 및 동·축산물 검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수의사」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합니다.
- 공익수의사는 병역법에 의해 공익수의사로 편입된 자로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축방역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 받은 자
- 공익수의사는 지자체 등에 배치되어 3년간 종사할 경우 병역 의무가 대체
 - * 유사 대체복무제도 : 공중보건의사(보건복지부), 공익법무관(법무부)
- 자격요건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이며, 농림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과 중위 1호봉에서 3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
- 주요업무는 ①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 및 가축전염병 발생시 긴급 방역조치, 질병예찰, 병성감정, 혈청검사 등의 가축방역, ②원유·도축 검사, 가공장 위생관리,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 ③수출입동물 및 축산물 검역 등
- ※ 2007년부터 매년 150명씩 선발하여 2009년부터 450명의 공익수의사를 가축방역 일선 현장에 배치·운영합니다.

- 국방부가 수의과대학 재학생중에서 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하여 관리하며, 공익수의사에 선발된 자에 대해 4주간의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가축방역 관련 직무교육 등을 마친 후 근무기관에 배치되어 복무

23. 축산물의 표시기준 강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 031-467-1962)

- ※ 2007.1.1일부터는 햄과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에는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한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 예외 : 주표시면이 30cm²이하 제품은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만을 표시, 총 중량비율이 5%미만인 복합원재료는 복합원재료의 명칭만을 표시
- ※ 종전에는 조제유류만 영양소 표시를 의무화 하였으나 2007.1.1일부터는 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등 6개 축산물가공품에는 영양소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24.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 시행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 031-299-2593)

- ※ 친환경유기농자재는 그 종류와 사용원료가 다양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자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 또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는 사용가능한 자재 118종이 지정만 되어 있고 관리제도는 없습니다
- ※ 그리하여 농림부, 산림청, 품관원, 친환경단체 등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협의결과, 품질인증제는 외국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성 있는 품질기준 설정이 어려워 우선 농진청 주관으로 목록공시제를 추진하되,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근거 마련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를 위해 농촌진흥청에 『친환경유기농자재 심의회』를 설치하여 자재검토 심의 및 공시업무를 전담키로 하였습니다.
 - 심의회에서 검증된 자재는 목록에 등재하고 해당자재에 대한 세부정보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업인 교육시 홍보할 계획입니다.

25. 한국농업전문학교 교명 변경

농촌진흥청 한국농업대학 (☎ 031-229-5161)

- ※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1997년 설립된 한국농업전문학교가 수업연한 3년의 전문대학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59조에 의거 “대학” 명칭 사용이 제한되어 왔으나
 - 한국농업대학설치법 제정(2006. 9.27)을 계기로 학교 설립운영 주체를 농촌진흥청으로 변경하고 교명도 한국농업대학으로 변경(2007.3.28)하게 되었습니다.
- ※ 한국농업대학 학제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강화되고 우수한 인재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미래 농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후계농업인력 양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6. 항만근로자 공급방식을 상용화 체제로 전환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02-3674-6653)

- ※ 그동안 항운노동조합이 항만근로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해 오던 체제가 항만물류기업이 항만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하역작업에 투입하는 상용화(常備化) 체제로 개편됩니다.
- 부산항은 노·사·정 세부협약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상용화 체제로 운영되고, 인천·평택항은 노·사·정간 협상을 통해 2007년 상용화 체제가 도입될 계획입니다.
- 항만근로자가 상용화(항만물류기업에 상시고용)체제로 바뀌면 항만근로자에게는 그동안 적용받지 못하던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법적·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항만물류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27. 2톤 미만 선박·수상호텔 등도 선박검사 대상에 포함

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실 (☎ 02-3674-6321)

- ※ 그동안 선박안전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과 수상호텔 등도 선박안전법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선박검사를 실시합니다.
- 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어선이 전체 어선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선박안전관리 법령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해상에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는 등 선박안전법의 적용범위의 확대가 요구되었습니다.
- * 총톤수 2톤 미만 선박 : 약 5만 5천척
- 따라서 총 톤수 2톤미만의 선박과 13인 이상이 상시 이용하는 수상호텔·수상공연장 등 부유식해상구조물에 대하여도 선박의 감항성 확보 및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선박안전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28.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시스템 운영

해양수산부 동북아물류기획단 (☎ 02-3674-6267)

- ※ 내년부터는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거점 확보를 지원하는 금융시스템이 운영됩니다.
- 그동안 우리 물류기업들은 해외투자 성공의 불확실성, 높은 금융 부담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 및 거점 확보에 소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물류정책기본법을 제정, 해외 투자시 가장 부담이 되는 채무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항만의 안정적 물동량 확보 및 물류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9. 수산물 품질인증품목 확대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 02-3674-6924)

- ※ 내년부터는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종전 112 품목에서 136품목으로 확대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 건제품, 염장품, 해조류 제품의 수산물은 기존 60개 품목에서 건제품 2개, 횡감용 6개 및 냉동수산물 9개 품목을 추가하여 78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 수산특산물은 9개 품목에서 송어(훈제), 산천어(훈제) 2개 품목을 추가하여 11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수산전통식품은 43개에서 젓갈류 3개 품목 등 4개 품목을 추가하여 47개 품목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 ※ 품질기준은 중금속, 항생물질 등 안전성 및 위생적 항목의 인증기준을 강화하여 수산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 수목원조성·운영 제도 개선

산림청 산림환경보호팀 (☎ 042-481-4241)

※ 수목유전자원의 서식지 외 보존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목원의 역할이 증대되고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의 생물환경 위협으로부터 수목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수목원 조성·운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07년 6월말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계획 승인 시 기준적합성 확인
 - 수목원조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 함으로써 수목원 조성 사업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 사업지연 또는 부실 사례 방지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제도 운영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인증을 받아 수목원 전문가를 양성하여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여 국내 수목원의 수준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휴양수요에 부응

31.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산림청 산지정책팀 (☎ 042-481-4141)

※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촉진하고 보전산지내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 하였으며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전용 허가권한이 확대되도록 산지관리법과 하위 법령을 개정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 보전산지내 행위제한 완화로 산지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
 - 임업용산지내에서 산촌개발사업이나 수목장림 조성 허용
 - 공익용산지내에서 사찰 신축이 가능토록 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사유에 재해방지 시설 및 산촌개발사업을 추가하고 불법산지전용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
- 연접제한 예외 적용 대상 지형지물 추가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를 추가

32.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 (☎ 042-481-4295)

※ 백두대간의 자연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서 벌채를 하지 아니한 자 대하여 2007년도부터 소득감소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05. 11. 30일부터 제도를 시행하였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2006년도에는 지원하지 못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을 받아 현지확인을 거쳐 지원할 예정
- 지원금액은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월1일 정기금리의 평균금리 적용)을 예산범위내에서 매년 지급
- 지원산림은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의 평균수령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별기령 이상인 산림

※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을 받고자 하면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5 규정에 의한 소득감소지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산림소재지 관한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33. 전국 소나무류 생산 확인제도 실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팀 (☎ 042-481-4076)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인 감염목의 인위적인 이동을 제한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개정하여 2007.3.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도 생산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제명령 조치
- 불법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위해 차량 등의 운송정지명령 도입 등 소나무류 이동단속 강화
- 소나무류의 생산 · 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 · 비치하는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4. 교육 · 문화

1.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개정

교육인적자원부 시설기획담당관실 (☎ 02-2110-6200)

※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의 교사시설에 대한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 등 학교별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교사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학교 내에 복합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복합시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복합시설에는 문화 및 복지시설, 사회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이 있으며,
- 시·도교육감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복합시설을 학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 도심지 학교의 체육장 기준면적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지역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도·시·군·구·자치도 외에 도심지 학교도 기준완화 대상에 포함 시킴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사학연금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기준 개선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단체지원과 (☎ 02-2100-6335)

※ 육아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경우에는 퇴직수당 산정시 종전에는 1/2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였으나 개정후에는 전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저출산으로 인하여 출산 및 육아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육아휴직 등을 대부분 여성들이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사회적 난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국가적 노력에 부합하기 위함

3. 폐교재산활용 촉진을 위한 특례규정 확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 (☎ 02-2100-6366)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해 수의계약의 범위를 문화시설, 공공체육 시설, 지역주민 소득증대시설로 확대하였습니다.

□ 지역소재 학교가 교육문화의 산실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에게 환원시키기 위해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로 활용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 정의 : 농어촌정비법 제2조 8의 가목(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 나목(관광농원사업) 다목(주말농원사업)

□ 지역주민이란 폐교소재의 지자체,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일정 거주요건을 충족한 자를 말함

※ 방치폐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에게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방치폐교란 5년이상 3회 이상의 매각·대부공고에 의해서도 매수자나 대부자가 없는 경우 폐교소재 지자체,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폐교의 전부 또는 일부 기부자(상속인 포함), 5인이상의 지역주민에 의한 공동대부 신청이 있는 경우

※ 지역주민의 복지시설 및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할 경우 농어촌특별세

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폐교재산을 활용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 및 운영비용을 농어촌 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조항을 마련

4. 청소년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제 전환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 02-3704-9363)

※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 등록제인 게임제공업과 자유업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사행성 게임물의 무분별한 난립 및 청소년 보호 등의 문제에 있어 취약하였습니다.

□ 따라서 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사행성 게임물 등으로 사회문제를 유발시킨 게임산업을 건전화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5. 게임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 금지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 02-3704-9363)

- ※ 현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에서는 게임물관련사업자가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재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규정을 악용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게임제공업소와 근접한 장소에서 환전소를 개설하여 게임의 결과로 나온 경품(예 : 상품권)을 일정 수수료를 받고 환전을 해주고 있어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상품권이 단순한 도박의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사행성 게임물이 난립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사행성 게임물 난립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인 환전업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경품 등이 도박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한 경품지급 금지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 02-3704-9363)

- ※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단순히 게임의 재미를 더해 주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품이 환전 등에 악용됨으로써 사행성 심화를 야기하였고 더 나아가 게임이 아닌 도박의 수단이 되어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 경품의 환전으로 인한 사행성 조장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품지급을 금지함으로써 환전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 경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되,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지급기준·지급방법에 따른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제공업소의 사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 출판산업팀 (☎ 02-3704-9639)

※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가 2007년부터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일 1년 이내의 모든 도서는 정가판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2년 12월31일에 고시된 바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따라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는 도서정가제의 대상에서 제외
-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서정가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의 모든 간행물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허용하되 실용도서는 2005년부터,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는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서정가제 허용범위에서 제외됨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 유통과정에서는 책표지에 부착되어 있는 국제표준자료번호(ISBN)의 다섯자리 부가번호 중 제1행(독자대상기호)이 '6'인 간행물로 구별

8. 회원 모집이 가능한 숙박시설을 연계한 회원모집 허용

문화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팀 (☎ 02-3704-9755)

※ 현재 2007년부터 현재까지 금지되어온 휴양콘도미니엄, 가족호텔업, 관광호텔업 등을 연계한 회원모집이 허용됩니다.

- 관광진흥법상 회원모집이 가능한 관광업종들을 연계한 회원모집을 허용합니다.

*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연계한 회원모집은 현재 허용

- 연계하는 관광업종의 사업주가 동일인일 경우에 한정됩니다.
-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회원모집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5. 보건·복지

1.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표시 의무화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 (☎ 031-440-9115-8)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 02-500-1926)

- ※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약 2,800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 향후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젓소·육우를 구분하여 병행 표시하여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
 - 표시방법 : 메뉴판·팻말·계시판 등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
-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2. 희망스타트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 031-440-9656)

- ※ 아동에 대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희망스타트 사업을 새로 실시합니다.
 - 희망스타트사업은 취약지역의 임산부 및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복지·교육(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선, 내년도에는 전국 16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
 -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임산부 및 아동을 대상으로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보건서비스 실시와 부모교육 및 직업훈련·고용촉진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자립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보육(교육)기관 등과 협업 또는, 보완적인 돌봄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

3.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 031-440-9630~4)

※ 서민층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 서민층 노인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월 437~706천원) 부담으로 인하여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에 서민층 노인을 대상으로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의 약 50%를 지원하여 복지서비스 혜택을 확대하고, 노인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낮아지도록 하였습니다.
 - 1인당 지원액 : 월220,000원(실비요양시설), 월300,000원(실비전문요양시설)

4. 노인돌보미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 031-440-9630~4)

※ 재가 서민층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인돌보미 제도를 시행합니다.

-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비해 서민층 노인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에 재가 서민층 노인을 대상으로 월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여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 신체수발(목욕·식사도움·세면도움 등), 일상생활(취사·청소·세탁 등)
 - 주간보호서비스 : 급식, 목욕, 여가생활서비스(취미, 오락, 운동 등)
- ※ 한도 초과시에는 자부담으로 추가적 이용 가능

5.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 지원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 031-440-9630~4)

- ※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주간·단기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 2006년에 농어촌 지역에 종합재가지원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2007년에는 도시지역으로 설치를 확대하였습니다.
 -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그동안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농어촌 및 도시 지역의 재가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 혜택이 확대되고,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종합재가지원센터 :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가정봉사원이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 동안 또는 단기간(45일 범위) 동안 보호하는 등의 서비스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6.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 02-2110-7726)

- ※ 허가된 대부분의 의약품을 등재하여 관리하던 것을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보험적용대상으로 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가격과 효능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 거의 모든 약에 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비용 대비하여 효과가 좋은 의약품만을 선별하여 보험을 적용합니다.
 - 적정약가 유지를 위한 협상절차를 도입하여 보험의 구매력을 높이고 약가산정기준을 개선하여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이 복용하게 됩니다.
- ※ 보험의약품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가격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약값을 재조정하고, 의약품 사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행태를 개선합니다.
 - 급여범위의 확대, 사용량에 따라 약가를 재조정하여 적정한 약가 수준을 유지하고, 의약품 적정사용에 대한 투약 전 점검을 통하여 부적정 사용을 예방합니다.
- ※ 허가단계에서의 의약품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제공하여 의약품 판매관리를 과학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합니다.

7. 건강보험 보험료를 조정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 02-2110-6356~8)

※ 현행 건강보험 보험료를 6.5% 인상·조정하여 2007.1.1부터 적용합니다.

〈변경전〉

- 직장가입자 : 표준보수월액의 4.48% 산정
- 지역가입자 :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에 131.4점을 곱하여 산정

〈변경후〉

- 직장가입자 : 표준보수월액의 4.77% 산정
- 지역가입자 :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하여 산정

※ 보험료를 인상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8.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변경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 02-2110-6353~5)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강화하여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 4천만원 초과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와 소정 신분(가족)관계가 있고,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
- 소득요건 : 피부양자인정기준(고시)에 의한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보험료 납부능력이 상당한 고액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직역(직장·지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약 3,159명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험료 수입 연간 120억원

9.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 대상 품목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본부 의약품안전정책팀 (☎ 02-3156-8023)

- ※ 약사법 제5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성분의 국민다소비 해열제 및 철분제제의 정제, 캡셀제 포장은 2006. 11. 12부터 종전의 블리스터(Blister) 포장방식이 아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된 안전용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며,
- ※ 화장품에서도 아세톤함유 네일리무버, 어린이가 쉽게 마실수 있는 베이비오일류 등에 안전용기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 ※ 안전용기란 5세 미만의 어린이가 5분 내에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또는 고안된 용기로서 포장마개 위 또는 옆을 눌러서 여는 형태의 포장(push and turn cap), 뒷면 포장을 벗긴 후 앞면을 눌러서 여는 형태의 포장(peel and push), 뒷면 포장을 벗겨서 여는 형태의 포장(peel open), 일정 이상의 힘으로 강하게 눌러서 여는 형태의 포장(hard push), 특정방향으로 찢어 개봉하는 형태의 포장(tear open) 등을 말합니다.
- ※ 새로운 포장·용기 형태는 어른들에게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어린이 약물 안전사고를 막는다는 취지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한해 접착제, 의약품 등 각종 화학물질을 음용, 흡입하여 발생한 어린이 약물중독사고가 8,000여건에 이르러 시급한 개선대책이 요구되어 왔으며, 미국은 1970년대부터 중독 방지법을 제정, 운용중입니다.

10. 쉐련형금연보조제(의약외품) 위해성분허용기준설정 및 표시의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본부 의약품안전정책팀 (☎ 02-3156-8023)

- ※ 약사법 제26조8항 및 제34조제5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약사법으로 허가·관리되고 있는 ‘쉐련형 금연보조제’에 대한 타르 등 위해성분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제품에 위해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피우는 금연보조제를 사용하는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발암성 물질인 타르와 일산화탄소는 각각 1개비당 10mg이하이어야 하며, 동 제품은 연초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니코틴은 불검출되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외부포장에 경고(“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타르 및 일산화탄소에 의한 위해성은 담배를 피우는 경우와 거의 유사합니다.”) 문구를 추가 기재
 - 기존 유통중인 제품 또한 시행후 6개월 이내에 위해물질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 신규 제품 허가시 위해성분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로 “의약품허가신청서검토규정(식약청고시)”을 2007년도 1/4분기중에 개정하여 상반기 중에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품의 외부포장에 경고문구 표시, 분기별 측정의무 부과 등 제조(수입)자 준수사항을 약사법시행규칙에 2007년 상반기중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11. 인태반유래원료물질 화장품에 사용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본부 의약품안전정책팀 (☎ 02-3156-8023)

- ※ ‘2006.4.12일자 개정된 『화장품원료지정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에 따라 2007. 1. 1일부터는 ‘인태반유래물질’은 화장품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며, 동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도 수입이 금지됩니다.
- 화장품의 규격관리 체계상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보증하기 어려운 ‘인태반유래물질’의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습제등이 많이 개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물질을 배합하여 마치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배합금지원료로 지정
- 인태반유래물질은 지금까지 부작용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고, 인태반유래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을 생산하는 화장품 회사의 현실 등을 감안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고시 개정(2006. 4.12)후 유예기간을 6개월 정도 두어 2007. 1. 1일부터 시행됩니다.

12. 공동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공동 IRB) 제도 도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본부 임상관리팀 (☎ 02-3156-8124)

- ※ 2006.12.15일자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식약청고시)』입안예고에 의거 다기관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종전에 다기관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각 개별 실시기관에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임상시험을 승인받아야만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었으나, 공동 IRB제도가 도입되면 실시기관장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어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이 가능
 - 다만 공동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임무는 해당 임상시험의 임상시험실시기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정함
- ※ 이번에 입안예고한『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식약청고시)』은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07년 1월 중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13. 의료기기 GMP 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품질팀 (☎ 02-380-1540)

-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 업소의 GMP 적용을 2007. 5. 30일까지 유예함에 따라 2007. 5. 30일 이후에는 모든 의료기기 업소에 GMP 적용이 의무화 되며 GMP 적용을 하지 않은 업소는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란 의료기기 업자가 생산하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품질로 일관성 있게 생산됨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임
- ※ 의료기기업소의 품질관리시스템이 국제적 수준으로 관리됨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기 제품을 판매하도록 관리함에 따라 국민 보건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14.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팀 (☎ 02-2100-6784)

※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결혼이민자가족의 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 이민자가족의 안정과 취학전 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가족아동양육지원 도우미를 양성합니다.

- 자녀 언어지도
- 건강 및 영양지원
- 보육시설 및 학교생활 준비지원
- 육아방법 지도
- 다문화 이해 및 관용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 이로 인해 결혼이민자가족 및 그 자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아동 양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가족정책팀 (☎ 02-2100-6782)

※ 아이돌보미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2007년 신규 사업으로,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동 사업은 현행 시설 위주의 보육정책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돌봄 수요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 관혼상제 등 집안행사 및 양육자의 질병, 야근 등으로 인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가 발생하거나, 아동의 건강상태 및 질병(아토피 등)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양성한 아이돌보미를 개별가정에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 아이돌보미 사업은 개별 가정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 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육아공동체 형성에의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6.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현실화

여성가족부 인권보호팀 (☎ 02-2100-6877)

-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종류를 보호기간 및 입소자의 특성에 따라 단기보호시설(보호기간 6개월, 필요 시 3개월 연장 가능), 장기보호시설(2년), 외국인보호시설 및 장애인보호시설로 다양화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됩니다.
-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에 대해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이를 비공개사항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 종전에는 가해자인 보호자와의 마찰 등으로 말미암아 가정폭력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도 취학할 수 없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규정 신설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해아동을 반드시 취학시켜야 하며, 피해자 등의 신상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함.
- ※ 국가 또는 지자체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해자 대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 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 종전에도 치료비 지급이 가능하였으나 지급 후 의무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관청에서 구상권 행사의무 부담으로 피해자 치료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로 지원이 저조하였음.

※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운영 등을 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예방교육을 통해 성장기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가정폭력의 범죄성과 폐해를 인식시키고 인권의식을 함양하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장래 발생 가능한 가정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정폭력상담소는 최소 49.45제곱미터(15평) 이상, 보호시설은 입소 정원 1인당 6.6제곱미터(2평) 이상 규모로 하고, 일정 인원 이상의 종사자를 두도록 하는 등 설치·운영기준 등을 강화하여 시설의 물적·인적 기반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가정폭력 상담소장 및 보호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자질과 역량을 갖춘 경력자가 시설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강의실 규모를 수강생 1인당 1제곱미터(0.3평) 이상으로 하며, 수강료 상한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 종전 미신고 교육훈련시설은 3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경우 시행일로 소급하여 신고된 것으로 간주함.

□ 그동안 민간 자율로 운영되던 교육훈련시설을 제도권에 편입함으로써 무분별한 시설의 난립을 막는 한편,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상담원이 양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결혼이민자 등 이주여성들을 위한 전용 콜센터(1577-1366)**를 설치하여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적절한 보호·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긴급 피해 대응이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어 피해자의 현실적인 보호와 지원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환경

1.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환경부 자연자원과 (☎ 02-2110-6755)

- ※ 국립공원의 공공성 확보와 사회적 갈등해소 및 일반국민의 문화·휴식공간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차원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됩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은 미정)
- 국립공원 입장료는 1970년대 공원관리비용의 재원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2006.12월 현재 20개 국립공원 중 경주국립공원을 제외한 19개 국립공원에서 입장료를 징수 중
 - ※ 입장료 : 어른(1,600원), 청소년·학생(600원), 어린이(300원)
- ※ 그동안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합동징수에 따른 국민 불만과 거주민, 사찰 등으로부터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원관리정책에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만,
- ※ 입장료 폐지로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불만과 환경권 침해논란 등 각종 사회적 갈등요인에 대한 해소와 함께 자연자원 체험기회 확대, 문화·휴식공간 제공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한 부하검사 실시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 02- 2110-6859)

- ※ 무부하검사방법으로 실시하던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한 정밀검사를 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하여 정밀하게 검사하고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합니다.
- 부하검사 방법의 적용에 따라 검사수수료가 현행 18,000원에서 30,000원으로 변경
- 매연 기준

구분	제작일자	매연		
		1모드	2모드	3모드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	5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 ※ 차량이 일정기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한 정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차량 운행중 대기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차량을 선별하고 효율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함으로써 대도시의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내역 공지 및 품질보고서 발간

환경부 수도정책과 (☎ 02-2110-6876)

※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민에게 신속히 공지하여야 하며, 원수에서 정수까지의 수질 및 생산과정, 기준초과내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가 포함된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 단기간 내에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큰 독극물 유입 또는 수돗물로 인한 수인성 질병발생이 확산되거나 분원성 대장균군, 탁도, 잔류염소, 불활성화비, 수소이온농도, 질산성질소 등이 초과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기타 수질위반 사항은 30일 이내에 공지

· 오염물질에 따른 건강상 위해정도, 주민행동 요령, 조치계획 등을 지역방송 및 신문, 확성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지

□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담긴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매년 1회 이항 발간하여 국민들에게 공개

· 취수지점에서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
· 원수의 수질정보, 수질기준 및 법정수질검사 결과 및 수질기준 초과 현황
· 주민협조사항, 수돗물 이상 신고방법, 수돗물의 음용방법 등

※ 오염물질에 따른 건강상 위해정도, 주민행동 요령 등을 홍보하여 주

민 스스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상 위해 예방에 기여하고 수도사업의 신뢰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강화

환경부 수도정책과 (☎ 02-2110-6876)

※ 현재 지자체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도시설의 수질검사는 표본수가 적어 대표성이 부족하고 수도꼭지의 수질검사는 급수인구 규모별 검체수만 규정하고 있는 등 시료의 채취지점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지점을 명확히 하고 수도꼭지의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수질검사지점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수돗물 수질검사의 시료채취지점을 급수과정에 따라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급·배수관, 저수조, 수도꼭지로 막연하게 규정하였으나, 정수장, 주배수지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구역내 가압장 유출부, 광역 및 외부수수계통의 수수지점, 정수계통이 다른 계통과 합쳐지는 지점, 급수구역 관말, 수도꼭지로 명확히 함

□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질검사지점을 변경할 수 있음

※ 수도시설의 수질검사 표본수가 증가되고, 검사지점을 명확히 함에 따라 수질기준 초과할 경우 원인분석이 용이하여 신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 보다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 시행

환경부 수도정책과 (☎ 02-2110-6876)

- ※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돗물의 수질기준 강화, 정수처리기준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정수장 운영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수질오염사고 등에 취약한 실정으로 수돗물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기술인력 확보가 필수적임에 따라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 · 시행됩니다.
- 2009년 1월 1일부터 정수장 규모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교육제도의 도입으로 수도시설운영인력의 있음에 따라 수도시설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화장품 유리병 재활용 의무대상에 포함(분리배출대상)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02-2110-6955)

- ※ 화장품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폐화장품유리병 배출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재활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종전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재활용의무대상으로 전환합니다.
- 종전에는 다 쓴 화장품유리병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버렸으나, 2007.1월부터는 분리수거함에 배출해야 함
- 화장품을 제조 · 수입하는 사업자는 화장장 유리병 용기에 분리배출표시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해야 함
- ※ 화장품유리병을 재활용의무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주민의 분리배출시 혼동을 줄이고, 원자재 수입대체 효과와 쓰레기양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 대기환경기준 강화

환경부 대기정책과 (☎ 02-2110-6782)

※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대기환경개선 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 강화
 - 연간평균치는 현행 $70\mu\text{g}/\text{m}^3$ 에서 $50\mu\text{g}/\text{m}^3$ 으로, 24시간평균치는 $150\mu\text{g}/\text{m}^3$ 에서 $100\mu\text{g}/\text{m}^3$ 으로 상향 조정
- 이산화질소(NO₂) 환경기준 강화
 - 연간평균치는 현행 0.05ppm에서 0.03ppm으로, 24시간평균치는 0.08ppm에서 0.06ppm으로, 1시간평균치는 0.15ppm에서 0.10ppm으로 강화

※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행정목표의 강화를 통하여 수도권 특별대책 등 대기보전대책이 추진됨에 따라 대기질 개선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강화

환경부 수질정책과 (☎ 02-2110-6823)

※ 이·화학 중심의 「수질환경기준」이 생태적 건강성 평가를 반영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바뀌고, 건강보호항목도 종전 9개에서 17개로 대폭 확대하며,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 등급별 생물지표종을 도입하여 물환경에 대한 생물학적 평가를 추가하는 등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해 나갑니다.

- 추가되는 건강보호항목 :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안티몬
- 기타 추가되는 항목 : 분원성 대장균군, 클로로필-a
-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이해표를 추가하여 물의 상태에 따라 서식하는 어류와 저서생물(하천·호소의 하부에서 주로 서식하는 생물), 서식지 및 생물특성을 제시

※ 위해물질 항목과 생물학적 지표조사가 확대됨에 따라 물의 환경정책과 상수원 관리목표도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 중심으로 크게 바뀌고, 예산투입 등에도 변화가 따를 것이며,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면 물에 대한 국민인식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9.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 02-2110-6715)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하고, 간이평가절차 도입 등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
- 평가서, 환경영향조사서 등의 환경영향평가관련 정보의 공개·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정보제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eiass.go.kr>)을 운영(2006.5.1)
-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재실시
- 평가서를 보완할 내용이 경미하거나 사후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건부 협의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신설
-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등에 대한 변경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
-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협의기준은 협의내용에 포함하여 관리
-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초안과 본안평가서를 하나의 절차로 하여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평가 절차를 도입하고,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여부를 결정

※ 간이평가절차 도입 등 환경영향평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사회적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제작차량 OBD부착 의무화 대상 확대

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 (☎ 02-2110-6806)

※ 도시지역의 대기오염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제작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운행단계에서의 배출가스관련부품고장 및 기능저하로 인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정밀검사 및 수시단속 등의 방법으로 규제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예방적인 운행차 관리대책으로서 배출가스 진단장치(OBD : On-Board Diagnostic)를 도입하여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상시 감시·진단하여, 고장이나 기능저하시 이를 운전자에게 즉시 알려 적기에 정비를 유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OBD : On-Board Diagnostic) :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오작동으로 인해 배출가스가 일정수준이상 증가할 경우 차내 계기판에 「check engine등(정비지시등)」을 점등시켜 정비를 유도하는 장치

□ 주요내용

- 휘발유 자동차 : 차종중 30%이상 또는 신규인증차량 등 차종별 일부만 OBD부착을 의무화하던 것을 대형이상 승용 및 화물차를 제외한 전 차종으로 확대적용
- 경유자동차 : 2006년 신규인증차량 중 경자동차 및 소형승용차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경자동차 및 소형승용차를 포함하여 2007년 신규인증차량중 중형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소형 및 중형)가 추가로 대상에 포함

※ 자동차 배출가스를 상시 감시 및 진단으로 고장이나 기능저하시 운전자로 하여금 적기에 정비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부품의 노후화 및 훼손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을 사전예방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 제작차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 (☎ 02-2110-6806)

※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도심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선진환경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합니다.

□ 주요 변경내용

- 휘발유 및 LPG 자동차 : 2006년 신규인증차량 또는 소형승용차의 경우 25%이상 ULEV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으나, 소형승용차는 50%이상으로, 기타 전차종은 모두 적용토록 확대하고 LPG 자동차의 경우 적용기준을 LEV에서 ULEV로 강화
- 경유 자동차 : 일부 차종(경자동차, 소형승용차)만 EURO-4기준을 적용하고 기타 전 차종은 EURO-3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경자동차 및 소형승용차, '07년 신규인증차량 중 2.5t 초과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화물자동차는 EURO-4 기준을 적용토록 대상을 확대

※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배출가스 저감을 유도하여 도심지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보고 및 시정 제도 시행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 02-2110-6861

※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관련부품 결함 보고 및 시정제도」를 통해 배출가스관련 결함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동일 부품에 대한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 결함시정(Recall)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및 대기오염을 사전 예방할 계획입니다.

□ 주요내용(2007. 7. 1 시행)

- 자동차제작사는 보증기간동안 배출가스관련부품에 대해 보증수리를 실시한 경우 동일연도에 판매된 차량 중 동일부품에 대한 결함시정(보증수리) 실적을 누적·합산
- 결함시정 건수가 50건이상이고, 결함시정율이 4%를 초과하면 당해 부품의 결함시정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자동차제작자가 스스로 당해 부품의 결함을 시정할 경우 보고의무면제

□ 결함시정 건수가 100건이상이고, 결함시정율(결함시정 실적을 당해년도 자동차 판매대수로 나눈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품의 결함발생 원인 등을 파악하여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부품결함율이 높아 동일연도에 판매된 동일차종의 동일부품에 대한 부품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이고 동일연도의 부품결함건수의

판매대수에 대한 비율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 스스로 또는 시정명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결함시정(Recall) 실시

※ 배출가스관련부품의 실제 내구성 및 성능 파악을 통하여 자동차제작사의 책임강화 및 기술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자동차 품질을 제고하고, 배출가스 저감효율이 유지됨으로써 대도시 대기오염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환경부 대기총량제도과 (☎ 02-2110-7928)

※ 수도권 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농도규제 위주의 사후관리방식을 혁신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2007년 7월 1일부터 도입·시행합니다.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대기 1종 사업장 중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함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배출량 기준	연간 30톤 초과	연간 20톤 초과	연간 1.5톤 초과

□ 총량관리 대상 사업자에게는 과거 5년간의 오염물질 배출량, 향후 오염물질 배출 예상량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함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적정환경용량 이내로 관리하여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 사업장 대기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완화

환경부 대기관리과 (☎ 02-2110-6789)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0년도 시행할 배출허용기준을 미리 설정하였으나, 일부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조기 시행하여 대기오염 개선 및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 주요내용(2007. 7. 1 시행)

-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 포함),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의 염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조정(6ppm ⇒ 15(13)ppm)
-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페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 도장시설의 비연속식 공정에 대한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 조정(50~100ppm ⇒ 200ppm)

※ 신규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새로이 설정·시행함으로써 대도시 등의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하고, 현실적으로 기준준수가 어려운 배출시설의 허용기준을 조정·보완함으로써 법규의 집행효율을 제고하고, 아울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노동

1.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02-2110-7121)

-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3,480원으로 인상됩니다
- ※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의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2007. 1. 1부터 최저임금제가 적용됩니다.
 -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수위, 물품 감시원 등)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보일러원, 기계수리원, 전용운전원 등)를 말합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강도나 근무형태가 일반 근로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2007.1.1~12.31까지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70%(시간급 2,436원)를 적용합니다.

□ 이와 같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들의 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의 1.3배에 달하고 임금도 일반 근로자의 절반수준에 그치는 등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등 취약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이번 최저임금액의 70% 적용으로 그간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받던 감시·단속적 근로자 1만천여명이 월 평균 4만6천여원 수준의 임금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 수준인상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실 여성고용팀 (☎ 02-2110-7142)

- ※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가 2007.2월(예정)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육아휴직 근로자의 휴직기간 중 소득보전률을 높여 생계비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 육아휴직급여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확인서(사업주 발급)를 제출
다만,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 1부 추가 제출
 - 지원내용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기간동안 매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은 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노동부 근로기준국 퇴직급여보장팀 (☎ 02-2110-7121)

- ※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현행 2,000원에서 2007년 3,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인상은 퇴직금의 수혜가 어려운 비정규직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건설업 상용근로자와의 퇴직금 수준격차를 완화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 * 현행 퇴직공제금 수준(504천원/1년)은 5인 이상 건설사업장 퇴직금 수준(2,078천원/1년, '05.12월 매월노동통계)의 약 24% 수준에 불과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라 함은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직금 수혜가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근로일수 1일당 일정 금액의 공제부금을 적립하였다가 건설업에서 퇴직시 퇴직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4.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로만 도입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실 외국인력고용팀 (☎ 02-2110-7080)

- ※ 2007년부터 외국인력 도입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산업연수제 폐지)**됨에 따라 **외국 인력의 도입과 관리가 원칙적으로 공공부분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취업교육, 사용자의 업무대행 분야에 제한적으로 민간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되,
 - 민간기관이 외국인근로자에게 금품을 받거나 송출국가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외국 인력의 도입과 관리가 한층 투명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5. 동포의 국내취업 및 사용자의 고용허가 절차 완화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실 외국인력고용팀 (☎ 02-2110-7080)

- ※ 그동안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고용할 총 인원 전체에 대한 특례 고용가능확인서만 받으면 됩니다.
 - 이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3년간 그 허용 인원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동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내국인 구인 노력(3~7일)을 하여야 합니다.
- ※ 동포들의 취업절차도 간소화되어,
 - 우선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는 구직 신청 후 자유로이 고용지원센터의 취업 알선을 받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 또한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방문입국 후 취업을 할 경우 현행과 같은 체류자격 변경(F-1-4 → E-9)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아울러 건설업 종사 동포를 대상으로 한 취업허가인정서 발급 절차가 없어집니다.

6.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심의관실 능력개발정책팀 (☎ 02-2110-7094~6)

- ※ 비정규직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본 사업이 2007.3월부터 실시됩니다.
 - 비정규직근로자에 훈련비를 직접 지원하여 훈련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 능력개발카드 신청 : 고용지원센터에 카드신청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출
 - 지원내용은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실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 온라인상 인터넷원격과정을 통해 훈련에 참가할 수 있으며 영어 등의 외국어 수강도 가능합니다.
 - ※ 홈페이지 : www.hrd.go.kr

7. 국가기술자격 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전면 실시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심의관실 자격제도팀 (☎ 02-503-9758)

※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시 공단 방문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매번 사진을 부착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므로써 한층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부담하던 정보이용료를 폐지하고, 결제
방법을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휴대폰 등 다양화하였습니다.

□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하여 각 지사에 접수안내 도우
미를 배치하여 접수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원서접수에 관한 회원가입절차나 접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 및 자격검정정보망(www.Q-net.or.kr) 참조

8. 중대재해 발생시 지체없이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산업안전팀 (☎ 02-2110-7131)

※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24시간이
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지체없이 신고토록 변경 하였습니다.

□ 중대재해 :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하거나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
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와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 지체없이 : 정당한 사유(재해 등으로 인한 통신수단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재해자 응급구호, 2차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하여 지체
되는 경우)가 없는 한 즉시

□ 신고 방법 : 재해발생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로
(☎ 1588-3088) 신고

※ 이로 인해 중대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통해 2차
재해의 예방 등 재해확산방지 조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산업보건환경팀 (☎ 02-504-2054)

※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석면함유제품(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제품은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붕·천장·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시멘트제품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

※ 다만, 석면시멘트제품 중 압출성형시멘트판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석면함유제품(지붕·천장·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시멘트제품,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은 2007. 6월 30일 까지 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석면 대체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 류	용 도	대체물질
① 시멘트제품	지붕용자재 시멘트 보강재	비닐론 섬유 합성섬유, 암면, 유리섬유, 셀룰로스섬유, 탄소섬유
	칸막이 단열재	암면
② 마찰제품	브레이크라이닝	아라미드섬유, 탄소섬유, 유리섬유, 금속섬유
	드럼브레이크	인산염섬유, 금속섬유

8. 건설 · 교통

1.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건설교통부 부동산정보분석팀 (☎ 02-2110-8870)

- ※ 입주권·분양권 등 부동산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 입주권·분양권도 실제 부동산과 같이 거래 되고 있으나 현행 법률상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토지 및 건축물로 한정되어 과세 형평성 문제 논란이 발생되어 이를 신고대상에 포함토록 제도를 보완함
- ※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기한을 현행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됩니다.
 - 충분한 신고 기간으로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 및 제도정착 유도를 위함
- ※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 등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에게 조사권이 부여됩니다.
- ※ 실거래 지연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부담이 현행 취득세 3배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 과태료부담 과중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함

2. 주택건설 예정지역에 알박기 어려워져 땅값, 주택값 안정 기대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 (☎ 02-2110-8601)

- ※ 앞으로 최소한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일 10년전에 땅을 사야 매도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주택법은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건설대지면적의 9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3년 전에 대지등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주인을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3년 전에 주택건설계획을 미리 알고 대지 등을 선취하였다가 사업시행자에게 고의적으로 고가로 되파는 속칭 알박기 부동산 투기 수법으로 인하여 해당 땅값은 물론 주변 땅값까지 치솟게 하는 등 여전히 고가로 주택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건설대지면적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전에 대지등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주인을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알박기가 차단되어 땅값이 안정되고 주택용지 확보가 용이하게 되어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또한, 그동안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대지를 90% 이상 확보하여야 사업승인 가능하였으나 80% 이상 확보하면 사업

승인 가능하게 되어 토지 취득기간이 단축되고 초기 자금투자 부담도 경감되는 등 사업자금 및 이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땅값과 이자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일부 사업주체의 잘못된 과거 행태도 함께 고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주민 주도의 경관형성의 길 열려 (경관법 시행)

건설교통부 국토정책팀 (☎ 02-2110-8478)

※ 국토의 미적 가치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국토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제도적 틀로서 경관법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과 지원 등 체계적인 경관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은 경관은 철저히 보호하고, 경관이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양호한 경관을 새로이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경관법이 시행되면 주민합의에 의한 경관협정제, 경관창출을 위한 경관사업이 도입되어 주민 스스로가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의 경관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 자금 및 기술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또한, 지자체 스스로 자기 지역의 경관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면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경관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특화된 경관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고 지역의 경제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를 계기로 최근에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살고싶은 도시와 지역 만들기”와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등 지역단위의 아름다운 국토·도시·마을만들기 운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 본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공포되면 시행령과 경관계획 수립기준 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4. 건축사 의무 설계대상 완화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 02-2110-8542)

※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증축하는 등의 건축행위를 할 때 건축사가 의무적으로 설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 현행 도시지역 안에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의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설계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85㎡ 미만으로 소규모 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나, 3층·2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도 설계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다소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증 축 : 기존건축물의 건축면적·층수·높이를 증가시키는 행위

* 개 축 : 기존건축물의 전부(일부)를 철거하고 동일한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행위

* 재 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동일한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행위

* 대수선 :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는 등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수선하는 행위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주기적 신고

건설교통부 물류산업팀(☎ 02-2110-8233)

※ 화물자동차운송(주선, 가맹)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 화물자동차운송(주선, 가맹)사업의 부실사업자와 부실차량 진입으로 화물운송시장이 교란되고 소비자 보호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 허가제로 전환한 2004년말 현재는 4.7만대, 2005년말 현재는 3.8만대 정도가 공급과잉으로 추정(2007년말까지 신규허가 및 증차 제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기준 및 운송시설(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시행규칙 제13조 별표1), 제21조제4항(시행규칙 제38조 별표4), 제24조의2제3항(시행규칙 제41조의7 별표5)

- 신고기간은 2007.4.21 ~ 5.20(30일간)까지입니다.

※ 2004.4.21 이전에 등록 또는 허가받은 자는 위 기간중에 신고, 2004.4.22 이후에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시행령 제3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6.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건설교통부 물류산업팀 (☎ 02-2110-8235)

※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의 전면교체를 통해 불법 운행중인 화물자동차 (일명 '대포차')를 시장에서 퇴출하고자 합니다.

- 2004.4월 이후 사업용 화물차의 신규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불법 화물차의 운행이 증가하여 화물시장에 과잉공급이 발생하였고 정상적으로 운행중인 운송사업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였습니다
-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전면교체 과정에서 불법운행 차량을 시장에서 퇴출하여 시장의 수급 균형을 통한 차주의 실질 소득 증대를 가져오고, 일반 국민의 불법운행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 교체는 2007.1.1.부터 1년간 실시되고, 다른 차량들과는 달리 의무적 교체이므로 정부가 교체수수료를 지원합니다

- 사업용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2007.1.1부터 1년간 당해 허가관청을 통해 신규번호판을 발급받으며 기간경과 후 신규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 다른 일반 차량들과 달리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강제적 의무교체이므로 정부가 교체수수료를 지원합니다.

7.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제 실시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 (☎ 02-2110-8675)

※ 택시의 교통수단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용수요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제를 실시합니다.

- 자가용의 증가, 대중교통의 발달, 체감경기 침체의 지속, 대리운전의 성행 등으로 감소된 택시이용수요를 다시 증가시키기 위하여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제를 실시하여 택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란 객관적인 평가기준(경영실태·서비스 실태·노사관계 안정도)으로 택시업체를 평가하고, 우수 업체에 대하여는 인증서 교부,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로 인해 택시업체의 경영·서비스 실태가 개선되어 택시이용수요가 증대될 것이며, 우수업체는 지속적으로 육성되고, 부실업체는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 기대됩니다.

8. 택시·버스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 (☎ 02-2110-8672)

- ※ 택시·버스업계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매하도록 하고 보조금만큼 유류구매 대금에서 감액하여 결제하는 체제로 개선됩니다.
- 유류구매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던 것을 유가보조금 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로 유류를 구매하면 구매 즉시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택시·버스가 유류를 구매하면 유가보조금카드제 전담사업자가 구매대금중 보조금을 제외한 본인부담액은 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액은 해당 시·군에 청구하게되어 별도의 보조금 신청절차가 없어집니다.
- ※ 택시·버스의 유가보조절차가 간소화되므로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유류보조금 지급내역을 전산관리하게 되므로 투명성이 강화되는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9.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안내 강화

건설교통부 교통안전팀 (☎ 02-2110-8685)

- ※ 보험사업자등이 자기와 의무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의무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계약종료일 30일전과 10일전에 각각 통지하도록 보험사업자 등의 의무보험 만기 안내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 30일전 통지의 경우 법에 규정되어 보험사업자등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10일전 통지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관계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보험사업자등의 만기안내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10일전 통지의 경우에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보험사업자등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동차 보유자의 의무보험 가입이행을 원활히 하여 무보험상태의 발생을 방지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였습니다.

10. 자동차 폐차, 폐차업 정의 및 용어 재정립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팀 (☎ 02-2110-8708)

- ※ 자동차 폐차 정의에 “재사용 가능한 부품 회수”를 추가하고, 자동차 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용어 변경 하였습니다.
- 현재 자동차 폐차업체에서는 종전 규정의 업무 이외에도 재사용 가능한 부품을 회수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자동차 폐차의 정의를 재정립 하였습니다.
- 또한, 자동차 폐차 정의 재정립에 발맞추어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용어 변경하고, 정의에 자동차의 “인수”를 추가하였습니다.

11.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전검토 도입

건설교통부 광역교통정책팀 (☎ 02-2110-8712)

- ※ 선교통계획-후개발원칙이 적용되도록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전검토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거 시행중인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가 전문적인 위원회에 의해 시행되지 않아 대규모개발사업 교통수요예측 및 체계적 선교통계획 수립 곤란
- 따라서 지구지정전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전검토서를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교통용량에 맞는 택지개발이 추진되도록 하고
- ※ 개발계획 승인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에 사전검토시 검토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대도시권 교통난을 근원적으로 예방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추가

건설교통부 광역교통정책팀 (☎ 02-2110-8712)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사업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추가하였습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달리 부담금 부과 사업에서 제외되어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과 비교시 사업간 형평성이 상실됨에 따라

□ 사업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도 가능토록 단서 규정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 단서 규정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

※ 이로 인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 학·경력 기술자 제도개선

건설교통부 기술정책팀 (☎ 02-2110-8772, 8775)

※ 건설기술자의 수급불균형 해소 및 기술사 등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학·경력기술자 제도를 개선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 1995년 학·경력기술자 제도 도입이후 특급기술자 등 건설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을 해소 및 기술사 등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국가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경력기술자 제도를 개선코자 합니다.

□ 주요 개선내용으로 학·경력기술자는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으며, 기술자격자는 특급은 기술사에 한해 인정하고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가능합니다.

□ 초급·중급·고급·특급 등의 기술자 등급은 존치되며, 학·경력기술자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불허합니다. 다만, 이미 배출된 기술자의 법적 지위는 계속해서 인정됩니다.

※ 2007. 3. 1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전까지의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2007. 8. 31까지 건설교통부장관(위탁 : 경력관리수탁기관)에게 신고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타당성조사시 수요예측 부실자에 대한 제재

건설교통부 건설환경팀 (☎ 02-2110-8780)

- ※ 타당성조사시 수요예측을 잘못된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 대형 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교통량 등 수요예측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여 국가예산낭비 방지 및 사업의 타당성등이 확보되도록 수요예측 부실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 수요예측 업체에 부실벌점 부과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 정지·부실벌점 부과로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시 감점처리 하여 불이익을 받습니다.
- ※ 이로 인해 대형 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조사시 교통량 등 수요예측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어, 국가예산 낭비 방지 및 사업적 타당성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 레미콘·아스콘공장 사전점검 실시

건설교통부 건설관리팀 (☎ 02-2110-8799)

- ※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를 위해 시공자가 레미콘, 아스콘공장에 사전점검을 실시합니다.
 -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주요자재인 레미콘·아스콘에 대한 생산·공급 및 시공단계의 품질관리에 대하여 시공자가 레미콘·아스콘공장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합니다.
 - 100억원이상인 전면책임감리공사, 300세대이상인 주택건설공사, 연면적 5천㎡이상인 집회시설 및 16층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레미콘, 아스콘에 대하여 자재 공급전에 품질관리가 적합한 공장인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합니다.
- ※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사전점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불량자재 사용방지로 부실공사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6. 건설하는 주택과 다르게 견본주택을 설치하는 건설사 처벌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 (☎ 02-2110-8598)

- ※ 앞으로 사업계획승인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다르게 견본주택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서 보여준 마감자재와 다르게 저급한 제품으로 바꿔치기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주예정자의 분양피해가 발생
- 앞으로는 사업자는 견본주택에 설치하는 마감자재는 시장·군수등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 설계도서 대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므로 건설업체는 견본주택에서 보여준 마감자재와 다른 저급한 제품으로 바꿔치기 하는 행위를 할수 없게 되어 입주예정자의 권익이 보호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7.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지원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 (☎ 02-2110-8596)

- ※ 저출산 해소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시설은 대부분 민간에게 유상으로 임대되어 운영되고 있어 보육시설의 임대료 및 초기 시설투자비용을 단기간 내에 회수해야 하는 열악한 재정구조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저출산 해소 및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지자체에 보육시설을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보육시설로 운영할 경우 재산세 감면 및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 등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18. 측량기능사 경력관리 실시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 (☎ 031-210-2775)

※ 측량기능사에 대하여도 경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건교부장관이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측량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경력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 측량법의 적용을 받는 측량기능사는 경력관리가 실시되고 있지 않아 측량기술자와 측량기능사의 형평성에 제고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측량기능사도 측량기술자와 같이 경력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일일이 방문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불편과, 업체가 폐업된 경우 경력입증의 곤란성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19.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 등록 등 관리사무 지방이양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031-210-2775)

※ 현재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처리되고 있는 측량기기성능 검사대행자의 등록·신고의무·영업정지·청문·등록취소 및 과태료부과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가 처리하게 됨에 따라 지방에 있는 민원인들이 가까운 도청 등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등 많은 편익이 있을 것입니다.

9. 중소기업

1.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관리등에 대한 내역 변경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본부 (☎ 042-481-4589)

-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협동조합 설립기준 완화 및 업무구역 정비를 통해 조합간 긍정적 경쟁을 유도하고 자생력을 다지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별 단일조합에서 복수조합을 인정함으로써, 조합의 설립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또한, 사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조합의 업무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업종별 조합체제의 역기능을 보완하고 조합간 긍정적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아울러, 휴면조합·단체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명무실한 조합의 중앙회 혹은 연합회에서의 선거권 행사를 효과적으로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관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재량행위를 구체화하여 조합원사들의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조합원의 「임의탈퇴 예고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60일→30일)
 - 조합간 합병시 주무관청과의 협의 절차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 * 합병사유서, 존속조합 또는 신설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정관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구매방법 추가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 (☎ 042-481-4575)

-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에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외의 방법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 대상제품, 계약 방법 및 계약 당사자의 결정기준 등 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효력 연장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 (☎ 042-481-4575)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효력이 1년간 유지되던 것을 지정효력 발생일부터 3년간 유지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매 회계연도 개시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공고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제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3년간 지정효력이 유지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효력이 연장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설계나 구매계획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조합 참여 허용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 (☎ 042-481-4575)

- ※ 현재까지 중소기업자만 참여할 수 있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품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인·허가를 받은 중소기업자인 조합원 등이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품질관리기준 등의 요건을 갖춘 조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 이 경우 해당 제품과 관련되고 요건을 충족한 조합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라야 각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경쟁입찰 대응능력이 취약한 영세기업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경쟁입찰에 대응능력이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직접생산확인제도 시행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 (☎ 042-481-4575)

-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코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 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생산 능력이 확인된 중소기업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와 1천만원 이상의 제품구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을 하지 않고 저가 수입제품·부당하청 생산품 및 대기업 제품 등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성실하게 기술개발과 생산활동에 전념하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확대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 (☎ 042-481-4466)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대폭 추가 지정합니다.
 -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에 따라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지정되었던 품목 대부분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편입 지정하고, 이 중 공사용자재로의 지정이 필요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 2007년도 지정예상 품목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230개 내외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 130개 내외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90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50개 내외가 추가 지정될 예정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확대 지정함으로써 그 간 단체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하던 물량을 공공기관이 계속적으로 구입하도록 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기존 매출 규모를 유지해주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10. 행정 · 법무

1. 공직자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 (☎ 02-2100-3349)

※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형성과정소명제 도입(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고위 공직자 및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하여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토록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을 사전에 불식시켜 공직윤리를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 부동산 등 주요재산의 가액변동사항 신고

- 현행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제도는 재산의 가액만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재산등록 당시의 재산 가액과 변동사항 신고 당시의 재산 가액의 격차로 인하여 재산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부동산 등 주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의 가액만이 변동된 경우에도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기존에 가액 등록 제외재산(금, 보석류 등)은 가액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산등록제도의 현실성 및 실효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 고지거부제도 사전허가제

- 고지거부제도를 악용한 재산 축소 및 은닉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 심사를 하던 고지거부제도를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하여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 공무원 출산 등 관련 휴가제도 개선

행정자치부 근무지원팀 (☎ 02-2100-3314)

※ 여성 공무원 출산휴가제도 보완

- 여성 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임신부의 건강보호를 위해 유산·사산한 경우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의 인공임신 중절수술에 의한 유산은 제외)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되도록 하였습니다.

※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 개선

- 육아휴직자의 연가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제도의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종전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였으나, 이를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 공무원 입양휴가제도 도입 및 현혈 시 공가인정

- 해외 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간의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 공직사회의 현혈참여를 확대하기 위해「혈액관리법」에 따른 현혈을 하기 위해 외출하는 때에는 공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지방세법 개정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 02-2100-3920)

※ 소득할주민세의 수정신고기한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에서 「부과고지 전으로」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소득할주민세의 납세지 착오납부 및 시·군·구별 안분오류의 경우 수정신고 기간이 60일로 충분하지 않아 납세회피의도가 없음에도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따라서 수정신고 기한을 연장하여 관련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오납한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과세관청에서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부과지 할 경우 가산세 부담완화 효과가 없어지므로 사전에 수정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후 부과고지 하도록 세정운영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4.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

행정자치부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지원단 (☎ 02-2100-4055)

※ 도로명주소를 「생활주소」로 사용토록 하는 권장방식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법적주소」로서 전환하며 각종 공부상에 주소도 도로명주소로 전환합니다.

□ 「지번주소」는 100여년간 사용해온 관계로 익숙해져 있어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경우 혼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1년 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사용토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 도로명시설 목표연도 내 구축 완료 및 국가, 자치단체, 공법인 등은 주소전환에 따른 사전준비 기간을 두어 혼란방지

□ 생활주소란 공법상의 효력이 없는 단순 위치찾기 또는 위치안내 등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 등에 사용하는 주소

□ 법적주소란 호적, 주민등록과 같이 국민에게 권리·의무가 부과되는 공법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주소를 말합니다.

※ 도로명주소에 의한 전자지도DB를 전국적으로 통합하여 방법, 방재, 구조구난, 우정 등 공공부분의 위치관련 시스템에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도로명시설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시·군·구별로 각각 도로명주소에 의한 전자지도 DB를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시·도 또는 전국 단위로는 통합되지 않아 국가 차원의 활용이 미흡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설치하여 연차별로 전국 단위 전자지도 DB를 구축하고 공공부분의 위치관련 시스템에 연계하여 사용함으로써 중복투자 방지 및 위치기반산업인 인터넷 포털, 모바일, 네비게이션 등 민간 IT분야에도 서비스하여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도입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 02-2100-3804)

※ 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보

-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함에 있어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였으므로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지방조직관리의 방식을 행자부 장관이 승인하는 표준정원제에서 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토록 하는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여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자율권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

- 자치단체가 조직 자율성 제고를 바탕으로 기구와 정원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구정원관련 조례 제·개정시 추가 인건비 제시 및 입법예고 의무화 등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에 의한 견제·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 아울러 자치단체 조직운영상황을 분석·진단하고 조직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며, 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책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6. 주민소환제 시행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 (☎ 2100-3753)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제가 2007. 5. 23부터 시행됩니다.

-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임기종료 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키는 제도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책임성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됨

※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의 서명과 주민투표의 절차를 거쳐 확정 됩니다.

-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의 주민(투표권자) 서명을 받아 소환사유를 명시하여 소환대상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명자 수 : 시·도지사 10/10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 15/100 이상, 지방의회의원 20/100 이상
- 주민소환청구를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며 투표결과 선거권자의 1/3이상이 참여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대상 선출직공무원은 그 직에서 해직됩니다.
- 다만, 소환대상공무원이 취임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주민소환은 2007. 7. 1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7. 정부차원의 지원체계 확립 및 주민참여 근거 신설

행정자치부 살기좋은지역관리팀 (☎ 02-2100-6958)

※ 정부차원의 지원체계 확립 및 주민참여 근거 신설

- 현행 법령에 국가·시도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군구의 행·재정적 역량만으로는 불법광고물정비, 도시미관제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행자부장관은 옥외광고제도 발전 종합계획을 시도지사는 광역단위의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토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옥외광고분야 발전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것입니다.

※ 주민 및 업계 자율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아름다운 광고물을 통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광고업자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상 지역주민 등 참여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시군구에서 주민의사를 반영한 지역특성에 맞는 광고물 정비추진을 의무화하고, 자율참여 광고주·광고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우대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8. 행자부장관 소속 옥외광고물 정책위원회 설치

행정자치부 살기좋은지역관리팀 (☎ 02-2100-6958)

※ 불법 광고물 난립(전체 330만개중 20%)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혁신, 광고주 의식개혁, 주민참여 활성화 등 전방위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 수립 등 옥외광고 정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서도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 행자부장관 소속하에 학계, 시민단체, 광고업자 등 옥외광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옥외광고관련 각종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기능의 수행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9. 방문취업 비자 신설

법무부 외국적동포과 (☎ 031-478-5043)

- ※ 중국동포 등이 그동안 고국을 왕래하는데 큰 불편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방문·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 복수비자(5년 유효, 3년 체류) 발급으로 외국국적동포의 입국문호 및 취업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국내 친족·호적이 있는 중국동포 등은 방문동거(F-1-4)자격으로 입국 후 취업이 가능한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취업을 할 수 있었으며, 3년 후 출국하여 재입국 시 6개월 경과 후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였으나 방문취업 비자 신설로 국내 친족·호적이 있는 동포 뿐만 아니라 국내 친족·호적이 없는 동포도 연도별 쿼터를 정하여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국내체류시에도 허용업종내에서 별도의 취업알선 없이 자유롭게 일 자리를 구할 수 있고, 사용자 또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별도 허가절차 없이 동포를 선택하여 고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 변경시에도 자유롭게 업종변경이 가능하고, 근무처 변경시에도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 ※ 동포를 단순히 외국인력관리대상이 아니라 포용 대상으로 보는 국민정서에 맞추어 동포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한편,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 출소자 숙식보호기간 연장

법무부 관찰과 (☎ 02-503-7072)

- ※ 자립기반이 특히 미약한 출소자는 한국갱생보호공단 생활관에서의 숙식보호기간을 현행 최장 1년에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 장애인, 노약자 등 자립기반이 특히 미약한 출소자의 경우 숙식보호기간을 일반인보다 연장이 가능토록 하여 자립능력 제고 기회를 부여하고, 자립미약 출소자 방치로 인한 사회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11. 국민감시제 도입

기획예산처 재원기획과 (☎ 02-3480-7734)

- ※ 나라살림에 있어 불법적으로 재정이 지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국민감시제가 도입됩니다.
- ※ 국민감시제는 일반국민 누구나 불법적인 재정지출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자, 정부부처와 계약 또는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해당 부처 장관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부처 장관은 시정요구자에게 처리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해당부처 장관은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예산이 절감된 경우에 시정요구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그동안은 언론, 시민단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라살림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졌지만,
 - 앞으로는 관계부처 장관을 상대로 일반국민이 직접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재정운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2. 시간제 근무제도 전 공무원에 확대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 (☎ 02-751-1176)

- ※ 시간제공무원 적용대상이 기존의 계약직 공무원 및 육아휴직 대상자에서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으로 확대됩니다.
 - 시간제근무제도는 현행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전일제 근무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으로, 육아 등 개인생활과 일의 병행(work and life balance)을 가능하도록 하고, 조직 차원에서는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줄임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 정무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점심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해당기관의 인력수급사정, 시간제근무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9~12시), 오후(13~18시) 단위로,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격주제나 격월제 근무는 할 수 없고 시간제 근무 사용기한도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년까지로 제한됩니다.
- ※ 전일제 근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보수나 휴가, 경력 등은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 * 제도 시행으로 추가적 인건비 부담을 없애고, 감축된 인건비 예산으로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유휴 고급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가능

13.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실시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 (☎ 02-751-1201)

*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1점 또는 -2점의 추가합격선 내에 지방학교 출신자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합격이 가능

※ 내년 2월 10일 실시하는 행정·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부터 합격자의 일정비율을 지방학교 출신에 할당하는「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지방학교 출신의 고등고시 문호를 확대함으로써 갈수록 심화되는 서울·지방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201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실시지침 제정

-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지방인재」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중인 자입니다.
- 행정·외무 고등고시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행시의 경우 일반행정직, 재경직 등)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시험단위별로 지방인재의 채용목표비율은 합격예정 인원의 20%입니다.
- 공직 내 위화감 조성을 막기 위해 1차 시험 이후의 시험단계에선 목표인원에 못 미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을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실효성과 실적주의 인사제도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추가합격선은 1차 시험은 -2점, 2차 시험은 -1점으로 설정했습니다.

11. 국방 · 병무

1. 예비군 훈련여건 개선

국방부 예비전력관리팀 (☎ 02-748-5245~6)

※ 전시근로 소집 지정자 소집점검훈련을 실시합니다.

- 전시근로 소집자는 지금까지 제2국민역으로 지정을 해오다 전시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5~8년차 보충역으로 지정하여 전시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게 되었습니다.
- 전시근로소집 지정자 중 5~6년차의 지정자는 소집점검훈련(4H)을 실시하며, 향방작계시행훈련(6H) 1회를 면제받게 됩니다.

※ 휴일 예비군훈련을 제도화 시행합니다.

- 2005년도 이후 시험적용으로 실시하던 것을 내년도 부터는 제도화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 훈련부대가 지정되어 휴일 훈련을 실시합니다.
- 따라서 평일 훈련에 참석하기 어려워 법규위규자가 되거나, 평일 훈련으로 생업활동에 지장을 받던 일들이 해소되게 됩니다.

※ 서바이벌장비 활용한 훈련을 전 부대로 확대합니다.

- 2004년도 이후 일부부대에서만 적용하여 오던 서바이벌 장비 활용훈련을 내년도부터는 전 부대에서 실시합니다.

- 서바이벌장비를 활용한 훈련으로 실전감을 유지하고 흥미있는 훈련으로 예비군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었습니다

※ 예비군훈련 관련 민원서류를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금까지 예비군훈련 관련 민원은 예비군부대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토록 하여 민원인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 2007년부터는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훈련의 연기, 보류신청 / 해소신고 등을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제출이 가능하고 관련서류의 첨부도 가능해져 예비군의 불편사항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국군포로 및 가족 지원제도 개선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북한정책팀 (☎ 02-748-6258)

- ※ 현재 귀환 국군포로는 보훈병원 및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60% 할인 혜택이 가능하지만 병원들이 대부분 원거리에 있어서 치료받기가 어려웠으나, 내년부터는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또한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가족이 탈북해 올 경우, 국군포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북측에서 최하층 계급으로 분류되어 많은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상 일반탈북자와 동일한 대우만을 제공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3. 군 복무 중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활동 허용

국방부 인적자원개발팀 (☎ 02-748-5286)

- ※ 군 복무 중에도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 현행 병역법에는 군 복무 중에는 자동으로 휴학되고 전역해야만 복학이 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학습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병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제반 여건도 미흡하였습니다.
 - 따라서 군 복무 중에도 장병들이 중단 없는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이 제공됩니다.
 - 이를 위해 병역법과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e-러닝을 위한 인터넷 PC학습방과 지식포탈이 제공됩니다.
 - 장병들은 이를 통해 소속 대학의 학점을 취득하고(연간 6학점 범위 내), 어학,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로 인해 장병들의 군 복무가 인생의 정체기, 단절기가 아니라 인생의 발전기, 도약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단순 반복적인 군 생활에서 꿈과 목표가 있는 생활로 변화되며 병영 학습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병 전역전 건강검진제도 도입 시범 사업

국방부 군의무발전계획실무추진단 (☎ 02-748-6791)

※ 군 복무 후 전역하는 병사들에게 전역 전 건강 검진제도 도입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현재 병사들이 전역 전에 건강 검진을 미 실시 함으로서 전역 전 질병 확인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전역 전 건강검진 미 실시로 전역 직후 심각한 질병 발견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 등 많은 민원이 야기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방부에서는 군 의무발전 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병 전역 전 검진제도를 도입 하고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검진범위는 간 기능검사 등 23항목이며, 1차검진은 사단의무대(12, 25사단)에서 실시하고 추가적인 정밀 검진이 요구 될 경우에는 군병원(철정, 양주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 이 제도의 도입으로 병사 전역 전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입대시와 같은 건강한 몸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 2007년 병 전역 전 건강 검진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실시 후 2008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

5. 공익근무요원제도 개선

병무청 공익관리팀 (☎ 042-481-2767)

※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하여 복무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복무기간을 분할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개선」 하였습니다.

- 현재 공익요원소집대상자는 자격증 유무나 지정업체 T/O와 관계 없이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하나, 복무 중에는 편입 제한이 제한되어 현역병에 준하는 보수(월 20만원 내외)로 사회활동에 애로가 많아 가사사정 등으로 인한 야간 아르바이트에 종사하여 복무밀도가 저하되고 복무이탈자가 발생하는 복무부실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며,
-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에 질병치료, 가족 간호 등 가사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복무중단 없이 계속 복무해야 함으로써 신체허약으로 현장복무 수행이 곤란하여 질병치료 및 가족 간호 등 가사를 위한 잦은 휴가·조퇴 등으로 성실복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 가족의 생계지원 등 필요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잔여기간 복무할 수 있게 하고, 질병치료 및 가사지원 필요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정기간(통산 6개월 이내) 복무중단 후 중단기간을 포함하여 남은 기간동안 재복무할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질병치료, 가사지원을 위한 잦은 무단결근, 지각·조퇴·휴가 신청 감소 등 복무부실 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익근무요원의 가사부담 완화로 인한 성실복무 및 효율적인 복무관리가 기대됩니다.

6. 인터넷에 의한 병역사항신고 제도 도입

병무청 공개심사팀 (☎ 042-481-2883)

※ 4급이상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함에 있어,

□ 종전에는 신고의무자가 직접 병역사항 신고서를 작성 소속기관을 경유, 병무청에 제출하던 것을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병무청에서 병역사항 확인 후 공개할 수 있도록 병역사항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병역사항 공개 전 본인의 사전열람을 통하여,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착오공개 방지 및 공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병역사항 신고체계 도입으로 신고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고객위주의 신고체계 확립으로 민원편익 증진과 업무간소화에 따른 신고기관의 업무량이 대폭 감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

병무청 산업지원팀 (☎ 042-481-2815)

※ 전문연구요원의 승인전직 기준인 의무종사기간을 편입한 업체에서 2년이 경과한 사람에서 1년 6월로 단축하고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시기를 입영기일 5일 전까지로 완화하였습니다.

□ 현재 전문연구요원이 지정업체에 편입 후 다른 업체로 전직하기 위해서는 한 업체에서 의무종사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 선택의 기회가 제한된 실정이고,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희망자의 편입원 출원시기를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편입 기회가 사실상 1회로 제한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 다른 분야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와 형평성이 결여된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간 형성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전직기간을 2년에서 1년6월로 단축하고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원 출원시기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입영일 5일전까지로 완화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전문연구요원의 지정업체 재 선택 기회가 확대되고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기회 확대로 민원편익 증진 및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Ⅱ. 부처벌 제도 및 법규 신·구대비표

〈재정경제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자인 당해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 인원(당해거주자 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 연 100만원 - 2인 : 연 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2명 : 연 50만원 - 자녀 2명 초과 : 연 50만원 + 2인 초과 1인당 연 100만원 	소득세법 (2007.1.1일 시행)	소득세제과 ☎ (02) 2150-9142
2	세금우대종합저축 제도개선	<p>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 9% 저율분리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20세이상 거주자 □저축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 : 4천만원 - 노인(60세, 여자 5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 5·18운동 부상자 : 6천만원 □일몰시한 : 없음 	<p>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설정 및 한도 축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인에 대한 저축한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천만원 - 독립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일몰설정 : 2008.12.31까지 가입분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가입분부터 시행)	소득세제과 ☎ (02) 2150-914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p>생계형 저축의 이자·배당 소득 비과세</p> <p>□대 상 - 노인(60세 이상), 장애인, 국가·독립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환자, 5·18 운동 부상자</p> <p>□저축한도 : 3천만원</p> <p>□일몰시한 : 없음</p>	<p>□세금우대종합저축과 대상 일치 -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p> <p>□일몰설정: 2008.12.31까지 가입분</p>		
3	비과세 농·수협 등 예탁금 세제지원 축소·연장	<p>농협·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p> <p>□비과세한도 : 1인당 2천만원</p> <p>□지원내용 - 2004~2006 : 비과세 - 2007년 : 5% - 2008년부터 : 9%</p>	<p>비과세 시한을 3년 연장하되, 미성년자는 신규 가입 제한</p> <p>□비과세한도 : 1인당 2천만원</p> <p>□지원내용 - 2007~2009년 : 비과세 - 2010년 : 5% - 2011년부터 : 9%</p> <p>□신규가입 제한 : 미성년자</p>	조세특례제한법 (공포시 2007년부터 시행)	조세정책국 소득세제과 ☎ (02) 2150-914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지주회사 수입배당 금액 익금불산입율 조정	□ 현재 지주회사가 지분율 80%(상장법인인 경우 40%)이하인 자회사로 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 에 대한 익금 불산입율은 60%임	□ 2007년부터 익금불산입율을 70%로 상향조정 * 2008년에는 80%로 상향조정 예정	법인세법 (2007.1.1일 시행)	법인세제과 ☎ (02) 2150-9151
5	문화산업전문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 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신 설	□ 문화산업전문회사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 당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법인세법 (2007.1.1일 시행)	법인세제과 ☎ (02) 2150-9151
6	개인양수자의 비거 주자에 대한 부동 산양도소득세 원천 징수의무 면제	□ 개인양수자에게 원천 징수의무 부여	□ 비거주자와 부동산 거래하는 개인 양수자에게 원천징수의무 면제	소득세법 (2007.1.1일 시행)	국제조세과 ☎ (02) 2150-9172
7	채권이자 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 가·지방 자치단체 및 내 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의 이자소득을 비거주자 에게 지급하는 경우 25% 로 원천징수	□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인하 * 2007.1.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법인세법 (2007.1.1일 시행)	국제조세과 ☎ (02) 2150-917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8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제도 도입	□ 신 설	□ 대기업이 사업에 사용하던 설비를 중소기업에게 무상이전시 손금에 산입	조세특례제한법 (2007.1.1일 시행)	조세지출 예산과 ☎ (02) 2150-9131
9	중소기업 또는 대학 등에 연구 개발 위탁시 세액 공제 상향조정	□ 연구개발 지출액이 직전 4년평균보다 초과한 금 액의 40% 세액공제	□ 중소기업 또는 대학 등에 연구개발 위탁시는 직전 4년 평균보다 초과한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2007.1.1일 시행)	조세지출 예산과 ☎ (02) 2150-9131
10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제도 도입	□ 신 설	□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연구 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2007.1.1일 시행)	조세지출 예산과 ☎ (02) 2150-9131
11	수도권외 이전 중 소기업 최저한세 적용 배제	□ 수도권과 밀역제권역 내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 역 외로 이전시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하되 최저한세를 적용	□ 수도권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를 적용 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2007.1.1일 시행)	조세지출 예산과 ☎ (02) 2150-913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2	가산세 제도 변경	□세목마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율이 각각 다름	□모든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율을 통일적으로 규정 - 무신고 : 20% - 과소신고 : 10% -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과소신고 : 40%	국세기본법 (2007.1.1일 시행)	조세정책과 ☎ (02) 2150-9113
13	기한후신고 제도 개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대상이 아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도 기한후신고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법 (2007.1.1일 시행)	조세정책과 ☎ (02) 2150-9113
14	경정청구제도 개선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자 등 내국인에 대하여만 경정청구 허용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경정청구 허용	국세기본법 (2007.1.1일 시행)	조세정책과 ☎ (02) 2150-9113
15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양도소득세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 - 단, 고가주택, 1세대2주택이상, 비사업용토지등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소득세법 (2007.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재산세제과 ☎ (02) 2150-921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6	1세대2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부동산 양도시 양도세율 9~36% 4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1세대3주택(60%), 미등기(70%), 단기양도자산(2년내 40%, 1년내 50%) 등은 단일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현행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부터 1세대 2주택 양도시 50%, 비사업용토지 및 부채지주소유농지 등 양도시 60% 단일세율 적용 추가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소득세법 (2007.1.1일 이후양도분부터 적용)	재산세제과 ☎(02) 2150-9211
17	영농자녀가 증여 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경농민이 18세이상의 영농자녀에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시한을 2011.12.31까지5년 연장하되, 감면 한도 등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간 합산하여 증여세액 1억원까지 면제 - 증여받은 농지등을 제3자에게 양도시 증여자(자경농민)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1.1일 시행)	재산세제과 ☎ (02) 2150-921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8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일몰기한 신설	<p>□ 1998.5.22~1999.12.31, 2000.11.1~2003.6.30 기간중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신축주택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100% 감면 - 신축주택외 주택 양도시 당해 신축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과 동일 - 2007년까지 신축주택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 2008년 이후 신축주택외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당해 신축주택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됨 	조세특례제한법 (2008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재산세제과 ☎ (02) 2150-9214
19	양도세 무신고자에 대해 등기부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결정근거 신설	<p>□ 양도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실거래가를 확인하여 양도세 결정을</p>	<p>□ 원칙 : 종전과 동일</p> <p>□ 예외 신설 : 세무서장은 양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하여 양도세 결정 가능</p>	소득세법 (2007년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	재산세제과 ☎ (02) 2150-922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0	기본관세율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원자재 · 철광석, 동광 1% - 서울불균형 물품 · 카제인산염 20% - 기본관세율 정상화 · 냉동삼겹살 50% - 기타 정책수요 반영 · 설탕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세율 개편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원자재 (308개) · 철광석, 동광 0% - 서울불균형 물품(114개) · 카제인산염 8% - 기본관세율 정상화(404개) · 냉동삼겹살 25% - 기타 정책수요 반영(64개) · 설탕 40% 	관세법 별표 (2007.1.1일 시행)	산업관세과 ☎ (02) 2150-9331
21	우편물의 과세물건 확정시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우편물의 통관우체국 도착시점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중 정식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한 수입신고 시점 - 그 외 물품은 종전과 동일하게 통관우체국 도착시점이 과세물건 확정시기임 	관세법 (2007.4.1일 시행)	관세제도과 ☎ (02) 2150-9321
2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수입, 관세포탈범 등을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등에 대하여 관세행정 발전 공로로 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행정 발전 공로 포상 대상에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자” 를 추가 	관세법 (2007.4.1일 시행)	관세제도과 ☎ (02) 2150-932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연장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은 납세의무자가 부족세액 징수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종전보다 10일 연장되어 납세의무자가 부족세액 징수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세법 (2007.4.1일 시행)	관세제도과 ☎ (02) 2150-9321
24	남북 견품송달업자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견품송달업자는 세관장에게 등록후 신속통관 서비스 혜택 - 그다만, 차량을 이용한 견품송달업자는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받지 못함	□ 차량을 이용한 견품송달업자도 세관장에게 등록 후 견품에 대하여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규정	관세법 (2007.4.1일 시행)	관세제도과 ☎ (02) 2150-9321
25	관세등 일괄납부업 체에 대한 자동정 산제도 도입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일괄납부업체가 납부기간 종료후 15일 이내에 일괄납부할 금액과 환급금 보류액을 정산신고	□ 일괄납부업체의 정산신고 절차를 생략하고 세관장이 일괄납부할 금액과 환급금 보류액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통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2007.4.1일 시행)	관세제도과 ☎ (02) 2150-931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6	과세관청의 세액 추징시 환급신청기간 연장	□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 수리 후 2년이내에 환급 신청	□ 관세 등의 환급 신청기간은 원칙적으로 수출신고 수리후 2년 이내 - 다만, 과세관청의 세액 추징이 있는 경우 종전 환급신청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경정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환급신청 가능	수출용원재료에 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2007.4.1일 시행)	관세제도과 ☎ (02) 2150-9313
27	한·아세안 FTA 시행	□ 신 규	□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9개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FTA 특혜세율 적용	FTA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2007.3월 시행 예정)	관세협력과 ☎ (02) 2150-934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8	공인회계사시험제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 없음 □ 시험과목 및 배점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 필기시험 - 모든과목 배점 : 100점 □ 2차시험 부분합격제 없음 □ 1차시험 합격자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과목 40점 이상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 (상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학 등 24학점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 12학점 - 경영학과목 : 9학점 - 경제학과목 : 3학점 □ 시험과목 및 배점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EFL(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 이상 · TOEIC : 700점 이상 · TEPS : 625점 이상 - 1차 회계학, 2차 재무회계과목 배점을 각각 150점으로 확대 □ 2차시험 중 6할 이상 득점한 과목은 다음 시험에 한하여 면제 □ 1차시험 합격자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과목을 제외하고 매과목 4할 이상 - 전과목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 (상대평가) 	공인회계사법 및 동법 시행령 (2007.1.1)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02) 2150-2356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시험 합격자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과목 40점이상 -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순 (상대평가) □ 2차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예정인원 범위내에서 매과목 40점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 □ 인터넷과 서면접수를 병행하여 응시원서를 접수(1차와 2차시험원서를 함께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시험 합격자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과목 6할이상 득점자(절대평가) □ 2차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선발예정인원 범위내에서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면제과목은 직전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되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 □ 인터넷으로만 응시원서를 접수 (1차와 2차시험 원서를 분리하여 각각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시험 : 2007.1.11~1.24 - 2차시험 : 2007.5. 3~5.16 		
29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지급결제·전자금융을 직접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령 부재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전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제도는 다음과 같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기본절차를 명확화 □ 해킹, 전산장애 등에 의한 쌍방 무과실 사고시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책임부담 □ 전자지급거래의 법률관계 명확화 	전자금융거래법 (2007. 1. 1)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 (02) 2150-233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법률관계는 민·상법의 해석과 약관에 의해 규율 - 전자금융업의 업무범위·영업수행 등은 별도 법률이 없어 아무런 규제가 없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강화 □ 비금융회사(예:통신회사)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제도 정립 □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 근거 마련 		
30	일괄적 분쟁조정제도 도입	□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피해구제 절차를 거친 사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 피해소비자가 50인 이상인 사건의 경우 일괄적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하여 절차의 신속성 확보 및 다수의 피해자 구제 가능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2007.3.28)	소비자정책과 ☎(02) 2150-2163
31	소비자관련 법령 및 기관 명칭 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한국소비자보호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기본법 (2007.3.28)	소비자정책과 ☎(02) 2150-2163
32	지역특구 규제특례 확대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 위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그 규모에 제한을 둠	□ 지역특구에 대해서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에 대해 최대 150%까지 완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규제 특례법 (2007.1.5)	지역특화발전 특구기획단 ☎(02) 2150-952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지전용허가기준이 지역여건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도시공원의 시설물이 전체 공원면적의 20% 범위내에서 설치되도록 건폐율을 제한 □박물관·미술관을 설치할 때 자료의 보존·관리를 담당하는 학예사를 1인 이상 고용하여 등록 □종자업 등록시 종자관리사 1인을 의무고용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평균에 비해 산지비율이 높은 기초지자체에서 지역특화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행 기준의 150%범위 내에서 완화 □지역특구내 공원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건폐율을 현행기준의 150% (20%→30%)까지 완화 □지역특구에 대해서는 최대 5개소당 1인의 학예사의 공동고용을 허용 □지역특구내에서는 1인이 최대 20개소의 종자업소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 		
33	국유재산 매각·임대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에 2명 이상 참여해야만 유효한 입찰로 인정 □국유지 매각시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80%까지만 체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정가격 이상으로만 입찰하면 1명만 입찰하더라도 유효로 인정 □보존부적합 재산(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50%까지 매각가격 체감 가능 	국유재산법시령 (2006.8.15일부터 시행중)	국고국 국유재산과 ☎ (02) 2150-244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4	국유재산 정보공개 확대	□ 개별 재산별로 임대·매각 공고를 통해 재산정보를 공개	□ 임대·매각대상 국유재산 전체 List 및 지적도·위치도 등이 포함된 종합적 정보를 공개	Onbid 시스템*을 통해 2007년부터 정보공개 확대 예정 * 자산관리공사가 설치·운영중인 온라인상의 자산 처분·임대 시스템	국고국 국유재산과 ☎ (02) 2150-2442
35	무주·은닉부동산 신고 보상금 확대	□ 일반인이 무주·은닉 부동산 발굴·신고시 보상금 지급 한도 : 1,000만원	□ 무주·은닉부동산 신고보상금 지급 한도를 3,000만원으로 확대	국유재산법시령 (2006.8.15일부터 시행중)	국고국 국유재산과 ☎ (02) 2150-2442

〈 교육인적자원부 〉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설립·운영 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시설에 대한 기준을 국가에서 대통령령으로 관리 □ 학교 내에 아래의 복합 시설 설치 근거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복지시설 - 사회체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등 □ 도서·벽지의 경우 체육장의 기준면적 완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감이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 등 학교별 특성에 따라 교사시설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도교육감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 내에 복합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 도심지에서도 기준면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설립 가능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 규정 (입법예고 중으로 2007년도 공포 및 시행 예정)	시설기획 담당관실 ☎(02) 2100-6200
2	재외한국학교 설립·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한국학교 설립주체를 법인 또는 개인 모두 인정 □ 학교 설립인가 및 학력인정 지정 신청을 각각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한국학교 설립주체를 법인 또는 단체로 제한 □ 학교 설립승인 신청 처리로 학력인정 같음 처리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7.6 시행)	재외동포 교육과 ☎(02) 2100-6574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및 사립학교법을 준용하여 설립·운영 및 지도 감독함으로써 법적 용에 한계 □ 재외한국학교의 초·중·고과정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 및 지도 감독 □ 재외한국학교의 유치원과정까지 지원 확대 		
3	한국어능력시험(TOPIK)실시	□ 년 1회 실시(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년 2회 실시(4, 9월)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국내유학 및 방문취업 등 응시인원 확대 	국어기본법 제19조	재외동포교육과 ☎(02) 2100-6574
4	군교육훈련 학점인정	□ 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인정된 군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실적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 대학 재학 중 군 입영 등으로 휴학 한 자에게 학점 취득 기회 제공 - 2007년도 병과학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6개병과 학교 46개과정) → 학점인정 프로그램 점진적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병역법 	평생학습정책과 ☎(02) 2100-6458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육아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경우에는 퇴직수당 산정시 전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	□ 육아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경우에는 퇴직수당 산정시 전체기간의 1/2을 재직기간으로 인정	□ 육아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경우에는 퇴직수당 산정시 전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본회의통과, 공포일부터 시행)	교육단체 지원과 ☎(02) 2100-6335
6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수의계약 및 감액대부 확대	□ 폐교재산의 수의계약 범위 및 감액대부가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로 한정 □ 무상방치폐교에 대한 무상대부 조항이 없어 방치폐교 잔존	□ 폐교재산의 수의계약 범위 및 감액대부가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에서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로 확대 □ 5년이상 3회이상 공고에 의해 매수자 및 대부자가 없는 경우 일정자격자에게 무상대부 □ 지역주민의 복지시설 및 소득증대시설로 활용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 가능	폐교재산활용촉진에관한 특별법(2007. 7월 시행)	지방교육 재정담당관 ☎(02) 2100-6366
7	지방교육자치제도	□ 교육감 임기 - 4년(1차 중임)	□ 4년(계속재임은 3기에 한함)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지방교육 혁신과 ☎(02) 2100-6355

〈 과학 기술 부 〉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융합에너지에 관한 원천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핵융합에너지의 국가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체계적·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융합에너지 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 국가핵융합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과 소요 재원확보 - 전문연구기관 설립 등 	262회 국회본회의에서 의결 (2006.11.30) 2007년 3월 시행령 공포 예정	과학기술부 기초연구 지원과 ☎ (031) 436-8605
2	국가과학기술경쟁 력강화를위한이공 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법의 대상이 되는 대학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이 제외됨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성을 위한 지원대상이 불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폭넓게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학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을 추가 □ 과학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과학기술 진흥과 ☎ (031) 436-861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기술사법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제도 운영에 관한 범부처 정책협의체 부재 □ 기술사의 배출·육성·활용 업무가 분산되어 일관된 장기정책비전 수립 부재 □ 국가간 기술사 자격상호인정을 위한 일관된 기준과 협상창구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과학기술부 차관 위원 :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산·학·연 전문가, 기술사 - 주요 심의사항 : 기술사의 직무조정·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수립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에 대한 장·단기 수요·공급 - 기술사 활용 장려 - 기술사 육성과 기술능력 향상 - 기술사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 □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기준 및 절차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간기술사상호인정 심사위원회」 설치·운영(자격기준 수립 및 심사) - 심사결과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발급 ☞ FTA 등 시장개방 시 협상국 내에서 기술사로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 	기술사법	과학기술 진흥과 ☎ (031) 436-861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 및 기술사사무소에 대한 경력, 교육·훈련, 실적 등의 정보가 분산관리 - 공신력있는 정보관리 시스템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현재 분산운영 중인 정보의 통합관리 		
4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출원시 국가지원 여부를 알 수 있는 식별 정보 미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로 특허 출원하는 경우 국가 지원으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보 기재 의무화 및 개인명의 특허출원·등록 금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 중, 2007년부터 시행)	연구조정 총괄담당 관리실 ☎ (02) 2110-3734
5	과학기술분야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 연구소는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및 관리를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업무성격이 이 법에 규정된 19개 연구기관과 유사하고, 이 법에 따른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 활성화 등 연구개발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연구활동 지원 전문조직인 연구회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전환하고 그 명칭을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연구조정 총괄담당 관리실 ☎ (02) 2110-375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진흥법 개정 (홍창선 의원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부설기관인 원자력의학원을 독립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확대·개편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진흥법	원자력정책과 ☎ (02) 2110-3648
7	R&D 관련조세 특례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술 취득금액 세액공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의 2006.12.31일까지 적용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의 2006.12.31일까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조세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2009.12.31일까지 연장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촉진 □ 각 과세년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사후적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로써 제도가 복잡하고 저금리 기조로 인한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조세특례 제한법	기술혁신 제도과 ☎ (02) 2110-378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p>□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비율은 40%</p> <p>□신설</p> <p>□신설</p>	<p>□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외부위탁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50%로 확대 - 대기업의 대학에 대한 외부위탁연구비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위탁연구비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활성화를 유도</p> <p>□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령시점에는 익금에 불산입하고 연구개발 관련 지출이나 자산 취득시 익금에 산입하는 특례를 2009.12.31일까지 운영</p> <p>□대덕특구 내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에 대해 소득발생 후 3년간 100%, 2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을 신설</p> <p>※특구특별법(§2,§9)에 따라 2009.12.31일까지 지정·승인된 기업으로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기술 업종으로 제한</p>		

〈 법 무 부 〉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3세미만자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 처벌	□ 폭행, 협박으로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처벌(1년이상 징역, 5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 벌금)	□ '강간'에 준하여 엄히 처벌 (3년이상 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제 8조의2	형사기획과 ☎ (02) 503-7052
2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처벌	□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행위 처벌	□ 신설)장애인 보호·교육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그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 간음 : 7년이하 징역 - 추행 : 5년이하 징역	동법 제11조제3항	형사기획과 ☎ (02) 503-7052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 상향	□ 1년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동법 제14조	형사기획과 ☎ (02) 503-705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 □ 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 14조의2	형사기획과 ☎ (02) 503-7052
5	친고죄의 범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제2항의 죄는 친고죄에서 제외 	동법 제15조	형사기획과 ☎ (02) 503-7052
6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범죄의 수사·재판 관련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 	동법 제21조	형사기획과 ☎ (02) 503-705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도입	□ 신설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국가는 이들에 대한 교육 실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21조의2	형사기획과 ☎ (02) 503-7052
8	의무적 진술녹화 대상자 연령 상향	□ 의무적 진술녹화 대상 : 13세미만	□ 16세미만으로 상향	동법제21조의3 제3항	형사기획과 ☎ (02) 503-7052
9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범 위 확대	□ 피해자가 13세미만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경우에만 신뢰관계인 동석을 의무화	□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 재판에 있어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22조의3	형사기획과 ☎ (02) 503-7052
10	방문취업 비자신설	□ 취업을 원하는 동포는 방문동거(F-1-4)로 입국 후 취업자격(E-9)으로 전환필요 - 연고가 있는 동포만 특례고용허가제로 입국가능	□ 단순방문비자와 취업비자를 “방문취업(H-2)” 비자로 통합 발급 - 무연고동포도 연도별 쿼터를 정하여 입국허용 □ 5년 유효 복수비자 발급 - 1회 3년 체류 후 출국 - 재입국 가능하며 비자 재발급 필요 없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완료 후개정 준비중, 개정 시 2007년 상반기 시행)	외국적 동포과 ☎ (031) 478-504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수비자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취업 후 출국 - 6월 경과 후 재입국이 가능하며 비자 재발급 필요 □ 고용절차 복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는 개별건마다 고용허가를 받아야 동포고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일괄적으로 발급받아 3년간 별도 허가절차 없이 동포를 선택하여 고용 가능 		
11	출소자 숙식보호 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소자 한국갱생보호공단 생활관에서의 숙식보호기간 최장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소자 한국갱생보호공단 생활관에서의 숙식보호기간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 12. 시행 예정)	관찰과 ☎ (02) 503-7072

〈국 방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예비군 훈련 여건 개선	□ 전시근로소집 지정대상자 (제2국민역)	□ 전시근로소집 지정대상자 변경 - 대상 : 제2국민역 → 5~8년차 보충역	2007 예비군 교육훈련 지침 (장관)(2007.1)	예비전력 관리팀 ☎ (02) 748-5245~6
		□ 전시 근로소집 지정자 훈 련 미실시	□ 전시 근로소집 대상자 훈련 실시 - 지정자 중 5~6년차 예비군 소집점검 4시간 실시(향방작계훈련 6시간 면제)		
		□ 휴일 예비군훈련 시험 실시	□ 휴일 예비군훈련 전면 시행 - 분기/반기 단위 훈련부대 지정 실시	"	"
		□ 입·퇴소 시간 - 일반훈련 : 입소 (08:00), 퇴소(17:00) - 동원미참자 입영훈련 : 입소(08:00)	□ 원거리 훈련장 입소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입·퇴소 시간 조정 - 일반훈련 : 입소(09:00)/퇴소(18:00) - 동원미참자 입영훈련 : 입소(09:00)	"	"
		□ 훈련입소 지연 도착 허용 시간 - 동원훈련 : 2시간 이내 - 향방작계훈련 : 1시간 이내	□ 정시 입소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지연입소 허용시간 단축 - 동원훈련 : 1시간 이내 - 향방작계훈련 : 30분 이내	"	"
		□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 방법 - 인터넷, 우편, 등기우편, 인편	□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방법에 FAX 추가	"	"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60개 부대 서바이벌 장비 활용 훈련 실시	□서바이벌 장비 활용 훈련을 전 부대로 확대	2007 예비군 교육훈련 지침 (장관)(2007.1)	예비전력 관리팀 ☎ (02) 748-5245~6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서류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 우편 또는 FAX를 이용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서류 제출 방법에 인터넷 추가	"	"
2	국군포로 및 가족 지원제도 개선	□귀환 국군포로에 대하여는 보훈병원(5개) 및 군 병원 이용시 진료비의 60% 할인혜택 □재북시 사망한 국군포로의 가족중 탈북 가족에 대해 일반 탈북자와 동일한 대우 제공	□귀환 국군포로 본인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및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무상지원 □재북시 사망한 국군포로의 가족중 탈북 가족(배우자, 자녀)에 대하여는 2006년도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단위 최저 임금에 200시간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007.7.1)	북한정책팀 ☎ (02) 748-6258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군 복무 중 자기 계발을 위한 학습 활동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 입대와 동시에 자동 휴학으로 복무 중 학업 활동 제한 □군내 학습활동을 위한 인프라 미구축 □군 교육훈련의 대학 학점 미인정 (병사 대상 46개 과정 시범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 복무 중에도 병영 내에서 대학의 e-러닝 강좌 수강을 통해 소속 대학의 학점취득이 가능 □전 군에 e-러닝 학습이 가능한 PC 학습방(일명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설치·운영(중대별 인터넷 PC 16대 설치) □우수한 군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한하여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대학 학점 인정 과정 선정 등 대학교육 협의회와 협의 추진 	병역법(제73조), 고등교육법(제23조) 개정추진 (국회법사위계류중)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 (제3조) 개정완료 (2006.12.7) 시행 : 관련법 국 회통과, 정부이송 (공포일 이후)	국방부 인적자원 개발팀 ☎ (02) 748-5286
4	병 전역 전 건강 검진제도 도입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 전역전 건강검진 미 실시로 전역장병 질병 확인 제한 □병 전역직후 중대 질병 확인으로 민원제기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 전역전 건강검진제도 도입·시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부대(4) : 육군12·25사단, 국군양주·철정병원 - 검진범위 : 간 기능 검사 등 23항목 - 검진기관 : 1차(사단의무대), 2차(군 병원 정밀진단) - 검진시기 : 전역5 - 6개월 전 (사단급 1일 20명 예상) □시범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2008년 확대 시행 	국방부훈령 71호 (군 건강 증진규정) 2007. 5월 시범 실시	군의무발전 기획팀 ☎ (02) 748-679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장병급식 향상 □ 신규급식 - 쫄면/생우동 - 로인햄슬라이스 - 치킨너겟 - 비빔소스 (해물/육고기) - 홍계살 등 3종 □ 증가급식 - 꼬리곰탕 - 한우고기 - 비엔나소시지 - 주꾸미 - 조기 □ 품질개선 - 일반파 - 돈까스 - 생선류 (명태, 고등어, 갈치 등)	- - - - - - 1회450g/연 18회 1일 5g - 연 24회/70g - 연 24회/40g - 연 12회/60g - 원품 - 순살 - 반가공 - 월 12~24회	□ 선호식품 신규/증가 급식 및 품질개선 - 각 연2회 - 연 3회 - 연 3회 - 각 연 3회 - 각 연 2~3회 - 1회500g/연 18회(↑ 50g) - 1일 10g(↑ 5g) - 연 36회/90g(↑ 12회/20g) - 연48회/60g(↑ 24회/20g) - 연 12회/80g(↑ 20g) - 포장 반가공 - 두들긴 순살 - 순살코기(필렛) 급식 - (연 6회~12회)	2007 급식 방침 시행 : 2007.본 조달 계약분부터	군수관리관실 물자팀 ☎(02) 748-572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국방 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 적용대상 : 부대이전 및 군 사용 사유지 보상 사업 - 회계운용/관리 : 재경 부 장관 - 이전지역 주민편익 시 설 지원 :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 적용대상 : 부대이전(통합·조정 의 경우도 가능) 및 군 사용 사유지 보상 사업 - 회계운용/관리 : 국방부장관 - 이전지역 주민편익시설 지원 : 가능 	<p>“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폐지 및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 제정 시행</p> <p>* 국회 법사위 계류중</p>	<p>군사시설기획 관실 건설관리팀 ☎(02) 748-5826</p>
8	군납면세 담배 판매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납 면세담배 판매량 - 흡연병사 1인당 10갑 /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납 면세담배 판매량 - 2007~2008 : 1인 5갑/월 - 2009년 : 면세담배 폐지 	2007. 1월	<p>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팀 ☎ (02) 748-6616</p>

〈 행정자치부 〉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제 고를 위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등 주요재산의 변동가액신고 □ 고지거부제 개선 : 사후심사제 ⇒ 사전허가제 □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형성과정소명제 도입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범위 조정 : 지자체 3급이상 공무원 등 추가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재산등록 범위에 추가 □ 취업제한제도 강화 : 영리사기업체 자료제출 요구권 규정 등 	공직자윤리법 (2006.12.1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시 6개월 후 시행)	공직윤리팀 ☎ (02) 2100-3349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지방세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고지서 납기한이 도달일부터 7일이내인 경우 - 납부기한 : 7일 □ 서류송달방법 - 교부 또는 등기우편 □ 면허 취득시 수시분 면허세 납부 후 익년도 1월에 정기분 면허세 납부 □ 소득할주민세 착오납부 등의 경우 -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수정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기한을 14일로 연장 □ 전자송달 방법추가 ※ 납세자가 희망할 경우에 한함 □ 수시분 납부시 익년도 정기분 면허세 동시 납부 선택권 부여 ※ 선납시 익년도분 납부금액 10%할인 □ 수정신고 기한을 부과지 전으로 연장 	지방세법(정기국회 상정중, 공포시 2007년 과세분부터 시행)	지방세제팀 ☎ (02) 2100-3920
4	<p>도로명주소의 법적 주소전환</p> <p>도로명주소DB 구축·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번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 □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DB를 각 시군구별로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 - 2007.4.5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종전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사용 -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 □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DB를 전국적으로 통합·표준화 운영 - 행자부와 시·도에 도로명주소 통합 센터 구축, 1단계(128개지역)연내 완료 - 주소 및 지도DB 민간·공공부문 제공 	<p>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2006.10.4 제정)</p> <p>□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2006.10.4 제정)</p>	<p>도로명 지원단 ☎ (02) 2100-4055</p>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도입	□행자부장관의 기구 정원 승인권	□지방자치단체가 기구 및 정원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자율적으로 관리 하는 제도로 전환 - 기구설치·정원 승인권 등 15개 권한 이양 - 부단체장의 정수·직급,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최소한의 기준은 존치 □책임성확보를 위해 지방의회 통제를 강화하고 조직관련 정보 인터넷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및 시 행규칙(대통령령 개정중, 2007. 1 월 시행)	지방조직 발전팀 ☎ (02) 2100-3811
6	주민소환제 도입	□신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소환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2007.5.25)	자치분권 제도팀 ☎ (02) 2100-3753
7	정부차원의 지원체 계 확립 및 주민참 여 근거 신설(예정)	□신설	□정부·시도의 지원체계 확립 - 행자부 장관 옥외광고제도 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 시도지사 광역단위 행·재정적 지원계획 수립·시행 □주민 및 업계 자율참여 촉진 제도장치 마련 - 시군구 주민의사 반영 지역특성에 맞는 광고 물 정비 추진 의무화 - 자율참여 광고주·광고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우대조치 강구	옥외광고물등 관 리법 제5조의2 (법제처 심사 중, 공포시 6개월 후 시행)	살기좋은 지역관리팀 ☎ (02) 2100-6958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8	행자부장관 소속 옥외광고물정책위 원회 설치 (예정)	□ 신설	□ 행자부 장관 소속 “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 설치 운영 -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옥외광고분야 전문 가 15인이내 구성 - 옥외광고관련 주요정책 자문·심의	옥외광고물등 관 리법 제6조의2 (법제처 심사 중, 공포시 6개월 후 시행)	살기좋은 지역관리팀 ☎ (02) 2100-6958

〈 문화 관광 부 〉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제 변경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만 을 함으로써 영업 가능 (자유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10월 경부터 시행예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6조(12월 임 시국회 통과예정)	게임산업팀 ☎ (02) 3704-9363
2	게임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 금지	□경품취급기준고시에서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경 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 을 재매입(재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고 규정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의 결과물(점수, 경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함 -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은 공포후 즉 시, 게임머니 등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4월 경부터 시행예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 32조제7호(12 월 임시국회 통과 예정)	게임산업팀 ☎ (02) 3704-9363
3	청소년이용불가 게 임물의 경품제공 금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경품의 종 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 경품 등 을 제공할 수 있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 경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되,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 이용 가 게임물에 대해서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 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지급방법에 따른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4월경부터 시행예정. 단, 경품용 상품권은 4.29일부터 시행 예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8조제3호 단 서(12월 임시 국회 통과예정)	게임산업팀 ☎ (02) 3704-936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	□ 발행일 1년 이내의 모든 간행물(2005년부터 실용도서 제외)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정가로 판매하여야 함	□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됨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2조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공정위고시, 2002.12.31)	출판산업팀 ☎ (02) 3704-9639
5	회원모집이 가능한 숙박시설을 연계한 회원모집 허용	□ 휴양콘도미니엄, 가족호텔업, 관광호텔업은 각각 회원모집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들을 연계한 회원모집은 금지	□ 관광업종들을 연계한 회원모집을 허용	관광진흥법 19조	관광산업팀 ☎ (02) 3704-9755

〈농림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농지내 축사설치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의 정의에 축사부지는 포함되지 않아, - 농지내에 축사설치를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신고)를 거쳐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부지도 농지에 포함되어 농지전용허가(신고)를 거치지 않고 농지내에 축사설치 가능 	농지법 (2006년 공포 및 공포후 6개월 후 시행 예정)	농 지 과 ☎ (02) 500-1670
2	조건불리직불제 지원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육지 : 전체면 경지경사도 14% 이상 - 도서 :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유지 활성화,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해 농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오지면과 도서에 대해 기준 완화 - 육지 : 일반면 14%, 오지면 7% - 도서 : 전 도서 	농림사업시행 지침 개정(미정)	농 지 과 ☎ (02) 500-1703
3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만5세 이하 아동 □ 지원대상 지역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2000.3.1~2001.2.28 출생)까지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지역을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 확대 	농림사업 시행 지침(2007.1.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2006.4.28개정)	여성정책과 ☎ (02) 500-160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5세 이하 아동 □ 지원대상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 4세이하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보육료 단가의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2000.3.1~2001.2.28 출생)까지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지역을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 확대 □ 4세이하 지원단가를 정부보육료 단가의 35%로 인상 	<p>농림사업시행지침(2007.1.1)</p> <p>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2006.4.28개정)</p>	<p>여성정책과 ☎ (02) 500-1605</p>
5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농촌고령가구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지역 : 82개 시군 □ 영농도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3ha 미만, 65세 미만으로 2주 이상 사고농가 - 지원내용 : 1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 39,900원/일 • 여 26,000원/일 □ 가사도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65세 이상 고령 단독 농가, 65세 미만 사고농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지역 : 전국 □ 영농도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5ha 미만, 69세 이하로 2주 이상 사고농가 - 지원내용 : 1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000원/일 □ 가사도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65세 이상 농촌 고령가구, 65세 미만 사고농가 등 	<p>농림사업시행지침 (2007.1.1.)</p>	<p>여성정책과 ☎ (02) 500-1607</p>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농촌지역 여성결혼 이민자에게 방문 한국어교육 등 지원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지역 : 50개 시·군 □ 지원대상 :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한국어 교육 : 5개월(40주)간 주 3회 방문 한국어교육 실시 - 부부교실, 가족캠프, 모국방문 비용지원 등 	농림사업시행 지침(2007.1.1.)	여성정책과 ☎ (02) 500-1607
7	농업경영컨설팅 정액쿠폰제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가 희망하는 컨설팅업체를 선택, 쿠폰을 지급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받으면 정부가 컨설팅 비용에 대해 지불 보증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쿠폰제 신규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농가 : 8백만원 - 법인 : 10백만원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 유통전문조직, APC, RPC : 30백만원 이내 	농업·농촌기본 법 (2007.1.1.)	경영인력과 ☎ (02) 500-1684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8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 신 설	<p>□ 농촌지역의 특성을 지닌 잠재자원(자연경관과 전통, 역사, 음식, 특산물 등의 문화·사회자원)을 활용하여 특정테마의 휴양·레저·체험이 어우러진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공원, 학습전시관, 농업·농촌 체험공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소득창출이 가능한 시설 등은 민간참여 유도 - 사업비는 50억원 범위내(국고 50%, 지방비 50%)에서 지원 - 2007년 예산(균특회계)으로 4개지구 1,570백만원 지원 <p>※ 경기 안성, 충북 음성, 충남 서천, 전남 영광</p>	<p>농림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2004.3.5)</p>	<p>농촌진흥과 ☎ (02) 500-1968</p>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9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등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3등급은 1/2 정률 지원 - 15등급초과는 14등급 보험료의 1/2 정액지원 □ 지원대상은 농어업인에게 지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소득·임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농업·임업 또는 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되어 지원 □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4등급은 1/2 정률지원 - 15등급초과는 14등급 보험료의 1/2 정액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경감지원시행지침 (2007.1.1)	농촌사회과 ☎ (02) 500-2086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0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종류가 복잡하고, 인증유효기간이 짧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종류 :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4종류) - 인증유효기간 : 1년 □ “생산자”와 “수입자”만 인증신청을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종류가 간소화되고, 인증유효기간이 연장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종류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3종류) - 인증유효기간 : 2년(유기농산물 : 1년) □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도 인증신청을 할 수 있음 □ 인증관리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행위자는 1년간 인증신청이 금지되고, 인증기관은 5년마다 자격요건 심사를 받아야 함 □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자재의 주성분,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성 등 관련정보를 공개하여 농업인이 자재선택시 동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함 	친환경농업육성법(2007.3.28)	친환경농업정책과 ☎ (02) 500-1812
11	농림기술개발사업 과제구분 변경 및 지원규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전략과제 : 5년 10억 □ 농산업기술개발 : 3년 5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과제(정부지정공모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50억원 이내 □ 일반과제(자유응모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10억원 이내 ※ 농산업체 참여시 우대 	농림사업시행지침(2007.1.1)	농생명산업정책과 ☎ (02) 500-1797~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2	쌀브랜드육성사업 실시	□ 신 설	□ 우리쌀의 품질경쟁력을 높여 소비자의 신뢰확보 및 수입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8개소(RPC) 국고 보조 72억원 지원	농림사업시행 지침(2007.1.1)	소득관리과 ☎ (02) 500-2113.
13	쌀·현미의 품종명 표시방법 변경	□ 쌀·현미의 품종명을 표시한 경우의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한도 미설정	□ 쌀·현미에 표시된 품종명과 다른 품종의 혼입이 20%를 초과하면 거짓표시로 처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곡관리법 (2007.1.1)	소득관리과 ☎ (02) 500-2117
14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 신 설	□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과실의 대표브랜드육성 지원 - 과실의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일관된 품질관리를 통해 일반과실과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과실브랜드화 사업을 전국 및 광역 단위로 구분하여 추진 - 2007년도에 38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1개소, 광역공동브랜드 7개소를 발굴·육성지원	농림사업시행 지침 (예산확정시 2007.1.1 시행)	과수화훼과 ☎ (02) 500-1882
15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지원요건 강화 - 매입제의 과원 중 예외	□ 전매 제한기간 경과 후 과원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매도된 과원 □ 신 설	□ 전매 제한기간 경과 후 과원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 이상 경작된 과원 □ '경매로 인하여 매매사업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이상 경작된 과원 ⇒ 일정기간 경작을 의무적으로 한 후 매도토록 하여 투기 방지	농림사업시행지침 (2007.1.1) 농림사업시행지침(2007.1.1)	과수화훼과 ☎ (02) 500-188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 지원제외자 - 기타 행정사항	□신 설 □신 설	□허위·담합으로 지원 받은 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 받은 자 ⇒ 부정지원자에 대한 지원 제한 □과원영농규모화 사업 지원자 행정기관 통보 의무 ⇒ 과원폐원지원사업 등과 2중 지원되는 행위 사전 방지		과수화훼과 ☎ (02) 500-1882
16	배추·무 포장유통 전국 공영도매시장 전면 실시	□배추·무는 전국 공영 도매 시장에 산물 또는 포장 출하 모두 가능하 고, 농산물 표준규격으로 포장출하 하는 경우 포장 재비 등을 지원 ※배추는 수도권 8개 공영도매시장을 대상 으로 포장유통 시범 사업을 2006년 9월부 터 실시하여 정착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은 배추·무의 도매시장 내 다듬기(재선별, 재포장)가 금지되어 산물출하 가 제한됨	폐기물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2007.1.1부 터 시행)	유통정책과 ☎ (02) 500-1824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7	시설현대화사업	□우수 식품 품질인증(HACCP, ISO22000)을 받고자 하는 식품관련 업체에 대해 연 4%의 금리로(단, 농업·농촌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의 경우는 3%) 시설투자 용자 지원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시설자금 금리를 4% (농업인 등 3%)에서 농업인·비농업인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로 인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기금의 용도)	식품산업과 ☎ (02) 500-1847
18	비닐하우스 재해경감대책 사업지원	□비닐하우스 재해경감 대책사업지원 : 없음	□기존 비닐하우스중 재해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구조보강사업 추진(2007~2011) - 2007예산안 : 127억원(용자100%, 금리 1.5%, 3년거치 7년상환) - 사업내용 : 보강지주, 조리개교체, 기초 및 온풍덕트 설치 등	농림사업시행지침(2007.1.1부터 시행) ※신규지원 근거 규정 -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 (재해예방지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57조(기금지원)	채소특작과 ☎ (02) 500-1866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9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의 원산지 표시를 실시하였으나, □ 음식점에서 식육을 조리·판매시 원산지표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1.1일부터 300㎡이상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한우·육우·젓소) 표시의무화 □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가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원산지·식육종류 모두 미표시 : 500만원, 원산지 미표시 : 300만원, 식육종류 미표시 : 100만원 	식품위생법 (2007.1.1일 시행)	<p>축산물위생과 ☎ (02) 500-1924</p> <p>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 ☎ (031) 440-9115</p>
20	의무자조금 대의원 선출을 위한 축산업자의 수 및 축산업자별 가축사육두수 조사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의원 선출을 위해 의무자조금 도입 초년도와 대의원 임기가 끝나는 4년마다 축산업자의 수 및 가축사육두수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의원 선출을 위한 별도의 조사는 폐지하고, 최근 1년 이내의 축산 행정통계결과로 같음 - 축산 행정통계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최소화 	<p>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일: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p> <p>※ 현행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명이 「축산자조금의 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로 변경될 예정</p>	<p>축산경영과 ☎ (02) 500-1995</p>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1	닭, 오리고기 포장 유통 의무화	□ 닭, 오리고기 포장 자율 실시	□ 의무화 규정 - 축산물 종류 : 닭, 오리고기 식육 - 대상영업자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제1호 의 도축업 영업자중 연간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이상인 자	축산물가공 처리 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7	축산물 위생과 ☎ (02) 500-1923~4
22	공익수의사제도 운영	□ 신설	□ 「공익수의사」 제도 신설 -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자 중에서 공익수의사 선발·운영 (매년 150명) - 현행 공중보건수의사, 공익법무관 외에 공익 수의사로 3년간 복무할 경우, 공익근무요원 복무 대체 - 검역원, 시·도 및 시·군·구에 배치되며, 가축방역·축산물위생·검역 등의 업무를 수행	공익수의사에관 한법률 및 병역 법 ※공익수의사 선발·배치 등은 2007년부터 시행	가축방역과 ☎ (02) 500-193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3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시행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 등록 농가는 효율적인 방역 및 가축사양 관리 등을 위해 적정사육기준을 준수해야함 □ 동 사육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p>축산법 제20조의 5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p> <p>시행일 : 2007.1.1</p>	<p>축산정책과 ☎ (02) 500-1900</p>
24	축산물의표시기준 개정	<p>가. 모든재료 원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원재료는 사용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 표시 <p>나. 축산물가공품 영양표시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제육류 영양소 표시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가공품에는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모든 원재료 표시 의무화 □ 다소비 제품에 대한 영양소 표시 의무화 대상 6가지 추가(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의표시기준 (2007.1.1) 축산물의표시기준(2007.1.1) 	<p>축산물 안전과 ☎ (031) 467~1962</p>

〈산업자원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에너지다소비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추진	□ 신설	□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이상의 에너지다소비업자는 에너지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5,000toe이하의 중소기업에게는 진단비용의 70%를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4조 (2007.1월부터 적용)	에너지관리팀 ☎ (02) 2110-5421
2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의 규정 방법 변경산업단지 입주대상의 확대	□ 건축물이 있는 산업용지의 최소분할면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	□ 산업단지의 최소분할면적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하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 제6조 시행일 : 2007.1.1	투자입지팀 ☎ (02) 2110-5302
3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 대한 국공유지 매각·임대 근거 및 영구시설물 축조 근거 마련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만 국공유지 매각 및 임대 가능	□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 대해 국공유지 매각 및 임대 가능 □ 입주자가 임대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시행일 : 2007.7.1	균형발전정책팀 ☎ (02) 2110-550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산업기술단지 입주 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 산업기술단지내 공장 등록 불가	□ 「건축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상 건축물 제한에 대한 특례를 두어 산업기술단지내 입주기업의 공장등록을 허용 - 국토법상 공장설립이 전면 불가한 6개지역 제외 - 구조안전 사전확인 실시 - 도시형공장으로 한정 - 공장면적을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일정비율로 제한 - 기업유형 : 창업자 및 벤처기업 - 2007.6.30 이전에 지정 또는 지정변경된 단지로 한정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시행일 : 2007.7.1	균형발전 정책팀 ☎ (02) 2110-5503
5	기술거래사 공신력 제고	□ 기술거래사의 등록기관은 거래소	□ 기술거래사의 등록기관을 산자부장관으로 변경	기술이전 촉진법 ※(국회 본회의 결되었으나 아직 미공포) (2007년 6월부터 시행 예상)	기술사업화팀 ☎ (02) 2110-5398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공공기술의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사업화 관련 규정의 자율적 관리 □ 기술의 현물출자시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 감정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공공연구기관의 자체 규정 제정 의무화 □ 공공기술의 현물출자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인정 	<p>기술이전촉진법</p> <p>※(국회 본회 의결 되었으나 아직 미 공포) (2007년6월 부터 시행 예상)</p>	<p>기술사업화팀</p> <p>☎ (02) 2110-5398</p>
7	전력시장 거래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발전설비에비율에 관계없이 발전사가 입찰한 용량에 대해 용량가격 지급 □ 시간대별 용량가격 계수에 피크기간과 일반기간 비구분 □ 전력시장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발전사 變動費에 연료비와 기동비만 반영 □ 전력량가격에 계통한계 가격과 기저계통한계 가격 구분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제주) 적정설비에비율에 연계한 지역별 용량가격 계수를 적용하여 용량가격 지급 □ 시간대별 용량가격 계수에 피크기간과 일반기간 구분 적용 □ 전력시장가격에 송전손실계수 적용 □ 기저계통한계가격을 폐지하고 기저발전기에 가격상한제 도입 	<p>전력시장운영 규칙</p> <p>(2007.1.1일 시행)</p>	<p>전력시장팀</p> <p>☎ (02) 2110-5523</p>

〈정 보 통 신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대상범위를 기준이 월 소득 평가액 14만원 이하로 제한 □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대상 서비스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대상 상한 기준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소득평가액 14만원 이하 저소득 층에서 모 든 저소득층으로 대상범위확대 □ 감면대상 서비스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서비스에 이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까지 추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2007. 1.1. 공포시행)	통신전파 방송정책 본부 ☎ (02) 750-1371
2	미인증 및 개조· 변조·복제기기 관련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인증 기기를 제조·수입한 자 및 판매자만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수입: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판매: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인증 받은 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한 자만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인증 기기를 무선국에 설치한 자도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개조·변조·복제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이를 설치한 자도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전파법제86조제 2호 및 제1호의 2(신설) - 공포 3개월 시행 (2006.12.5, 국회 법안 의결)	전파방송 사업팀 ☎ (02) 750-242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등기우편물 무인 배달시스템 시행	□ 등기우편물은 본인 또는 대리수령인을 통해서만 배달이 가능	□ 수취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무인배달 수취함에 배달했음을 SMS 전송해 주는 무인배달시스템을 설치 -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	우편법시행령 제 43조 5항 - 시행일 : 2007. 5.	우편사업단 물류기획팀 ☎(02) 2195-1232
4	철도승차권 우체국 창구 교부 및 배송 서비스 시행	□ 신규 서비스	□ 고객이 철도승차권 예약시스템에서 티켓 예약 후 우체국창구 또는 자택(직장)에서 수령 - 시범운영 : 2006.12.20.	서비스 시행 - 2007년 상반기	우편사업단 마케팅기획팀 ☎(02) 2195-1222
5	권리소멸되는 우편환·우편대체 지급증서에 대한 지급방법 개선	□ 증서의 유효기간 경과 후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고 지급이 불가능함	□ 소멸시효가 도래한 우편환 및 우편대체 지급증서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최고 하도록 하고, 국고 귀속 후에도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지급하도록 함 - 수취인이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으로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 수취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증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	우편환법 제16조 제3항, 제4항 및 동법, 제16조의2 우편대체법 제27조 제3항, 제4항 및 동법, 제27조의2 - 시행일 : 2007. 1. 1	금융사업단 예금사업팀 ☎(02) 2195-1359

〈 보건복지부 〉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 (2007.1.1.)	기초생활보장팀 ☎(02) 2110-6226
2	기초생활보장제도 외국인 특례 도입		□ 국적취득전인 외국인 배우자에게 기초생활보장수급권 부여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 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 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2007.1.1.)	기초생활보장팀 ☎(02) 2110-6226
3	긴급지원제도 생계비 지원기준 상향	□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시 최저생계비의 60% 지급	□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을 해당연도 최저생계비 100% 지급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고시 개정 (2006.11.7)	기초생활보장팀 ☎(02) 2110-622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표시제도 의무화	□농산물 및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화가 소매 단계 및 정육점단계에서 는 시행되고 있으나, 음식점 단계에서는 시행 하고 있지 않음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은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표시 의무화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 표시와 함께 식 육의 종류(한우·젓소·육우)를 구분하여 병행 표시하여야 하고, -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 록 함.	식품위생법 (2007. 1. 1)	식품정책팀 ☎(031) 440-9115~8
5	희망스타트업 실시	-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 스 제공	아동복지법, (2007.1)	아동안전 권리팀 ☎(031) 440-9656
6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부양수당 수급 자 등급판정 심사 운영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 장애인(1~2 급)으로 등록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 장애인(1~2급) 으로 진단 받은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 심사를 거쳐 중증 장애인 (1~2급)으로 등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장애인등록증 교 부 등), 5조(장애 등급의 조정) (2007.4)	장애인정책팀 ☎(02) 2110-6266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운전면허증 등 장기기증희망자 표시제 도입	□신 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아래 사업 실시 -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 희망자 표시 -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의 마련 및 추진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2007.9.28)	보건의료정책 본부 혈액장기팀 ☎ (031) 440-9140
8	순수생체장기 기증자 유급휴가비 지원	□신 설	□순수하게 장기를 기증한 근로자가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소요되는 입원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비 지원 - 지원금액 : 59백만원 • 장기기증자 : 50천원*14일*30명 • 골수기증자 : 50천원*5일*150명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2007.9.28)	보건의료정책 본부 혈액장기팀 ☎ (031) 440-9140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9	장애수당·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p>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인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장애아동 1급 보호자) 지급</p> <p>□지급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수당 :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 - 장애아동부양수당 : 월7만원 	<p>□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계층 등록 장애인까지 확대</p> <p>□지급액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수당 : 기초중증 13만원, 차상위 중증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3만원 - 장애아동부양수당 : 기초중증 20만원, 차상위 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 	장애인복지법 (2007.1.1)	장애인 소득보장팀 ☎ (02) 2110-6279
10	보건복지 관련 상담 전화의 통합·운영	<p>□보건복지 관련 상담 전화번호가 개별적으로 개통·운영됨에 따라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고, 통합적 서비스가 곤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1391) - 노인학대(1389) - 푸드뱅크(1377) - 위기가정(1688-1004) - 노인치매(1588-0678) 	<p>□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운영</p> <p>※ 1391, 1389, 1377, 1688-1004, 1588-0678 상담전화는 '2007.1.1.부터 없어지고 전화할 경우 “결번”으로 안내</p> <p>※ 다만, 아동학대(1577-1391), 노인학대(1577-1389), 푸드뱅크(1688-1377) 상담전화는 129와 함께 이용 가능</p>	시행일 : (2007.1.1)	콜 센터 ☎ (031) 389-7311 또는 전국 어디서나 ☎ 129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1	생애전환기 전 국민 일제 건강진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개별법률(5개)에 근거 국가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만족도 및 저조한 참여율 □ 연령별, 성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검진 방법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인자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검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예방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진단 프로그램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예방서비스 제공 체계로 전환 □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전 국민 건강검진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세, 40세, 66세 등 전환기 연령에 우선 적용 후 전 연령대로 확대 □ 검진 후 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습관 고위험군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 ※ 건강위험평가, 노인 신체기능평가 및 생활습관개선 처방 등 도입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의료급여법 제 14조 (2007. 4.1)	질병관리팀 ☎ (02) 2110-6310
12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층 노인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 시 이용료(월437~706천원) 전액 본인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층 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의 약50%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비노인요양시설 : 월220천원 - 실비전문요양시설 : 월300천원 	노인복지법 제47조 (2007년 1월 시행)	노인요양 운영팀 ☎ (031) 440-9630~4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3	노인돌보미 제도 시행	□ 서민층 노인이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이용 시 경비 본인 부담	□ 서민층 노인에게 월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 가능토록 함 - 제공 서비스 : 가정봉사원과견서비스, 주간 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 제47조 (2007년 상반기 시행)	노인요양 운영팀 ☎ (031) 440-9630~4
14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 지원	□ 재가노인복지시설별 로 개별 서비스를 각각 제공	□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지원센터를 신규 설치 - 제공 서비스 : 가정봉사원과견서비스, 주간·단기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제39조 및 제45조 (2007년 1월 시행)	노인요양 운영팀 ☎ (031) 440-9630~4
15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 보험 등재 방식 - 일부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약품을 등재 관리하는 방식 (Negative List System) - 제약사의 의무신청 - 별도 협상 절차 없음	□ 보험 등재방식 -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통해 비용-효과성이 높은 의약품만 등재 - 제약사 자율신청(단, 필수약품의 경우 직권 등재) - 신약에 대해 보험 등재여부 및 가격 산정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소간 협상 실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07.1.1 시행 예정)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2007.1.1 시행 예정)	보험급여 기획팀 ☎ (02) 2110-7726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약제 상한금액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의 특효만료 시 가격인하 기전이 없음 - 사용량과 연계한 약가 재조정 기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약제 상한금액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복제의약품 등재 시 특허만료의약품의 가격을 20%인하하고, 복제의약품의 가격을 인하 조정 - 사용량에 따라 약가의 재조정 		
16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가입자 : 표준보수월액의 4.48% 산정 □ 지역가입자 : 등급별 적용점수에 131.4점을 곱하여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가입자 : 표준보수월액의 4.77% 산정 □ 지역가입자 :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하여 산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 (2007.1.1 시행 예정)	보험정책팀 ☎ (02) 2110-6356~8
17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변경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을 포함하지 않음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4천만원 초과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 	피부양자인정기준 (2006.12. 1. 시행)	보험정책팀 ☎ (02) 2110-6353~5

〈 환경 부 〉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 어른(1,600원) • 청소년·학생(600원) • 어린이(300원)	□ 국립공원 입장료 전면 폐지 ※ 한라산 국립공원은 미정	자연공원법 제37조(2007.1)	자연자원과 ☎ (02) 2110-6755
2	5.5톤이상 경유자동차 정밀검사시 부하검사 적용	□ 5.5톤이상 자동차는 무부하급가속방법 적용 • 검사수수료 : 18,000원 ※ 5.5톤이하 자동차만 부하검사 적용	□ 자동차 정밀검사시 5.5톤이상 자동차도 부하검사방법 적용 □ 검사수수료 : 30,000원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25 (2007.7)	교통환경관리과 ☎ (02) 2110-6859
3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내역 공지	□ 신 설	□ 수질기준을 위반한 수도사업자는 위반내역을 주민에게 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수도법 제18조의2 (2007.1)	수도정책과 ☎ (02) 2110-6876
4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제공	□ 신 설	□ 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제공하여야 함	수도법 제19조의3 (2007.1)	수도정책과 ☎ (02) 2110-6876
5	급수설비 관리 강화	□ 신 설	□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 급수설비의 시설상태 및 수질검사를 실시 □ 급수설비 노후, 수질기준 초과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시설 소유자에게 시설개선 권고 가능 □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가능	수도법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 (2007.1)	수도정책과 ☎ (02) 2110-6876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수도시설 위생상 조치 강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는 급수 장치에 대한 소독 등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소독등 위생상 필요한 조치 외에 급수관 상태 검사 및 세척·갱생·교체 의무를 추가함	수도법 제21조 (2007.1)	수도정책과 ☎ (02) 2110-6876
7	먹는물 수질검사 강화	□수돗물 수질검사 시료 채취지점을 급수과정에 따라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급·배수관, 저수조, 수도꼭지로 막연하게 규정	□정수장, 주배수지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 구역내 가압장 유출부, 광역 및 외부수수계통의 수수지점, 정수계통이 다른 계통과 합쳐지는 지점, 급수구역 관말, 수도꼭지로 명확히 함	수도법 제19조 (2007.1)	수도정책과 ☎ (02) 2110-6876
8	정수 시설 운영 관리자 국가자격 신설	□신 설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정수 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을 신설	수도법 제17조의4 (2007.1)	수도정책과 ☎ (02) 2110-6876
9	화장품 유리병 재활용(분리배출) 대상에 포함	□화장품 유리병은 폐기물 부담금 대상으로 분류	□재활용의무대상(EPR 대상)으로 변경 - 다 쓴 화장품 유리병은 분리수거함에 배출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007.1)	자원재활용과 ☎ (02) 2110-695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0	대기환경기준 강화	-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대기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중 일부 항목(NO2, PM10)의 환경기준 강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2007.1)	대기정책과 ☎ (02) 2110-6782
11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강화	□ 건강보호항목 : 중금속 중심으로 9개 □ 대장균군은 총대장균군으로만 측정 □ 신설	□ 벤젠 등 8개 유해물질을 건강보호항목에 추가 하여 총 17개 항목으로 확대 □ 대장균군 항목에 분원성대장균군 추가 □ 수질 등급별 생물지표종 도입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2006.12)	수질정책과 ☎ (02) 2110-6623
12	환경마크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대상에 서비스 품목 추가	□ 제품(기기·자재 포함)이나 재료에 대해서만 인증	□ 제품, 재료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목도 인증대상에 추가 - 예: 세탁, 인쇄 등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2007.7)	환경경제과 ☎ (02) 2110-6677
13	환경기술 평가업무 일원화	□ 환경기술평가 신청서의 접수·공고,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등은 환경부에서 수행 □ 평가·심의업무는 전문기관에서 수행	□ 신청서의 접수·공고,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및 평가·심의업무 등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일원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2007.7 예정)	환경기술과 ☎ (02) 2110-6720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4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에 독성평가항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시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시험성적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생생태독성(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조류급성독성) 시험성적서 3개 항목 추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조(2007. 1)	화학물질 안전과 ☎ (02) 2110-7958
15	환경영향평가제도 획기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교통, 재해, 인구환경 등 영향평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 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제도 삭제 □ 간이평가절차 도입, 환경영향평가서 등 각종 평가 관련정보 제공 	환경영향평가법 (2007.1)	환경평가과 ☎ (02) 2110-7625
16	제작자동차 OBD 부착 의무화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부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 휘발유 자동차는 30%이상 - 신규인증을 신청하는 소형 경유차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부착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휘발유 자동차 100% 부착 - 경·소형 경유 승용자동차 100% 부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9조 (2007.1)	교통환경기획과 ☎ (02) 2110-6806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7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발유 자동차는 '06년 신규인증신청차량만 ULEV 기준 적용 ※ 단, 소형승용자동차는 25%이상 적용 - LPG 자동차는 모든 차량에 LEV 기준 적용 ※ 단, 소형승용자동차는 2006~2007.6월기간중 출고되는 차량 - 경유자동차는 경·소형승용차만 EURO-4 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발유 자동차는 모든 차량에 ULEV 기준 적용 ※ 단, 소형승용자동차는 50%이상 적용 - LPG 자동차는 모든 차량에 ULEV 기준 적용 ※ 단, 소형승용자동차는 2007.7월부터 출고되는 차량부터 적용 - 경유자동차 EURO-4 기준 적용대상을 2007년 신규인증신청차량중 소형승용(2.5t초과), 소형화물, 중형승용·화물자동차로 확대 	<p>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별표 20 (2007.1.1)</p>	<p>교통환경 기획과 ☎ (02) 2110-6806</p>
18	배출가스관련부품 결함 보고 및 시정 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의 보증기간동안 결함시정(보증수리)을 실시한 경우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부품의 결함건수 및 결함비율이 일정요건에 도달하면 자발적 내지 강제적으로 리콜 실시 	<p>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의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 44조 (2007.7.1)</p>	<p>교통환경 관리과 ☎ (02) 2110-6861</p>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9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 신설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연간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량을 할당 받고 그 범위 내로 오염물질을 관리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관한특별 법 제14조 내지 22조(2007.7.1)	대기총량 제도와 ☎ (02) 2110-7928
20	대기배출부과금 산정방식 개선 및 보고주기 완화	□ 사업장의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해 사업자는 예정 및 확정배출량 자료 제출 □ 지자체는 배출부과금 부과실적(월1회) 및 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현황(연4회) 제출	□ 사업자의 예정배출량 자료 제출의무를 삭제하고, 기본배출부과금은 확정배출량에만 근거하여 부과 □ 배출부과금 부과실적 보고주기를 완화하여 부과금 부과 및 징수실적 체납처분 현황을 반기 1회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4조 (2007.1.1)	대기관리과 ☎ (02) 2110-6688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1	사업장 대기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제조시설,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등 신규 산업시설 배출허용기준의 새로이 설정 시행 □시멘트제품 제조시설의 염화수소, 선박 제조 시설 등의 도장시설 비연속식 공정에 대한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 완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및 별표8 (2007.7.1)	대기관리과 ☎ (02) 2110-6789
22	폐수배출업소 24시간 수질원 격감시체계 (TMS) 시행	□신 설	□일일 2000m ³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1종 배출업소와 공동방지시설에 대해 수질자동측정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원격감시를 시행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 (2006.7)	산업폐수과 ☎ (02) 2110-6845
23	생분해성수지제품 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신 설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면제 및 합성수지포장재연차별줄이기 대상에서 제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 12조 (2007.8)	자원순환 정책과 ☎ (02) 2110-6919

〈 노동부 〉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최저임금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급 3,100원 적용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급 3,480원으로 인상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30%를 감액한 시간급 2,436원 적용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부칙 제(2007.1.1)	임금근로시간 정책팀 ☎ (02) 503-9732
2	육아휴직급여 인상	□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매월 40만원씩 육아휴직급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를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3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적용)	여성고용팀 ☎ (02) 2110-7142
3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부금 1일 금액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1일 2,000원의 퇴직공제금을 적립 ※의무가입대상공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억이상 공공공사 • 300호이상 공동주택공사 • 10억이상 사회기반 시설 민간투자사업 	□ 1일 적립금액 인상(2,000원 → 3,000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2007.1.1)	퇴직급여 보장팀 ☎ (02) 507-170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외국인고용허가제 일원화	□ 단순기능 외국인력 도입 이 산업연수생제도와 고 용허가제도로 이원화	□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통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7.1.1)	외국인력 고용팀 ☎ (02) 2110-7080
5	동포의 국내취업 및 사용자의 고용 절차 완화	□ 동포 : 방문동거비자(F- 1-4)로 입국→취업교육 및 구직신청→고용지원 센터의 알선→근로계약 후 취업 ※ 사업장 변경 제한 □ 사용자 : 내국인구인노력 →고용지원센터에 구인 신청→고용허가서 신 청·발급→근로계약 후 고용 ※ 근로개시 신고의무 미부 과	□ 동포 :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취업교육 및 구직신청→고용지원센터의 알선 →근로계약 후 취업 ※ 사업장 변경 제한 없음 □ 사용자 : 내국인구인노력→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고용지원센터에 구인신청 →근로계약 후 고용 ※ 근로개시 신고의무 부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력 고용팀 ☎ (02) 2110-7080
6	근로자능력개발 카드제	□ 시범운영 실시 (2006.11.23~2007. 2월)	□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직접 지원으로 훈련참여 기회 확대 - 연간 100만원(5년간 300만원)한도내에서 실 수강료를 지원 - 인터넷원격과정 외국어(영어 등) 수강 실시	고용보험법시행규 칙 제41조의3, 제 41조4 (2007. 3월 부터 본사업 실시)	능력개발 정책팀 ☎ (02) 2110-709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국가기술 자격시험 인터넷원서접수 전면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방접수와 인터넷 접수 병행 - 필기 : 7일간 인터넷 접수 후 2일간 내방접수 - 실기 : 3~4일간 내방접수와 인터넷 접수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으로만 접수 ※ 컴퓨터에 익숙치 않은 수험자에 대하여는 각 지사에 도우미를 배치하여 회원가입 및 사진 스캔 업무 지원 	2007.1.1	자격제도팀 ☎ (02) 503-9758
8	중대재해보고기한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재해개요 등을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때부터 지체 없이 지방노동관서에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07.1.1)	산업안전팀 ☎ (02) 2110-7131
9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시 교통사고, 방화, 근로자 상호간 또는 타인과의 폭행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재해자수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화, 근로자 상호간이나 타인과의 폭행 및 · 도로교통법 · 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의하지 아니한 재해로 인한 재해자는 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07.1.1)	산업안전팀 ☎ (02) 2110-713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0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	□지붕·천장·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시멘트제품,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 제조 등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2006.12.12 시행)	산업보건 환경팀 ☎ (02) 504-2054
11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항목 변경	□폭발성·산화성물질 등으로 화학물질을 15가지로 분류 □화학물질의 표시를 유해·위험성에 따른 조치사항 등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화학물질의 분류 기준을 폭발성·인화성 등 물리적 특성에 따른 분류(16가지), 건강유해성에 따른 분류(10가지) 및 환경유해성에 따라 분류 등 총 27가지로 세분화 □화학물질의 표시 기준을 유해·위험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림문자의 형태를 바꾸는 한편, 유해·위험 정도, 예방조치 문구 및 공급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9 (2007.1.1)	산업보건정책팀 ☎ (02) 504-2054

〈여성가족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결혼이민자가족아 동양육지원	□ 지원없음	□ 결혼이민자가족아동양육지원 도우미를 양성하여 결혼이민자 자녀 언어지도, 건강 및 영양지원, 보육시설 및 학교생활 준비지원, 육아방법 지도 등 지원	2007.1.1	가족정책팀 ☎(02) 2100-6781
2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 기관보호(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 내 양육 아동에 대한 지원 미흡 ※ 영유아(0~5세)의 육아지원시설 이용율은 47%, 특히 0~2세 영아의 시설이용율은 21.1%에 불과(여성가족부, 2005.8) ※ 만6세미만의 취업모 아동 중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비율 : 24%(보사연, 2003)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양성한 아이돌보미를 개별가정에 파견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내 아동양육 지원	해당없음	가족정책팀 ☎(02) 2100-678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 : 장애인 및 외국인보호시설 - 기간별 : 단기(6개월), 장기(2년)시설 □ 피해자 및 동반아동 거주지 외 취·전학 가능, 학교 관계자 비밀보장 □ 피해자가 치료비 신청 시 정부에서 가해자 대신 우선 지급, 필요 시 구상권 행사 □ 각급학교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 강화 □ 가정폭력상담소장 및 보호시설장 자격기준 신설 □ 가정폭력 시설 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 설의 신고제 도입 □ 이주여성을 위한 긴급전화 설치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2006.10.29)	인권보호팀 ☎ (02) 2100-6877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성매매클린지수 평가	□ 신설	<p>□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방지정책에 대하여 정책 이행지수와 성 산업실태 지수 등 두 가지 지수로 구성되는 성매매 클린지수를 새롭게 도입하여 평가</p> <p>- 정책이행지수는 '예방', '보호', '집행', '계획' 4가지 영역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며</p> <p>- 성 산업실태 지수는 성 산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산출되는 지수임</p>	해당사항 없음 (연중)	권익기획팀 ☎ (02) 2100-6862
5	보육시설장 국가 자격증 제도 도입	□ 신설	<p>□ 2007년부터 보육시설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함</p> <p>※ 보육시설장에 대한 자격증은 2007년부터 발급</p> <p>- 발급기관 :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 문의 : Tel 02)3157-3462~8 (http://www.ctcm.or.kr)</p>	영유아보육법 제22조 (2006.12.30)	보육정책팀 ☎ (02) 2100-6817

〈건설교통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부동산 거래의 신고대상 확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계약 체결시에 한정	□입주권, 분양권 등 부동산 권리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추가	공인중개사의업 무및부동산거래 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 (2006.12.1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	부동산 정보분석팀단 ☎ (02) 2110-8870
2	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무기한 연장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로조정	위와 같음	부동산 정보분석팀단 ☎ (02) 2110-8870
3	공무원에게 실거래 가조사권 부여	□신설	□실거래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에게 계약서 등 관련자료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공인중개사의업 무및부동산거래 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의2	부동산 정보분석팀단 ☎ (02) 2110-8870
4	지연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완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	동법 제51조	부동산 정보분석팀단 ☎ (02) 2110-8870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경관법 시행	<p>□기관별로 다양한 경관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경관관리 제도가 부재</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경관지구), 자연환경보전법(자연경관심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산어촌 경관보전, 경관보전협약) 등</p> <p>-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차원의 경관관리 조례(48개 지자체)와 경관계획을 제정·운영</p> <p>※법적·제도적 근거 미비</p>	<p>□경관계획 수립, 경관사업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 등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활동에 관한 제도 도입</p> <p>- 경지자체별로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 개선사업 시행이 활성화되고</p> <p>-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합의하여 해당지역의 건축물 디자인, 색채 등을 정하여 특색있는 경관을 만드는 경관 협정 제도 도입</p>	<p>경관법(안) (정기국회 제출, 공포시 6개월 이후부터 시행)</p> <p>※2007년 하반기 시행 전망</p>	<p>국토정책팀 ☎ (02) 2110-8478</p>
6	건축사 의무 설계 대상 완화	<p>□도시지역에서 행해지는 모든 건축물의 신축·증축·재축·개축·대수선은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함</p>	<p>□도시지역의 85㎡ 미만의 소규모 증축·개축·재축 및 3층·200㎡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p>	<p>건축법 제19조 (12월중 공포 예정, 2007년 6월중 시행)</p>	<p>건축기획팀 ☎ (02) 2110-8542</p>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물류관리사 시험과목추가	<p>□ 물류관리사 시험과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관리론 - 화물운송론 - 보관하역론 - 물류관련법규 <p>※ 종전 제도는 실무감각 결여와 전자상 거래 및 국제물류가 증가하는 신 물류환경에 부응 하기에는 미흡</p>	<p>□ 종전 시험과목에서 「국제물류론」과 물류관련법규 중 「철도사업법」이 추가됨</p> <p>※ 개정내용은 전자상거래 및 국제물류 증가에 따른 세계화 등 신 물류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화 및 IT 능력을 검증할 위한 과목을 추가하여 물류전문가로서 자질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것임</p>	<p>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 18 (2005.7.27 개정) (2007년부터 시행)</p>	<p>물류정책팀 ☎ (02) 2110-8220</p>
8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주기적 신고	<p>□ 운송(주선, 가맹)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마다 허가기준에 관한사항을 신고</p> <p>※ 화물차량 과잉공급 문제 해소 및 부실업체 등에 대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차고지등 허가기준 적합 여부를 3년마다 실시하여 기준 미달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p>	<p>□ 2007.4.21~2007.5.20까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는 허가사항을 신고하여야 함</p> <p>※ 부실업체의 구조조정 촉진으로 사업용화물차 과잉공급문제 해소 및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p>	<p>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04.4.20 부터 시행</p>	<p>물류산업팀 ☎ (02) 2110-8233</p>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9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 교체	<p>□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는 2006.11월 변경된 디자인의 등록 번호판으로 임의교체 하거나</p> <p>□ 기타 자동차관리법상 강제교체 사유발생시에만 의무교체</p> <p>※ 화물운송시장 수급 불균형(화물차 과잉공급) 해소의 일환으로 불법증차차량 및 무자격 차량(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 차량)을 운송시장에서 퇴출</p>	<p>□ 2007.1.1부터 1년간 모든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변경된 번호판으로 의무 교체</p> <p>※ 적절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번호판 교체를 가능토록 하여 화물운송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불법행위 의도 사전 차단</p>	<p>자동차관리법</p> <p>- 등록 번호판 등의기준에 관한 고시 (건교부고시 2006-431, 2006.10.17)</p>	<p>물류산업팀 ☎ (02) 2110-8235</p>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0	택시·경영서비스평가제 실시	□신 설	□택시·경영서비스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에는 인증서 교부 및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incentive) 부여 - 우수업체를 육성하고, 부실업체는 자진퇴출 유도효과 기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정기국회 본회의 의결 (2006.11.30)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 (2007.6월말)	자동차관리팀 ☎ (02) 2110-8708
11	버스·택시유가보조금카드제 시행	□버스·택시사업자가 유류구매 영수증을 첨부하여 수작업으로 해당시·군에 보조금 신청	□운송사업자는 유류구매시 신용카드로 구매한 후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결제 □해당 시·군은 운송사업자의 유류사용량에 따른 보조금 해당금액을 카드사에 입금 처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유가보조금지급 지침(건교부) - 2007.7월 시행 예정	대중교통팀 ☎ (02) 2110-8672
12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안내 강화	□보험사업자등이 의무보험계약종료일로부터 30일전에 보험가입자에게 당해 계약의 종료사실을 통지	□보험사업자등이 보험계약종료일로부터 30일전과 10일전에 각각 보험가입자에게 당해 계약의 종료사실을 통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정기국회 본회의 의결 (2006.12.1),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 (2007.6월말)	교통안전팀 ☎ (02) 2110-868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3	자동차 폐차, 폐차업 정의 및 용어 재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차”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를 해체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폐차업”이라 함은 자동차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폐차업체에서 수행하는 “재사용 가능 부품의 회수”를 “폐차” 정의에 추가 □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용어 변경하고, 자동차의 “인수”를 정의에 추가 	자동차관리법 - 규제심사 준비 중, 2007년 국회 통과시 시행 예정	자동차관리팀 ☎ (02) 2110-8708
14	자동차번호판 교부 전국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차량번호판 디자인을 선보였으나, 교체를 위해서는 차량등록지와 같은 시도의 차량등록관서를 방문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호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자는 전국의 어느 등록관서를 방문해도 교체가 가능하도록 전산프로그램 개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2007.1.1.부터 시행	자동차관리팀 ☎ (02) 2110-8704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5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전검토 도입	□ 신설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사전검토 도입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특별법 (정기국회 상정 중, 공포시 2007년 상반기 부터 시행)	광역교통정책팀 ☎ (02) 2110-8712
16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 추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은 부담금을 부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종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추가 -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가능토록 단서 규정 추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 (정기국회 상정중, 공포시 2007년 상반기부터 시행)	광역교통정책팀 ☎ (02) 2110-8712
17	학·경력기술자 제도 개선	□ 건설 기술자는 자격, 학력, 경력에 따라 초급·중급·고급·특급 기술자의 등급을 부여	□ 학·경력기술자는 초급으로만 인정 -기 배출된 학·경력자의 등급은 계속 인정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 불인정 □ 특급은 기술자격자중 기술사만 인정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 승급 가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공포: 2006.12 - 시행시기: 2007.3.1	기술정책팀 ☎ (02) 2110-877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7	학·경력기술자 제도 개선	□ 건설기술자는 자격, 학력, 경력에 따라 초급·중급·고급·특급 기술자의 등급을 부여	□ 학·경력기술자는 초급으로만 인정 - 기 배출된 학·경력자의 등급은 계속 인정 -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 불인정 □ 특급은 기술자격자중 기술사만 인정 -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 승급 가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공포: 2006.12 - 시행시기: 2007.3.1	기술정책팀 ☎ (02) 2110-8772
18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 부실자에 대한 제재	□ 신설	□ 대형 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수요예측 부적정으로 인한 국가예산낭비 방지 및 사업적 타당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시 수요예측을 잘못된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 -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부과 - 수요예측 업체에 부실벌점 부과	건설기술관리법 - 정기국회 본회의 의결(2007년 상반기), 공포 시행예정 (2007년 상반기)	건설환경팀 ☎ (02) 2110-8780
19	레미콘·아스콘 공장 사전점검 실시	□ 신설	□ 100억원이상인 전면책임감리공사, 300세대이상인 주택건설공사, 연면적 5천㎡이상인 집회시설 및 16층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레미콘·아스콘에 대하여 자재 공급전에 품질관리가 적합한 공장인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 -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사전 및 정기점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불량자재 사용방지로 부실공사가 근절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 1고시후 시행 (2007.1.1)	건설관리팀 ☎ (02) 2110-8799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0	주택거래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시 제출목록 1. 계약당사자 2. 계약일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5. 거래가액 6.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7.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중개업자 8.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거래신고시 거래가액이 6억원이 초과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여부 추가 제출 □ 신고시 제출목록> 1. 계약당사자 2. 계약일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5. 거래가액 5의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5의3,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 6.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7.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중개업자 8.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주택법시행령제 107조의3 - 2006.11.7부터 시행중	주택정책팀 ☎ (02) 2110-857
21	택지지구내 공공택지 선수공급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지구내 전체 면적의 50%이상 소유권을 확보할 경우 택지 선수공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조기 주택공급을 위해 택지지구내 택지 선수공급 요건을 완화 - 내용 : 택지지구내 전체 면적의 25%이상 소유권 확보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2006.12.15)	공공주택팀 ☎ (02) 2110-8589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2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	□ 신설	□ 민법상 미성년자인 3자녀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게 건설량의 3%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주택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06.8.18)	공공주택팀 ☎ (02) 2110-8587
23	분양가상한제 자문 위원회 구성	□ 신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택지비, 가산비용, 채권매입예정상한액 등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도록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06.8.18)	공공주택팀 ☎ (02) 2110-8587
24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 신설	□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모부자가정,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대상으로 추가하고 물량도 20%로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6.8.18)	공공주택팀 ☎ (02) 2110-8587
25	주택건설 예정지역에 알박기 어려워져 주택가격 안정 기대 - 최소한 지구단위 계획결정고시일 10년전에 땅사야 매도청구대상 제외	□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건설대지면적의 9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경우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일 3년 전에 대지등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주인을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함	□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건설대지면적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전에 대지등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주인을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함 - 현행 규정은 고시일 3년 전부터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개발계획을 미리 알고 3년 전에 땅을 선취하여 사업시행자에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일종인 알박기가 가능하였음.	주택법 - 국회 법사위의결 (2006.12.21), 향후 본회를 거쳐 공포후 3개월후 시행예정 (2007.4월중)	주거환경팀 ☎ (02) 2110-860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6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 시설을 민간업체에 임대 하여 운영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하여 저출산 해소 및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	주택법 시행령 - 2007. 2월 시행예정	주거환경팀 ☎ (02) 2110-8596
27	건설하는 주택과 다르게 견본주택을 설치하는 건설사 처벌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하는 마감자재를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설치하는 사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위 과장된 견본주택으로 인한 국민의 분양 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주택법 - 정기국회 법사 위 의결 (2006.12.21) 공포후 3개월후 시행예정 (2007.4월중)	주거환경팀 ☎ (02) 2110-8598
28	측량기능사 경력 관리 실시	□측량기술자에 대하여만 경력관리실시	□측량기능사에 대하여도 경력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한 경력을 관리하도록 함	측량 (2007년 하반기부터 실시 될 예정)	국토지리정보원 ☎ (031) 2110-2776
29	측량기기성능검사 대행자 등록 등 관리사무 지방이양	□건설교통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장에 위임)이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관리업무를 수행	□시·도지사가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변경 등록, 등록취소 및 과태료부과 등 관리사무를 수행	측량법 (2007년 하반기부터 실시 될 예정)	국토지리정보원 ☎ (031) 2110-2776

〈해양수산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항만근로자의 인력 공급체제 개편	□ 항운노동조합이 항만근로자를 독점적으로 공급	□ 항만운송사업체가 항만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하역작업에 투입 □ 부산항은 2007.1월부터 상용화 체제로 운영, 인천·평택항은 노사정간 협상을 통해 개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2007. 1)	항만운영과 ☎(02) 3674-6653
2	선주상호보험조합 준조합원제도 도입	□ 신설	□ 선주 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 국내외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없었던 자 들도 선주상호보험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준 조합원이 될 수 있음	선주상호보험조합법 (2007.1.1)	해운정책과 ☎(02) 3674-6612
3	선주상호보험 조합 조합원, 준조합원의 1인당 출자한도 확대	□ 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 이내	□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가입을 위해 1인당 1좌 (10만원) 이상을 가입하여야 하며, 출자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 까지 확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2007.1.1)	해운정책과 ☎(02) 3674-6612
4	외국의 해상 여객 운송사업자에 대한 승인제도	□ 신설	□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사업개시 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게 함	해운법 (2007.3.4)	해운정책과 ☎(02) 3674-6613
5	국제선박등록 절차 개선	□ 국제선박 등록은 해양수산부 본부에서만 가능	□ 국제선박등록업무(신청, 변경 등)가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가능	국제선박등록법 (2007.4.5)	해운정책과 ☎(02) 3674-6789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무인도서의 관리	□ 신설	□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가지 유형별(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 가능)로 구분, 관리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 하반기)	해양정책과 ☎(02) 3674-6512
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	□ 신설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련 상품 판매 가능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 상반기)	해양개발과 ☎(02) 3674-6531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 자연환경보전법 적용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 - 보호대상해양생물, 희유성해양동물의 보호 - 해양보호구역,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4.3)	해양환경 발전팀 ☎(02) 3674-6782
9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규제	□ 신설	□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환경위해성심사, 수입승인, 국경감시 등을 받아야 함 ※6개부처 각 소관분야 심사, 승인담당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2007 상반기)	해양환경 발전팀 ☎(02) 3674-6783
10	정수오니 해양 투기 금지 및 해양투기량 지속 감축	□ 정수오니 해양 투기허용 (2006. 12. 31까지) □ 2006년도 해양투기 총허용량 900만톤	□ 정수오니 해양투기 금지(2007.1.1부터) □ 2007년도 해양투기 총허용량 800만톤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2007 상반기)	해양보전과 ☎(02) 3674-656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1	오염해역준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방식 → 국고보조사업 (국비70%, 지방 30%) □ 최종 사업수행자 → 자치단체(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방식 → 국가 직접수행 (국비 100%) □ 최종 사업수행자 → 지방청 	해양오염방지법	해양보전과 ☎(02) 3674-6564
12	연안오염총량 관리제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개 연안해역을 3등급 으로 구분하여 오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해역, 보전해역 등 해역이용 현황을 고려한 등급설정 □ 연안해역 세분화(항만, 환경관리해역, 하구역 등) 	해양오염방지법 (고시/2007 하반기)	해양환경과 ☎(02) 3674-6542
13	신항만건설 사업실 시계획 승인 기준의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 구체적 승인기준을 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신항만건설 촉진법 (2007.1.5)	항만개발과 ☎(02) 3674-6732
14	국가산업단지 구역 내의 신항만 건설 사업 시행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법에 의한 승인과는 별도로 관계기관의 장애 제 승인을 받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법에 의해 실시 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의제 	신항만건설 촉진법 (2007.1.5)	항만개발과 ☎(02) 3674-6732
15	국제물류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한 경비 지원근거, 투자유 치활동 근거 마련 ※ 기존 화물유통촉진법 전면개정 (건교부와 공 동 입법) 	물류정책기본법 (2007. 7)	동북아기획단 ☎(02) 3674-6268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6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시설 등의 준공전 사용절차 완화	□ 준공전 토지 및 시설을 사용 하기 위해서는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	□ 준공전 토지 및 시설의 사용절차를 신고제로 일원화	신항만건설 촉진법 (2007.1.5)	항만개발과 ☎(02) 3674-6732
17	항만지하시설물 지리정보 활용 가능	□ 신설	□ 송유관 등 6종의 항만지하시설물의 전산화로 시설물의 위치, 규모 등을 쉽게 활용 가능 ※부산, 인천, 여수, 광양, 진해, 울산, 목포, 속초, 군산, 통영, 장승포, 삼천포, 평택항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07 상반기)	기술안전과 ☎(02) 3674-6754
18	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 확대 시행	□ '원양산' (필요시해역명) 병기	□ '원양산(해역명 또는 수역관할 국가명)' 함께 표시의무	수산물품질 관리법시행령 (2007. 7.1)	유통정책과 ☎(02) 3674-6831
19	수산물품질인증 품목확대	□ 수산물, 수산특산물 등 112개 품목	□ 냉동품, 횡감용 수산물 등 추가하여 135개 품목으로 확대	수산물품질 관리법 (2007. 1)	품질위생팀 ☎(02) 3674-6921
20	소형어선원 재해보험요율 인하	□ 10톤미만 강선중 선령 20년미만 (6.05%), 20년이상(7.60%)	□ 5톤미만 강선중 선령20년미만(5.45), 20년이상 (6.84) □ 5~10톤미만 강선중 선령20년미만(5.75), 20년 이상(7.22)	어선원및어선 재해보험보상법 시행규칙 (2007. 1)	수산경영과 ☎(02) 3674-686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1	어장관리의무 강화	□ 면허받은 어장에 대하여 매3년 마다 어장청소	□ 어구·양식시설물의 유실방지 및 지정된 장소 이외에의방치·투기 금지 □ 어구·양식시설물 중 부표 또는 부자에 대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규격품 사용	어장관리법 (2007 하반기)	양식개발과 ☎(02) 3674-6964
22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사무	□ 규제일몰제로 효력 상실	□ 등록요건을 기술인력, 선박, 자본금 및 시설·장비를 갖춘 자로 함 □ 변경등록 및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 의무화	어장관리법 (2007 하반기)	양식개발과 ☎(02) 3674-6964
23	어장정화·정비 실시부담금	□ 어장정화·정비로 이익을 받은자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	□ 부담금 폐지	어장관리법 (2007 상반기)	양식개발과 ☎(02) 3674-6964
24	수산자원조성금 부담의 면제대상범위 확대	□ 수산자원조성금 부담 면제대상은 지구별수협 또는 어촌계	□ 업종별수협도 면제 대상에 포함	기르는어업 육성법 (2007 상반기)	양식개발과 ☎(02) 3674-6961
25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등에 관한 사무 이양	□ 국가 또는 시·도 사무	□ 시·군·구의 사무로 이양	기르는어업 육성법 (2007 상반기)	양식개발과 ☎(02) 3674-696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6	케미칼 운송선박의 선박 형식 강화 및 오염분류체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6종 - 단일선체구조 선박으로 운송 □ 오염분류체계 - 5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6종 - 2중선체 구조 선박으로 운송 □ 오염분류체계 - 3분류 	유해액체물질 (케미칼) 운송선박 시설 기준 (2007. 1)	안전정책과 ☎(02) 3674-6312
27	해상보안 확보를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체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로 운용 ※ 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 관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로 제정 운용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2007 하반기)	안전정책과 ☎(02) 3674-6315
28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심사의 종류별 구분 없이 인증 심사원의 자격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약의 기준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완화 및 인증심사 종류별로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을 세분화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2007 상반기)	안전정책과 ☎(02) 3674-6315
29	2톤미만 선박·수상호텔 등도 선박검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톤미만 선박 (적용제외) □ 수상호텔 등 부유식해상 구조물(규정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톤미만 선박과 13인 이상이 상시 사용하는 □ 수상호텔 등 부유식해상구조물 선박검사 시행 	선박안전법 (2007.11 예정)	해사기술과 ☎(02) 3674-6321
30	예인선 항해검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선 등을 예인하는 예인선에 대하여 예방능력 확인을 위한 예인선 항해 검사 시행 	선박안전법 (2007.11 예정)	해사기술과 ☎(02) 3674-6321
31	선박의 건조검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이 24미터이상의 선박 및 강화플라스틱제 선박 등 특수재질로 건조되는 선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 시행 ※ 건조검사를 할 수 없는 수입 선박 등도 건조 검사에 준한 검사를 받을 수 있음 	선박안전법 (2007. 11 예정)	해사기술과 ☎(02) 3674-632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2	만재흡수선 표시대상 선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항해 취항 선박 및 길이 24미터 이상 선박 □길이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의 선박중 여객선, 위험물 산적운송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항해 취항선박 □길이 12미터 이상선박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중 여객선, 위험물 산적운송선 	선박안전법 (2007.11 예정)	해사기술과 ☎(02) 3674-6321
33	선박결함 신고 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 사항을 발견한 때는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을 확인케 하여 출항정지를 명령할 수 있음 	선박안전법 (2007.11 예정)	해사기술과 ☎(02) 3674-6321
34	담보권설정방치 선박의 직권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보권이 설정된 방치 선박의 직권제거시 담보권자의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보권자가 폐선 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리청에서 직권으로 제거 가능 	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위법령 (2007 상반기)	해양방재과 ☎(02) 3674-6333
35	선박위치발신장치(VMS)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관이 정하는 선박은 선박위치 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하여야 함 	선박위치발신 장치의설치등에 관한규정(고시) (2007 하반기)	해양방재과 ☎(02) 3674-6351
36	항로표지시설 보호 강화 및 훼손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더럽히거나 손상 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낙서, 물건투척, 쓰레기 폐기물, 낚시 등 행위 금지 	항로표지법 (2007년 하반기)	항로표지과 ☎(02) 3674-6341

〈 기 획 예 산 처 〉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국민감시제 도입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국민 누구나 불법적인 재정지출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에게 시정요구 가능 □ 시정요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당부처 장관은 시정요구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의무화 □ 해당부처 장관은 처리결과에 따라 예산이 절감된 경우 시정요구자에게 성과금 지급 가능 	국가재정법 (2007.1.1 시행)	재원기획과 ☎ (02) 3480-7734

〈국 가 보 훈 처〉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보훈보상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 보상금 □ 보상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연금, 부가연금 등 21종 □ 무의탁 및 독자사망 수당 지급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급여금 □ 보상종목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금 등 15종 - 24세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7.1.1)	보상급여과 ☎(02) 2020-5172
2	교육보호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이후부터 수업료 등 국고보조 또는 면제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신청 이후 등록결정까지 기간 중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국비보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7.1.1)	보상급여과 ☎(02) 2020-5177
3	국가유공자등의 가족 채용시험 가점제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비율 : 10% □ 과락여부 관계없이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 과락자 가점 배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7.7.1)	복지지원과 ☎(02) 2020-5291
4	취업보호대상자 취업바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9급 공무원 및 어학시험 응시자 학원수강비 지원 	정책결정 (2007.7.1)	복지지원과 ☎(02) 2020-529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보훈관서 직접 수행	□금융기관 위탁 ※ 대부인원 확대, 거주지 인근 금융기관에서 대부 가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7.7.1)	복지지원과 ☎(02) 2020-5295
6	제대군인지원센터 권역별 신설	□서울센터	□부산, 대전센터 신설	정책결정 (2007.4.1)	제대군인취업과 ☎(02) 2020-5324

〈 중 앙 인 사 위 원 회 〉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5급이하공무원 직군·직렬개편	□ 10개 직군 57개 직렬 91개 직류	□ 2개 직군 31개 직렬 94개 직류 ※[붙임 1] 참조	공무원임용령 (2007.1.1)	정책총괄과 ☎(02) 751-1173								
2	시간제근무제도 전 공무원에 확대	□ 계약직공무원과 육아휴 직 대상자에 한해서만 시간제 근무 가능	□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35 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 근무를 허용 - 기관장은 당해기관의 인력수급사정, 시간제 근무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 -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년 범위내 - 보수, 휴가, 경력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	공무원임용령 등 (2007.7.1)	정책총괄과 ☎(02) 751-1176								
3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	<p>〈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근무</th> <th style="text-align: center;">상한연령</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비상 계획</td> <td style="text-align: center;">4급상당이상(60세) 5급상당이하(55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학 직장 예비군</td> <td style="text-align: center;">5급상당이상(58세) 6급상당이하(55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산 통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5급상당이상(60세) 6급상당이하(55세)</td> </tr> </tbody> </table> <p>*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 6조제1항 및 별표</p>	근무	상한연령	비상 계획	4급상당이상(60세) 5급상당이하(55세)	대학 직장 예비군	5급상당이상(58세) 6급상당이하(55세)	전산 통계	5급상당이상(60세) 6급상당이하(55세)	□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근무상한연령을 5급 상당 이상 별정직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은 60세로,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은 57세로 조정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2006.12.21)	정책총괄과 ☎(02) 751-1176
근무	상한연령												
비상 계획	4급상당이상(60세) 5급상당이하(55세)												
대학 직장 예비군	5급상당이상(58세) 6급상당이하(55세)												
전산 통계	5급상당이상(60세) 6급상당이하(55세)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위 직무분야 외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임용권자가 당해 직무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			
4	지방인재채용 목표제 시행	□ 신설	<p>□ 행정·외무고시 합격자 중에서 지방학교 출신이 20%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비율만큼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학교 출신자를 추가합격시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목표비율 : 시험실시 단계별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 - 추가합격상한 :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1차 시험은 제외)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2007.1.1)	균형인사과 ☎(02) 751-1201

〈 금융 감독 위원 회 〉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 체결시 가입설계서, 보험안내서, 상품요약서, 청약서부분 및 약관 등 제공 □ 신설 □ 신설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모집 단계별로 제공서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유시 : 가입설계서 - 청약시 : 상품설명서, 청약서부분 및 약관 등 제공 ※ 보험안내서는 제공대상에서 제외, 상품요약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시 □ 보험계약자의 상품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설명서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및 불완전판매의 우려가 높은 사항을 집중 안내 - 알기쉬운 용어사용, 최소 10p 이상의 글자 크기 사용 및 적절한 배색 활용 □ 상품설명내용의 계약자 확인제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가 상품설명서 하단에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음을 작성한 후 서명 □ 보험모집자 실명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설명서, 청약서, 증권에 보험모집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보험업법 제9조, 시행령 제42조, 감독규정 제7-45조, 시행세칙 제5-11조 (2007.4.1 시행)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 (02) 3786-8249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	신협 출자금, 예금자보호대상 제외	□신협 예·적금, 공제금, 출자금은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에 포함	□신협 출자금이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 ※ 현재 새마을금고 및 단위농·수·산림조합의 경우도 출자금은 예금보호대상에 미포함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 (2007.1.1. 시행)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 (02) 3786-8151
3	신협중앙회 공제사업의 경영성과지분 처리 근거 마련	□신협중앙회 공제사업의 경영성과지분 처리근거 없었음	□신협중앙회 공제사업의 경영성과지분 처리 근거를 마련 - 신협중앙회(사업자)는 공제사업 발생이익중 일부를 경영성과지분으로 취득 가능	상호금융업감독 규정 제21조의2 (2007.1.1 시행)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 (02) 3786-8151

〈 관 세 청 〉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검사대상화물 검사 후 보세운송 허용 확대	□ 신설	□ 검사 후 물품의 보세운송 허용 확대 - 검사결과 적하목록 정정·보수작업 대상 등 조사 의뢰 대상이 아닌 경우로써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관리대상 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 제5호 (2006.12.15)	수출입물류과 ☎(042) 481-7904
2	고액·상습채납자 명단 공개	□ 관세 고액채납자 명단 공개제도 없음	□ 채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관세 등 (내국세, 가산금, 결손처분한 것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이 10억 원 이상인 채납자 명단 공개	「관세법」제1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1조의2 (2007. 1. 1)	심사정책과 ☎(042) 481-7865
3	고액채납자 은닉재산 신고 민간인 포상금 지급	□ 고액채납자 은닉재산 신고 민간인 포상금 지급제도 없음	□ 채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채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	관세법 개정안 국회심의 중(2007년 중 시행 예정)	심사정책과 ☎(042) 481-7865

〈 조 달 청 〉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신기술제품 적정 가격 산정체계 구축	□ 신설	<p>□ 목적 : 신기술제품의 제값받기를 위해 합리적인 가격형성을 지원하고 공공시장에 신기술제품에 대한 가격 가이드라인으로 활용</p> <p>□ 절차 : [신청]→[적합성심사]→[가격산정]→[가격심의]→[공시]</p> <p>□ 효과 : 공공시장에 신기술제품에 대한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공</p> <p>※ 공공기관은 조달청 공시가격을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예정가격결정시 활용(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하는 가격)</p>	국가계약법령 (2007.1.1)	구매사업본부 구매제도팀 ☎(042) 481-7283
2	불법 전자입찰 신고포상제도 운영	□ 신설	<p>□ 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p> <p>□ 신고대상 : 공인인증서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 불법으로 전자입찰을 주도 또는 참여한 자</p> <p>□ 지급대상 : 불법 전자입찰을 신고하여 사실임이 확인된 자</p> <p>□ 포상금 지급 규모 : 최고 1,000만원</p>	정부표창규정 (대통령령) 및 조달청인사 관리 규정(훈령) (2007.1.1)	전자조달본부 정보관리팀 ☎(042) 481-750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자체발주 공사규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는 200억원 미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공사를 자체적으로 계약집행 - 200억원이상 PQ공사는 조달청에 계약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는 500억원 미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공사까지 자체적으로 계약집행 - 500억원 이상 PQ공사는 조달청에 계약요청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2007.1.1)	시설사업본부 시설총괄팀 ☎(042) 481-7338
4	경영상태의 신용평가등급 적용 대상공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경영상태평가만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공사와 100억원이상 일반공사에 대하여도 경영상태평가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007.7.1)	시설사업본부 기술심사팀 ☎(042) 481-7353
5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공사로써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500억원 이상의 교량, 터널, 항만공사에 대하여 공종별로 유자격자 명부 등록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1등급의 토목공사, 건축공사까지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제 확대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영기준 (2007.7.31)	시설사업본부 기술심사팀 ☎(042) 481-7353
6	국가기관 조달물자 대금 직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물자대금 지불 - 수요기관 직접지불(원칙)과 조달청 우선지불(예외적)을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 국가기관은 조달물자 대금 직접 지불 	2007.1.1	운영지원팀 ☎(042) 481-7109

〈 병 무 청 〉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징병검사대상자에 전문 심리검사 실시	□ 신설	□ 징병검사 대상자 중 인성, 검사이상자에게 심리 검사 실시	병역법 제11조 및 제12조 (2007.1.1 시행)	징병검사팀 ☎ (042) 481-2916
2	병역의무자 여비지급제도 개선	□ 징병검사대상자 여비지급 -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자 : 개인 금 용 계좌 파악 여비지급 - 적령자 등 기타 : 우편 대체증서 발급	□ 징병검사대상자 여비지급 - “나라사랑카드” 발급하여 여비지급 - 발급을 희망하지 아니한 사람은 개인 금융계 좌를 파악하여 지급	병역의무자여비 지급예규 (2007.1.1 시행)	선병자원팀 ☎ (042) 481-2916
3	일정기간 경과 후 재징병검사 실시	□ 신설	□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해로부터 4년이 경과되어도 징 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 실시	병역법 제14조의2 시행일 : 개정법령 시행후 최초로 현 역병입영대 상자 또 는 보충역으로 병역 처분을 받은 사람부 터 적용	징병검사팀 ☎ (042) 481-2918
4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검사 실시	□ 신설	□ 징병검사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 하기 곤란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음 □ 위탁검사에 따른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	병역법 제11조 ④ 후단 신설 병역법 제79조 ③ 신설(2007년 중 시행예정, 계 류중)	징병검사팀 ☎ (042) 481-2968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민간 의사 채용 징병 신체검사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징병검사전문 의사) □ 징병검사전문 의사가 신체등위 판정 	병역법 제2조 및 제12조 (2007.1.1 시행)	징병검사팀 ☎(042) 481-2917
6	진료기록 등 자료의 제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병무청장은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학교의 장 등에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치료관련 기록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제출 요구 □ 누구든지 취득한 정보·자료를 공개·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목적 외에 부당하게 사용 금지 □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역법 제11조의2, 제87조 (2007.1.1 시행)	징병검사팀 ☎(042) 481-2968
7	AIDS 검사 시범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병신체검사 과정에서 AIDS 감염자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행한 감염사실 확인서 제출시 6급 병역면제 판정 □ 감염사실 밝히지 않을 경우 군 입영 가능으로 동료장병 감염우려 	□ 징병신체검사이시 수검자 전원 AIDS 검사 실시	병역법 제3조, 제11조 징병검사예규 제33조 시행일 : 2007년 징병검사부터(서울청 제1검사반)	징병검사팀 ☎(042) 481-2968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8	고아·귀화자 제2국민역 편입제도 개선 (고아·귀화자도 원하면 군에 갈 수 있음)	□ 고아, 귀화자는 군 복무 부적응 우려, 제2국민역 편입	□ 고아, 귀화자가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 지원입영 가능	병역법시행령 제 136조 제4항 (2007년 중 시행 예정, 계류중)	선병자원팀 ☎(042) 481-2916
9	현역병입영자 병적기록 전산인계	□ 현역병 인도인접시 입영자의 병적기록표를 출력·인계	□ 병적기록표 내용을 육군 전산망 연계시스템으로 전산인계	병역법 시행령 제 22조, 제 24조, 제 25조 (2007.1.1 시행)	현역입영팀 ☎(042) 481-2736
10	24세 이하자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 18~35세의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제를 폐지 함	병역법 제70조 (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2007.1.1 시행)	국외자원팀 ☎(042) 481-2720
11	국외여행 귀국신고 제도 폐지	□ 귀국일로부터 30일 내에 공항 또는 항만에 파견된 병무청 출·귀국신고 담당공무원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귀국신고	□ 허가기간 만료일 경과 후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에 의해 직권으로 귀국사실 정리	병역법 제70조제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 (삭제) 병역법 제84조제 3항제4호 (삭제) (2007년 중 시행 예정, 계류중)	국외자원팀 ☎(042) 481-2720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2	공익근무요원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근무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전환복무 허용 (신설) □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 제도 도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요원 복무중 가족 생계지원 등 필요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산업기능 요원 편입, 잔여기간 복무 □ 일정기간(통산 6개월 이내) □ 복무 중단 □ 사유해소 후 중단기간을 포함하여 남은 기간 동안 재복무 	병역법 (국회상정중)	공익관리팀 ☎(042) 481-2767
13	병역사항 공개업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급이상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시 문서에 의거 신고서 작성 후 소속기관 경우 병무청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의무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면, 병무청에서 병역사항 확인 후 공개 □ 인터넷 사전열람을 통한 이의신청 및 의견 반영으로 착오공개 방지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2006.9.4 시행)	국회사무처,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등 1,051개 기관(단체)
14	전문연구요원 승인 전직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연구요원이 지정업체 편입 후 한 업체에서 의무복무기간 2년이 경과해야만 지정업체장을 통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승인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연구요원이 지정업체 편입 후 전직승인 신청 제한 기간을 의무복무기간 2년에서 1년 6월로 완화 	시행령 제85조 (2006.9.25 시행)	산업자원부 병역지정업체 연구기관 및 각급대학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5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 원 출원시기 완화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편 입원 출원은 박사학위과 정에 입학하는 달의 말일 까지 신청 가능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편 입원 출원 신청시기를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로 완화	시행령 제78조 (2006.9.25 시행)	산업자원부 병역지정업체 연구기관 및 각급대학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 신설	□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지원근거 마련 - 협업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지원, 정보제공, 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촉진에 관한 법률(법사위 계류 중, 공포시 3개월 부터 시행)	창업벤처본부 구조전환팀 ☎ (042) 418-4552
3	중소기업정책자금 구조 개편	□ 공급자 위주로 운영	□ 기업의 Life Cycle에 따라 정책자금 구조를 개편하여 수요자 활용도 제고 - 벤처창업 → 개발기술사업화 → 경영 혁신 → 경영안정 → 구조조정 + 소상공인자금	2007년도 중기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계획 (2007. 1.1 시행)	성장지원본부 금융지원팀 ☎ (042) 481-4382
4	중소기업정책자금 업체당 지원한도 축소	□ 수도권 기업 : 45억원 □ 지방소재기업 : 50억원	□ 수도권 기업 : 40억원 □ 지방소재기업 : 45억원	2007년도 중기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계획 (2007. 1.1 시행)	성장지원본부 금융지원팀 ☎ (042) 481-4382
5	재해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 신설	□ 재해 발생후 원금상환기간이 6개월내인업체에 대하여 기존 잔여기간 으로부터 1년 연장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2007. 1.1 시행)	성장지원본부 금융지원팀 ☎ (042) 481-438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	□ 신설	□ 각 금융기관은 출연기준 대출금의 연율 0.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말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재단연합회에 출연 - 담보력이 취약한 지역소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 (2007년중 약 528억원)	부담금관리 기본법 (2006.10 시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2006.6 시행)	성장지원본부 금융지원팀 ☎ (042) 481-4378
7	수출초기 중소기업 지원 확대	□ 해외전시회 참가 국고지원 비율 50% □ 수출기업화사업 참여업체 지원한도 1,000만원 □ 수출기업화 참여업체에 대한 일반보증 지원(한도 : 전년도 매출액의 1/3)	□ 해외전시회 참가 국고지원 비율 70% □ 수출기업화사업 참여업체 지원한도 1,500만원 □ 참여업체에 대한 수출특별보증 지원 (한도 : 전년도 매출액의 1/2)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2007. 1 시행)	성장지원본부 해외시장팀 ☎ (042) 481-4467
8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구매방법 추가	□ 신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추가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인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2007. 1 시행)	공공구매 지원단 ☎ (042) 481-457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9	중소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효력 연장	□매년 지정·공고	□매년 지정·공고하되, 지정·공고된 제품의 지정 효력 3년간 유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2007. 1 시행)	공공구매 지원단 ☎(042) 481-4575
10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조합 참여 허용	□신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의 요건 신설 - 품목별 일정 요건을 갖춘 조합이 2개 이상 존재할 경우 참여 가능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2007. 1 시행)	공공구매 지원단 ☎(042) 481-4575
11	직접생산 확인제도 시행	□신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 의무화 - 1천만원 이상의 제품에 적용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7, 동법시행령 제5조의6 (2007. 1 시행)	공공구매 지원단 ☎(042) 481-4575
12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 지정 확대	□중기간제품 : 141개 □공사용자재 : 87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230개 내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 : 130개내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12월 중 공고예정 (2007.1 시행)	공공구매 지원단 ☎(042) 481-4466

〈 농 촌 진 흥 청 〉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	관리제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회 설치 운영 - 신청 자재의 검토 및 심의 -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 자재 여부를 검토, 그 결과를 농진청, 인증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2007년 3.28 부터 시행)	농업자원과 ☎(031) 299-2593
2	한국농업전문학교 교명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제59조에 의거 한국농업전문학교 설립운영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농촌진흥청에 위탁 설립운영 - “대학” 명칭의 교명 사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제정 시행 - 한국농업전문학교’의 교명을 ‘한국농업대학’으로 변경 - 한국농업대학 설립 운영 주체를 농촌진흥청으로 변경 - 한국농업대학 졸업생에 대한 영농정착 지원 근거규정 명문화 	한국농업대학설치법 (제정2006.9.27, 시행 2007. 3. 28)	한국농업전문학교 ☎(031) 229-5161

〈 특 허 청 〉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명세서에 기재 요건 완화	<p>□ 명세서에 기재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사항에는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나, 발명 기술의 다양화·복잡화 추세에 따라 특허출원인이 현재의 기재 요건에 따라서는 충분하게 그 사항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p>	<p>□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사항의 기재요건에서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로 구분하는 것을 삭제하고, 특허출원인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 방법에 따라 편리하고 다양하게 그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함.</p>	<p>특허법 (2007.7.1 시행)</p>	<p>특허심사 정책팀 ☎ (042) 481-5399</p>
2	특허청구범위기재 의 유예제도의 도입	<p>□ 특허출원시에 반드시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발명자가 그 발명에 대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특허청구범위의 세부항목 및 설명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음.</p>	<p>□ 특허청구범위를 특허출원서 제출 후 출원공개(1년 6개월)전까지 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함.</p>	<p>특허법 (2007.7.1 시행)</p>	<p>특허심사 정책팀 ☎ (042) 481-5399</p>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특허출원의 거절이유에 대한 사전통지 내용의 명확한 기재	<p>□ 특허심사관이 특허출원서의 특허청구범위에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 모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밝히지 아니함에 따라 특허출원인으로서의 거절이유가 통지되지 아니한 일부 청구항의 거절이유를 알지 못하는 불편이 있음.</p>	<p>□ 특허심사관은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 모두에 대하여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p>	특허법 (2007.7.1 시행)	특허심사 정책팀 ☎ (042) 481-5399
4	명세서에 기재요건의 완화	<p>□ 명세서에 기재하는 ‘고안의 상세한 설명’ 사항에는 그 고안의 목적·구성 및 효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나, 고안 기술의 다양화·복잡화 추세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현재의 기재요건에 따라서는 충분하게 그 사항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p>	<p>□ ‘고안의 상세한 설명’ 사항의 기재요건에서 고안의 목적·구성 및 효과로 구분하는 것을 삭제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편리하고 다양하게 그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함.</p>	실용신안법 (2007.7.1 시행)	특허심사 정책팀 ☎ (042) 481-5399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의 도입	<p>□ 실용신안등록출원시에 반드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고안자가 그 고안에 대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세부항목 및 설명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음</p>	<p>□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제출 후 출원공개(1년 6개월) 전까지 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함.</p>	실용신안법 (2007.7.1 시행)	특허심사 정책팀 ☎ (042) 481-5399
6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대한 사전통지 내용의 명확한 기재	<p>□ 실용신안등록심사관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2 이상의 청구항(請求項)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 모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밝히지 아니함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인으로서의 거절이유가 통지되지 아니한 일부 청구항의 거절이유를 알지 못하는 불편이 있음.</p>	<p>□ 실용신안등록심사관은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 모두에 대하여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p>	실용신안법 (2007.7.1 시행)	특허심사 정책팀 ☎ (042) 481-5399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비밀디자인으로의 청구시기 확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디자인을 이용한 제품 의 개발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그 디자인을 비밀 로 할 필요성이 생기더라 도 그 청구시기의 제한으 로 인하여 이를 청구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음.	□중전에는 디자인등록출원시에만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때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이를 청구할 수 있 도록 함.	디자인보호법 (2007.7.1 시행)	상표디자인 심사정책 정책팀 ☎ (042) 481-5399
8	포기·거절결정 또는 거절심결된 디자인등록출원의 선출원 지위 배제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거절결정 또 는 거절심결이 확정되더 라도 그 디자인등록출원 은 선출원의 지위가 유지 됨으로써 선의의 제3자 가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창작하더라도 디자인등 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음.	□앞으로는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후 그 디자인 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거절결정 또는 거절심결 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처음 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선출원의 지위를 배제 하고, 선의의 제3자가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창작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 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디자인보호법 (2007.7.1 시행)	상표디자인 심사정책 정책팀 ☎ (042) 481-5399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9	디자인 無심사등록 출원에 대한 등록 거절결정 사유 확대	<p>□ 의복·침구 등의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無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경우에도 디자인無심사등록이 허용됨으로써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 일반인의 디자인 이용이 곤란하게 되는 불편이 있었음.</p>	<p>□ 디자인 無심사등록원이 있는 경우 그 디자인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결정할 수 있도록 함.</p>	디자인보호법 (2007.7.1 시행)	상표디자인 심사정책팀 ☎ (042) 481-5268
10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 확대	<p>□ 상표의 시장가치가 증가하고,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유형의 상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 상표의 범위가 협소하여 상표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음.</p>	<p>□ 종전에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입체적 형상이나 이에 색채를 결합한 것만을 상표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색채상표·홀로그램상표·동작(動作)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p>	상표법(2007.7.1 시행)	상표디자인 심사정책팀 ☎ (042) 481-527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1	출원변경의 인정범위 확대	<p>□ 상표등록출원과 서비스표등록출원 상호간에만 출원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어 상표법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출원인이 상표·서비스표 또는 단체표장(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외) 등 출원의 종류를 잘못 기재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출원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p>	<p>□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록출원 및 단체표장등록출원 상호간에 출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p>	<p>상표법 (2007.7.1 시행)</p>	<p>상표디자인 심사정책팀 ☎ (042) 481-5271</p>
12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의 연장	<p>□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이 짧아 이의신청제도의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음.</p>	<p>□ 상표등록 이의신청 기간을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로 연장함</p>	<p>상표법 (2007.7.1 시행)</p>	<p>상표디자인 심사정책팀 ☎ (042) 481-5271</p>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3	상표의 선사용이 있는 경우 그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 인정	<p>□ 특정한 상표를 사용하던 중 타인이 먼저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경우 그 상표를 먼저 사용하던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p>	<p>□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고,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자기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을 때에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하는 자에게 자기의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부여함.</p>	상표법 (2007.7.1 시행)	상표디자인 심사정책팀 ☎ (042) 481-5271

〈식품의약품안전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영양위해 성분에 대한 표시 강화	□ 영양성분표시 -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에 대해서만 표시	□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영양성분 항목 확대 - 기존 영양성분이외에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 콜레스테롤도 함량 표시	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기준) (2007.12 시행)	식품안전 정책팀 ☎ (02) 380-1726
2	품질유지기한제도 도입	□ 유통기한 표시	□ 장기간 보관하거나 유통해도 변질 우려가 없는 식품 품목은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해당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가장 좋은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제품도 유통,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 - 김치절임식품, 조미식품, 다류, 당류, 벌꿀, 밀가루, 전분, 통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등	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기준) 입안예고 중 (2007.12 시행)	식품안전 정책팀 ☎ (02) 380-1726
3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 대상 품목 확대	□ 신설	□ 화장품의 경우 아세톤함유 네일리무버, 어린이가 쉽게 마실 수 있는 베이비오일류 등에 안전용기 의무화	화장품법제9조의 2(화장품법시행규칙(개정중)) (2007.1.13 시행)	의약품 안전정책팀 ☎ (02) 3156-802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궤련형 금연보조제 (의약외품) 위해성분 허용기준 설정 및 표시의무	□ 신설	□ 피우는 금연보조제를 사용하는 소비자 건강을 위해 발암물질인 타르 및 일산화탄소에 대한 허용치를 EU지침과 동일하게 10mg 이하로 규제하고, 제품의 외부포장에 경고 문구 및 위해 성분 측정치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함	약사법시행규칙 (2007년상반기 개정예정) 허가지침(식약청 고시)(2007 1/4 분기 개정 2007 상반기 시행예정)	의약품 안전정책팀 ☎ (02) 3156-8023
5	인태반 유래 원료 물질 화장품에 사용금지	□ 신설	□ 인태반 유래 원료물질은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화장품에 배합금지 원료로 지정함	화장품법시행규칙 (2007.1.1 시행)	의약품 안전정책팀 ☎ (02) 3156-8023
6	공동 임상시험심사 위원회(공동 IRB) 도입	□ 신설	□ 다기관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함	의약품임상시험 관리기준(식약청 고시, 2007.5.31 예정)	임상관리팀 ☎ (02) 3156-8124
7	의료기기 GMP 제도	□ GMP 자율 적용	□ 전면 의무화 (2007. 5. 30일부터)	의료기기법시행 규칙 (2007.5.31시행)	의료기기품질팀 ☎ (02) 388-4792
8	의료기기광고사전 심의제도 시행	□ 신설	□ 의료기기 광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의료기기 광고를 하기 이전에 식약청장이 정하는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함	의료기기법 제23조 (2007.4.5 시행)	의료기기관리팀 ☎ (02) 380-1660

〈산림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수목원조성 사전 타당성 검토 제도 도입	□ 신설	□ 수목원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고 할 때에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 지 여부, 입지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일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	수목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2007.6.20 시행)	산림환경 보호 팀 ☎ (042) 481-4241
2	수목원전문가 교육 과정 인증	□ 신설	□ 일정요건을 갖추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이 가능	수목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2007.6.20 시행)	산림환경 보호 팀 ☎ (042) 481-4241
3	보전산지내 행위제한 완화	□ 신설	□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 적용 □ 임업용산지 내 산촌개발사업, 수목장림 조성 가능 □ 공익용산지 내 사찰 신축 가능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산지관리법 제12조 (2007. 7. 1 시행)	산지정책팀 ☎ (042) 481-414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사유 추가	□ 신 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사유에 재해방지 시설 및 산촌개발사업 추가	산지관리법 제19조 (2007.7.1 시행)	산지정책팀 ☎ (042) 481-4142
5	불법산지전용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 신설	□ 불법 산지전용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산지관리법 제26조의2 (2007. 7. 1 시행)	산지정책팀 ☎ (042) 481-4142
6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임업용산지에서 삭도 및 궤도시설 금지 □ 지자체나 국가 이외에는 산책로·산림욕장·탐방로 설치 금지 □ 산지전용허가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 임업용산지 내 삭도 및 궤도 시설 가능 □ 누구나 산림욕장, 산책로, 탐방로 설치가능 □ 산지전용허가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2007. 7. 1 시행)	산지정책팀 ☎ (042) 481-4142
7	산지전용지의 입목 축적조사 대상 축소	□ 산지전용지에 대하여 입목축적조사서 제출	□ 입목축적산출대상물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007. 7. 1 시행)	산지정책팀 ☎ (042) 481-414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8	산지전용허가면적 제한규정 완화	□연접제한저촉범위에 주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의 면도는 제외	□연접제한저촉범위에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의 면도를 포함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제18조 (2007. 7. 1 시행)	산지정책팀 ☎ (042) 481-4142
9	사유림매수업무 민간위탁	□국가(지방청, 국유림관리 소)에서 직접수행	□공·사유림 등 토지의 매수업무를 공신력과 전문 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2007 상반기 시행)	국유림관리팀 ☎ (042) 481-4096
10	백두대간 소득감소 분지원	□신설	□백두대간 자연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벌 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3 (2007.1.1 시행)	백두대간 보 전 팀 ☎ (042) 481-4295
9	소나무재선충병 역학조사반 운영	□신설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역학조사반 운영 - 산림청 : 중앙역학조사반 - 지자체 : 지방역학조사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7 조2(2007.3.28 시행)	산림병해충 방 제 팀 ☎ (042) 481-4069
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권자 확대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국유림관리소장 추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 조(2007.3.28 시행)	산림병해충 방 제 팀 ☎ (042) 481-4069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3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지정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의 읍·면·동	□발생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의 읍·면·동 추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2007.3.28 시행)	산림병해충 방 제 팀 ☎ (042) 481-4069
14	전국 소나무류 생산확인 및 이동제한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산림청 행정지침)에 의하여 실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 마련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기 위해서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 발급 - 전국의 소나무 취급업체에 대한 단속 및 이동 단속을 위한 운송정비, 위반여부 확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2, 제13조 (2007.3.28 시행)	산림병해충 방 제 팀 ☎ (042) 481-4069

200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행일 : 2006년 12월

발행처 : 재정경제부 교육홍보팀
(T. 02-2150-2941)

인쇄제작 : 애드컴서울

(T. 02-2285-6601~2)